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내지24호 통합

2023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머 리 말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이제 제1호부터 제24호까지를 묶은 네 번째 통합본 책자를 온라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사와 행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사와 형사 사건이 각각 추가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모든 주요 재판에 대한 속보자료를 게재하게 되었고, 2022년 7월부터는 법률신문에 게재되는 등 법원 외부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본에 게재된 판결의 선정기준과 요약방식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체 누적 건수가 407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판결번호와 쟁점을 간략히 기재한 세부목차를 마련하였고, 대상판결 등의 확정 여부와 상고심 결과 등을 현재 시점에서 업데이트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본 통합본이 법원 안팎, 특히 학계와 실무계에서 법리 연구를 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는 큰 보람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는 본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므로, 상업적인 이용과 내용변경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복사, 편집, 출력, 제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귀중한 속보자료를 제공해주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판사님들께, 그리고 바쁜 재판업무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투명성 증진과 판결공간 확대를 위한 열정으로 땀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9.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위원장 홍승면

편집위원 명단

[2023. 9. 현재]

구 분	성 명	비고(전담분야 등)
위 원 장	홍승면 부장판사	건설
위 원	김용민 고법판사	상사·기업
위 원	김유경 고법판사	국제거래·해상
위 원	김형진 고법판사	원외재판부(춘천)
위 원	박원철 고법판사	부패
위 원	서여정 고법판사	원외재판부(인천)
위 원	송혜정 고법판사	성폭력
위 원	신용호 고법판사	조세
위 원	심영진 고법판사	건설
위 원	유동균 고법판사	의료
위 원	유제민 고법판사	항고(민사·형사)
위 원	이의영 고법판사	국제거래·중재
위 원	정문경 고법판사	언론
위 원	정현경 고법판사	노동
위 원	최성보 고법판사	지식재산
위 원	표현덕 고법판사	공정거래
위 원	송미경 고법판사	공보관
위원, 간사	이지영 고법판사	선거

[전 편집위원]

구 분	성 명	현 소속	비고(전담분야 등)
전 위원	이숙연 고법판사	특허법원	노동
전 위원	김세종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 위원	방응환 고법판사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의료
전 위원	이병희 고법판사	대법원	공정거래·노동
전 위원	김길량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언론
전 위원	박성윤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국제거래·중재
전 위원	김재령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건설
전 위원	한기수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전 위원	김선아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
전 위원	이준현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항고
전 위원	장정환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전 위원	김광남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항고(민사·형사)

※ 본 저작물은 상업적인 이용과 내용변경 이외에는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복사, 편집, 출력, 제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이에 관한 편집위원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목 차

I. 민사	1
1. <u>건설</u>	1
▣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1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하자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 2021. 11. 25. 선고 2018나2016674 판결	2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된 건물’의 의미]	
▣ 2022. 1. 20. 선고 2021나2031352 판결	3
[하자보수 공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 여부]	
▣ 2023. 1. 18. 선고 2021나2016988 판결	4
[건축주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2023. 6. 16. 선고 2022나203798 판결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해당 여부,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2. <u>국제거래</u>	6
▣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6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법규인지,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에서 상계 여부를 임대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정한 조항의 효력]	
▣ 2021. 10. 27. 선고 2020나2017038 판결	7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과 이후 변경계약을 하나로 보고 쌍방의 채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 2021. 11. 24. 선고 2019나2040476 판결	8
[손해배상금 청구의 준거법(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추정 복명 여부), 헬리콥터 엔진 인도 청구의 준거법]	
▣ 2021. 11. 24. 선고 2021나2006745 판결	9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약관법의 적용 여부]	
▣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10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영국법상 갑판적 면책 여부, 송하인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 여부, 포장불충분 면책 관련 증명책임의 분배]	
▣ 2021. 12. 8. 선고 2020나2002708 판결	1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	

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례]

- 2021. 12. 9. 선고 2020나2035173 판결 12
[몬트리올 협약 또는 상법상 항공운송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 여부, 상법 제12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2022. 1. 20. 선고 2020나2033450 판결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손해배상 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CISG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및 효과]
- 2022. 4. 21. 선고 2020나2001019 판결 14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부와 그 요건,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요건]
- 2022. 7. 13. 선고 2021나2027001 판결 15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 16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 2022. 8. 18. 선고 2021나2031413 판결 17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여부]
- 2022. 12. 22. 선고 2020나2011245 판결 18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의 준거법,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소송판결이 포함되는지]
- 2023. 2. 9. 선고 2021나2014340 판결 19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2023. 6. 15. 선고 2022나2006650 판결 20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 2023. 7. 13. 선고 2022나2023556 판결 2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법인의 실질적 대표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노동 22

- 2021. 8. 13. 선고 2019나2036668(본소), 2020나2018147(반소) 판결 22
[환송판결 전 체결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만근수당의 비교대상임금 해당 여부]
- 2021. 11. 2. 선고 2020나2048254 판결 23
[근로자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제반 사정과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을 판결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례]

■ 2021. 11. 12. 선고 2021나2005384 판결	24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 2021. 12. 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	25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 2021. 12. 8. 선고 2020나2011962, 2011979(병합) 판결	26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2021. 12. 8. 선고 2020나2021662 판결	27
[임금피크제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임금인상률 결정의 무효 여부]	
■ 2021. 12. 10. 선고 2019나2046214 판결	28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 2021. 12. 10. 선고 2021나2005285(본소), 2005292(반소) 판결	29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30
[사립대학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	
■ 2022. 1. 26. 선고 2017나8816, 8823(병합), 8830(병합) 판결	31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2008515(병합) 판결	32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지표,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2022. 1. 28. 선고 2021나2021980 판결	33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34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시 부담금의 정산 방법]	
■ 2022. 4. 15. 선고 2021나202691 판결	35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해고 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2022. 5. 11. 선고 2021나2038797 판결	36
[임금지급의무의 주체,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 2022. 5. 17. 선고 2021나2025715 판결	37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2022. 6. 15. 선고 2020나2035784 판결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2. 8. 24. 선고 2021나2036036 판결	39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 2022. 9. 16. 선고 2022나2001631 판결	40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사용자가 그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대기발령기간 중 효과 발생여부]	
■ 2022. 9. 21. 선고 2021나2044662(본소), 2044679(반소) 판결	41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2022. 9. 23. 선고 2021나2049827 판결	42
[단체협약 중 형사휴직과 징계에 관한 쟁점 규정의 해석]	
■ 2022. 10. 26. 선고 2021나2042239 판결	43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2022. 11. 11. 선고 2022나2000539 판결	44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해고통지의 효력]	
■ 2022. 11. 18. 선고 2021나2042116 판결	45
[원고에게 전문업무직 계약기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2022. 12. 16. 선고 2022나2028421 판결	46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2023. 1. 13. 선고 2022나2003033 판결	47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뉴스 방송국에서 일한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	
■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48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피고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 2023. 2. 10. 선고 2021나2015497 판결	49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 손해배상액의 산정]	
■ 2023. 2. 10. 선고 2022나2020137 판결	50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2023. 4. 14. 선고 2021나2000259 판결	51
[취업규칙과 운영예규가 상충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의 적용 순서]	
■ 2023. 5. 12. 선고 2021나2037985 판결	52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3. 5. 26. 선고 2022나2009864 판결	53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및 유효성]	
■ 2023. 5. 31. 선고 2021나2048923 판결	54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 여부, 사립학교법 상 교원의 ‘근무기간’에 교육공무원법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 2023. 6. 2. 선고 2022나2029851 판결	55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지]	
■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56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가능한지]	
■ 2023. 7. 21. 선고 2022나2047460 판결	57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 2023. 8. 25. 선고 2022나2049299 판결	58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	

4. 상사 59

■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59
[이사의 감시의무의 대상, 임직원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21. 9. 9. 선고 2020나2015834 판결	6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효력을 착오에 의한 취소 등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	6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개정 상법 제398조가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62
[과거 시점에 주주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2021. 12. 23. 선고 2021나2028295 판결	63
[피고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 2022. 1. 12. 선고 2021나2010522 판결	64
[주식교환 합의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65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처리방법]	
■ 2022. 3. 3. 선고 2021나2019338 판결	66
[회생절차개시 후 신탁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세금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개시후기타채권인지]	
■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67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 2022. 5. 12. 선고 2021나2040776 판결	6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2022. 6. 10. 선고 2021나2028370 판결	69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	
■ 2022. 7. 21. 선고 2021나2000754 판결	70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판결	71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판결	72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022. 9. 15. 선고 2022나2005589 판결	73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 2022. 9. 30. 선고 2022나2017018(본소), 2022나2031311(반소) 판결	74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	

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75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부진과 주거래처에 대한 1년간의 수주실패가 계약해제권 부여 사유인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지 등]	
■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76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2023. 1. 13. 선고 2021나2046187 판결	77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2023. 2. 10. 선고 2021나203409 판결	78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유지 여부, 대표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 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의 손익상계 여부]	
■ 2023. 2. 10. 선고 2022나2019892 판결	79
[PEF 설립·운용자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	
■ 2023. 2. 15. 선고 2022나2013429 판결	80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또는 귀속되는지]	
■ 2023. 3. 8. 선고 2021나2029496 판결	81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 2023. 4. 5. 선고 2021나2036340 판결	82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5. <u>언론</u>	83
■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83
[암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	
■ 2021. 9. 10. 선고 2021나2013958 판결	84
[정정보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이 채권자가 그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한도로 제한되는지]	
■ 2021. 11. 25. 선고 2021나2008512 판결	85
[허위 보도인지, 보도 내용이 ‘체인점에서도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지]	
■ 2022. 4. 8. 선고 2021나2014883 판결	86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같은 기사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장이 추가된 부분의 소가 적법한지]	
■ 2022. 4. 22. 선고 2021나2040158 판결	87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요건인 ‘정정/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 2022. 8. 19. 선고 2020나2022269 판결	88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6. <u>의료</u>	89
■ 2021. 10. 28. 선고 2020나2022696 판결	89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출혈에 대한 조치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2021. 11. 18. 선고 2021나2007717 판결	90
[불완전이행책임 주장, 쇼크 발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지체책임 주장, 설명의무 위반 주장 등을 배척한 사례]	
■ 2021. 12. 2. 선고 2019나2053700(본소), 2021나2021065(반소) 판결	91
[설명 의무 위반시 환자의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의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경우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 2022. 1. 20. 선고 2021나2013354(본소), 2013361(반소) 판결	92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험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보험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지]	
■ 2022. 9. 29. 선고 2020나2049127 판결	93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 인정 여부, 그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 여부]	
■ 2023. 3. 30. 선고 2021나2018564 판결	94
[개호비 인정의 범위]	
■ 2023. 4. 13. 선고 2021나2050919 판결	95
[미성년자 사용금지 물질을 이용한 코 필터 주입술의 의료과실 여부, 시력 손상 부작용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7. <u>중재</u>	96
■ 2022. 2. 17. 선고 2021나2020680 판결	96
[중재판정부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중재합의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것인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 2022. 5. 19. 선고 2021나2022938 판결	97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그에 대한 불복방	

법 및 피고적격]

- 2022. 8. 18. 선고 2020나2043570 판결 98
[중재합의 위반 항변의 중재법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중개인계약상 중재 합의 및 관할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 2022. 12. 8. 선고 2021나2025272 판결 99
[같은 날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서로 다른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2부가 각각 작성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방법의 해석]

8. 지식재산 100

- 2021. 9. 9. 선고 2020나2038172 판결 100
[공동으로 기여한 영업비밀의 귀속관계, 공동보유자 중 1인이 다른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101
[악곡을 변경하거나 가사를 개사하여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 2022. 1. 20. 선고 2021나2038902 판결 102
[‘대성’을 단독으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대성’이 포함되거나 대성그룹이 연상되는 유사상호의 사용까지 금지되는지]
- 2022. 4. 28. 선고 2021나2013675 판결 10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표지 여부, 자목의 모방행위 여부, 카목의 성과등 부정 사용 여부]
-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104
[가방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 2022. 5. 12. 선고 2021나2037589 판결 105
[음원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6. 9. 선고 2021나2046460 판결 106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2022. 6. 16. 선고 2022나2003927 판결 107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6. 23. 선고 2020나2029444 판결 108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 2022. 9. 1. 선고 2018나2068682 판결 109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110
[드라마 OST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 투자계약의 당사자, 투자계약의 해제 여부, 양도계약의 효력]	
■ 2022. 11. 24. 선고 2021나2006264, 2021나2043478, 2022나2011171 판결	11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2023. 1. 19. 선고 2021나2030991 판결	112
[음반유통 전속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선인세 충당방법 등]	
■ 2023. 2. 9. 선고 2022나2030479 판결	113
[생활용품 디자인 등 관련 부정경쟁행위 여부]	
■ 2023. 3. 23. 선고 2022나2030196 판결	114
[반도체 칩 관련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 2023. 8. 17. 선고 2022나2034747 판결	115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	

9. 민사일반 116

■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본소), 2030956(반소) 판결	116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	
■ 2021. 8. 19. 선고 2020나2025398 판결	117
[실시협약의 ‘토지사용료 조정’ 규정의 의미]	
■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본소), 2021나2013224(반소) 판결	118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고 절차 유무,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 2021. 8. 26. 선고 2021나2002200 판결	119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2021. 9. 9. 선고 2020나2034873 판결	120
[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 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평가 목적에 명의도용자에 의한 사기 예방이 포함되는지]	
■ 2021. 9. 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	1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피참가인을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는지]	
■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12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분리하여 타에 양도한 경우 연대채무자들 간의 연대채무관계의 존속 여부]	
■ 2021. 9. 17. 선고 2021나2014364 판결	123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124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들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 2021. 9. 30. 선고 2021나2000839 판결	125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에 비추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2021. 10. 14. 선고 2020나2021624 판결	126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된 금액 중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불법원인급여 적용 여부]	
■ 2021. 10. 21. 선고 2020나2011740 판결	127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연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사용수익권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021. 10. 27. 선고 2020나2049660, 2049677(병합), 2049684(병합) 판결	128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 2021. 10. 28. 선고 2020나2001507 판결	129
[2차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잘못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 제출에 따른 위약별인 가산금 지급의무 여부]	
■ 2021. 11. 11. 선고 2021나2010294 판결	130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이용현황에 비식별조치 현황이 포함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를 근거로 비식별조치 여부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13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구제조치]	
■ 2021. 11. 26. 선고 2021나2002996(본소), 2003005(반소) 판결	132
[가압류에서 전이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는지, 대지사용권의 지분 비율 계산]	
■ 2021. 12. 3. 선고 2021나2009133(본소), 2009140(반소) 판결	133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고 내사사건을 종결한 것에 검사의 위법행위 성립 여부와 귀책사유 유무]	
■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134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 12. 9. 선고 2021나2016810 판결	135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의 시공협약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정산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 2021. 12. 9. 선고 2020나2025350 판결	136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년에 도달하여 은퇴한 경우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시무권을 가지는지, 나머지 원고들이 A교회를 탈퇴하였는지]	
■ 2021. 12. 10. 선고 2021나2025319 판결	137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신탁회사에 가지는 보관금 관련 채권의 내용,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138
[이름 뒤에 ‘외 ○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 2021. 12. 16. 선고 2021나2011310 판결	139
[사립학교의 폐교를 결정한 것이 그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140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및 기망의 인정 여부]	
■ 2022. 1. 13. 선고 2021나2002446 판결	1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 2022. 1. 20 선고 2021나2008178 판결	14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점포내부 기동 현황에 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 수분양자의 법정추인 해당 여부]	
■ 2022. 1. 20. 선고 2021나2028196 판결	143
[재심청구 이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무죄 이후 종전 유죄판결 확정애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미치는지]	
■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144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한 기망 여부]	
■ 2022. 1. 26. 선고 2021나2022426 판결	145
[택배집배점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중과실 여부]	
■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146
[‘장래에 가지는 채권’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보다 늦게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에도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지]	
■ 2022. 2. 9. 선고 2021나2007427 판결	147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의 해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중국적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	
■ 2022. 2. 10. 선고 2021나2003999 판결	148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공급약관 규정이 효력 요건인지]	
■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149
[분양계약상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022. 2. 10. 선고 2021나2006196(본소), 2006202(반소) 판결	150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관련 고지의무 위반의 기망 불법행위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 시점, 손해배상의 범위]	
■ 2022. 2. 15. 선고 2021나2013231 판결	151
[원고 교단과 피고 유지재단의 관계,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피고 이 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 2022. 2. 24. 선고 2020나2043884 판결	152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한 자문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자문료의 범위]	
■ 2022. 3. 17. 선고 2021나2019406 판결	153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 중 일부만 양도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 2022. 3. 31. 선고 2021나2025180 판결	154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의 보수 상당액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	
■ 2022. 4. 14. 선고 2018나2059596 판결	155
[법정대리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법정대리인이 한 항소의 효력]	
■ 2022. 4. 19. 선고 2021나2014036 판결	156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	
■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157
[공매절차가 무효여서 공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배분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2022. 4. 28. 선고 2021나2035460, 2022나52(독립당사자참가) 판결	158
[관리규약의 효력 유무, 관리규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비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022. 4. 29. 선고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판결	159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	
■ 2022. 5. 11. 선고 2021나2039981 판결	160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161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붙임서류로 표시된 ‘원가 및 내	

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상당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162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 2022. 5. 25. 선고 2021나2039011 판결	163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담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 위약금 약정의 성격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 2022. 5. 26. 선고 2022나2005329 판결	164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2022. 6. 8. 선고 2021나2009744 판결	165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원상회복청구의 방법]	
■ 2022. 6. 9. 선고 2021나2026886(본소), 2026893(반소) 판결	1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 한다는 것의 의미]	
■ 2022. 6. 9. 선고 2021나2038582 판결	167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의 효력, 용도폐지가 무효인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 2022. 6. 16. 선고 2019나2029271 판결	168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	
■ 2022. 6. 22. 선고 2021나2011907 판결	169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17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2022. 6. 24. 선고 2022나2005251 판결	17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 2022. 6. 30. 선고 2022나2005213 판결	172
[매수인이 지급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173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 2022. 7. 15. 선고 2021나2034214 판결	174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2022. 7. 21. 선고 2020나2039854 판결	175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 해놓은 행위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 2022. 7. 21. 선고 2021나2039738 판결	176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2022. 7. 22. 선고 2022나2014835 판결	177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	
■ 2022. 8. 17. 선고 2020나2004490 판결	178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	
■ 2022. 8. 25. 선고 2022나2002832 판결	179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교사임용시험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 2022. 8. 25. 선고 2022나2004616 판결	180
[중중 소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증명 정도]	
■ 2022. 9. 14. 선고 2021나2036814 판결	181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 2022. 9. 15. 선고 2022나2016183 판결	182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183
[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시효정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본소), 2007349(반소) 판결	184
[부속약정의 해석 방법,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성과수수료의 지급의무를 긍정한 사례]	
■ 2022. 9. 30. 선고 2020나2032501 판결	185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	186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등 사유로 약 한 달 동안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상화폐 반환청구에 불응 또는 지체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	
■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187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 2022. 10. 27. 선고 2021나2039714 판결	188

[구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처분을 기재한 소책자 배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2. 10. 27. 선고 2022나2006049 판결	189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 2022. 11. 3. 선고 2021나2040448 판결	190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 2022. 11. 18. 선고 2022나2004272 판결	19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판결	192
[약관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지,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정 관련 설명의무 대상 및 위반 여부]	
■ 2022. 12. 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193
[통고처분의 무효 여부]	
■ 2022. 12. 22. 선고 2022나2010611 판결	194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되는지]	
■ 2023. 1. 23. 선고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판결	195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	
■ 2023. 1. 19. 선고 2022나2024207 판결	196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방법]	
■ 2023. 2. 1. 선고 2022나2027480 판결	197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강간살해범죄 관련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23. 3. 22. 선고 2020나232068 판결	198
[민법 제428조의2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근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	
■ 2023. 3. 30. 선고 2021나2048534 판결	199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분담금 납입의 효력, 손해배상의 범위 등]	
■ 2023. 4. 20. 선고 2021나2044594 판결	200
[의사능력 등의 유무, 공정증서 작성절차의 위법 여부, 유류분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 부담에 관한 구상금 청구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2023. 4. 20. 선고 2022나2021888 판결	201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화주들의 재고자사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되는지]	
■ 2023. 4. 26. 선고 2022나2013283 판결	202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피고가 상 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203
[회생계획상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국세기본법의 양도 규 정이 적용되는지, 양도 요구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 충당의 가부]	
■ 2023. 5. 11. 선고 2021나2046590 판결	204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20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	
■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206
[재건축조합이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2023. 5. 25. 선고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판결	207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 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23. 5. 25. 선고 2022나2050800 판결	208
[상법 제735조의3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 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209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 고의·과실 유무]	
■ 2023. 6. 15. 선고 2022나2037555(본소), 2037562(반소) 판결	210
[강의계약 위반 여부, 각종 부가약정 등과의 관계, ‘위약벌’, ‘위약금’ 등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지급의무의 범위]	
■ 2023. 7. 6. 선고 2022나2038770 판결	21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	
■ 2023. 7. 6. 선고 2022나2038947(본소), 2038954(반소) 판결	212
[다른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저지한 행위 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	213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 우 손해배상책임을 성립 및 제한 여부]	
■ 2023. 8. 18. 선고 (인천)2022나10116 판결	214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부당한 입찰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책임 제한 당부]	

■ 2023. 8. 24. 선고 (인천)2022나13993 판결	215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10. 민사항고 216

■ 2021. 6. 1.자 2021라20123 결정	216
[회생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고인이 훗날 실제 주주였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한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한 사례]	
■ 2021. 11. 24.자 2021라20361 결정	217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	
■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218
[라임펀드 관련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	
■ 2022. 1. 12.자 2021라20957 결정	219
[비법인사단이 소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2022. 3. 30.자 2021라21026 결정	220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가 전부 기각된 경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 만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2022. 3. 31.자 2022라20019 결정	221
[노조의 설립이 실체적, 절차적 이유로 무효인지]	
■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222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 2022. 6. 8.자 2021라21374 결정	223
[소송비용액 확정에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224
[‘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22. 11. 16.자 2022라20862 결정	225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 2023. 2. 8.자 2022라20952 결정	226
[추후 약정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되는지]	
■ 2023. 3. 22.자 2023라20163 결정	227

[언론사 내부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등]	
■ 2023. 3. 30.자 2022라20994 결정	228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강제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	
■ 2023. 4. 27.자 2022라21168 결정	229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부정경쟁방지법상 (과)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3. 5. 18.자 2022라20034 결정	230
[책임범위에 관한 ICC 중재판정문의 해석 및 집행거부 사유의 유무]	
■ 2023. 5. 26.자 2022라21003 결정	231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제출한 감정료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 2023. 6. 13.자 2023라20469 결정	232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 2023. 7. 4.자 2023라20892 결정	233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집행관 공시 명령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	
■ 2023. 7. 10.자 2022라21334 결정	234
[주택법이 허용하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한계, 주택법상 리모델링 개념을 벗어난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승인결의가 무효인지]	
■ 2023. 7. 26.자 2023라20950 결정	235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지)]	
■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	236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지]	

II. 가사 237

1. <u>가사본안</u>	237
■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22036(병합) 판결	237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2023. 1. 26. 선고 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판결	238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부정행위자가 그 상	

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 산정 등]	
■ 2023. 2. 9. 선고 2022르21002 판결	239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2023. 4. 20. 선고 2022르22517 판결	240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2023. 5. 4. 선고 2022르23305 판결	241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2023. 6. 29. 선고 2022르23541 판결	242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2023. 7. 25. 선고 2022브2136(본심판), 2137(반심판) 판결	243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	

2. 가사항고 244

■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244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위 보수 산정의 기준]	
■ 2022. 6. 27.자 2022브2079 결정	245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사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2022. 7. 27.자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결정	246
[수차상속 사안에서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심리·판단의 방법, 유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 2023. 2. 15.자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결정	247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	

III. 행정 248

1. 공정거래 248

■ 2021. 8. 12. 선고 2020누38791 판결	248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1. 8. 25. 선고 2020누53264 판결	24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인지]	
■ 2021. 9. 15. 선고 2020누40329 판결	250
[공동행위가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여부, 흡수합병한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251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 2021. 12. 23. 선고 2021누41978 판결	25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253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해당 여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 금지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판단기준]	
■ 2022. 3. 24. 선고 2020누40718 판결	254
[운송용역의 연도별 입찰담합에서 하나의 공동행위 인정 여부 및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존재 여부, 과징금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255
[경쟁제한성을 ‘관련시장(해당 입찰)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2022. 10. 13. 선고 2021누40654 판결	256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성이 존재하는지]	
■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	257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정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258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 2022. 12. 1. 선고 2020누69221 판결	259
[끼워팔기 행위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260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	261
[장래 지급할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하도급법 제11조 적용 여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262
[동영상검색 알고리즘 개편 관련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테마관 동영상에 대한 가점부여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 2023. 2. 16. 선고 2021누45390 판결	263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광고 해당 여부,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2023. 5. 31. 선고 2020누66475 판결	264
[제3자를 매개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여부 등]	
■ 2023. 7. 6. 선고 2021누61668 판결	265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 충족 여부 및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	
■ 2023. 8. 31. 선고 2021누60139 판결	266
[공동행위의 기간 및 계열회사에 판매한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지가 문제된 사례]	

2. 난민 267

■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267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라는 특성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268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3. 행정노동 269

■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269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2021. 12. 10. 선고 2021누39791 판결	270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 2021. 12. 17. 선고 2021누36297 판결	27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272
[비위사실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273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2, 5호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그 의미]	
■ 2022. 1. 14. 선고 2021누43387 판결	274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합의가 유효한지]	
■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275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 2022. 5. 19. 선고 2021누53216 판결	276
[사용자가 재심판정을 이행한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277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22. 9. 1. 선고 2021누74763 판결	278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 2022. 10. 20. 선고 2022누34120 판결	279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내(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4. 산재 280

■ 2022. 4. 8. 선고 2021누58150 판결	280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2022. 6. 10. 선고 2021누45635 판결	281
[유족급여를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5. 조세 282

■ 2021. 7. 9. 선고 2020누63735 판결	282
[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 여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2021. 7. 16. 선고 2020누63414 판결	283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사실상 취득’ 하였는지]	

■ 2021. 8. 18. 선고 2020누47139 판결	284
[단말기유통법 제4조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원금이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	
■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285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 판단기준]	
■ 2021. 9. 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28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 에 해당하는지]	
■ 2021. 10. 14. 선고 2021누37818 판결	28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 2021. 10. 28. 선고 2021누31599 판결	288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납부세액의 일정률로 결정하여 징수한 처분의 법적 성격]	
■ 2021. 11. 5. 선고 2020누65687 판결	289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증명]	
■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290
[상해 등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291
[검찰 수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292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 2022. 1. 27. 선고 2020누67294 판결	29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 의 의미, 원고가 임대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인지]	
■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294
[주한미군 등에 대한 휴대전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 2022. 6. 15. 선고 2021누56086 판결	29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의 인정 여부]	
■ 2022. 7. 5. 선고 2021누68225 판결	296
[구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 판단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는지,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 시점]	
■ 2022. 7. 8. 선고 2021누66861 판결	297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취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결과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298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	
■ 2022. 8. 25. 선고 2021누39982 판결	299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순자산가치로만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 2022. 9. 7. 선고 2021누67161 판결	30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위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301
[이 사건 재분할 전체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그중 일부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9. 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302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포기로 인해 대손세액 공제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30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3조의2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 2022. 10. 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30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벤처기업 등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 2022. 11. 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305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가 누구인지]	
■ 2022. 12. 8. 선고 2022누47294 판결	306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으로 인적담보가 해소된 때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 사례]	
■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307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그 판단기준]	
■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308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30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의 과세특례조항에서 정한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310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요건인 구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311
[구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요건으로 ‘분할’의 의미 및 그 범위]	
■ 2023. 5. 19. 선고 2021누38101 판결	312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자를 펀드의 조합원들에서 펀드로 변경하는 과세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 증여재산 가액산정 시 비상장주식 옵션의 반영 여부]	
■ 2023. 7. 14. 선고 2022누66011 판결	31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학교 등의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 2023. 8. 18. 선고 2022누60716 판결	314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가스가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 및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이 이중과세인지]	
■ 2023. 8. 23. 선고 2021누37979 판결	315
[담배상표권자에 지급한 로열티와 수입한 담배재료 사이에 관세법상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	
6. 토지수용	316
■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316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7. 행정일반	317
■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	317
[국토계획법상 원상회복명령 및 조치명령을 무단 개발행위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를 상대로 발령할 수 있는지]	
■ 2021. 7. 14. 선고 2020누49098 판결	318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포함하는지]	
■ 2021. 8. 19. 선고 2020누62466 판결	319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 2021. 8. 26. 선고 2019누57697 판결	320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일간소비전력량’의 의미 해석]	
■ 2021. 9. 1. 선고 2021누31025 판결	321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중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면 소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 2021. 9. 8. 선고 2020누48149 판결	3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에 관한 권리가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중혼의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2021. 9. 16. 선고 2020누67928 판결	32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로 위반행위가 분리되는지]	
■ 2021. 10. 20. 선고 2021누38552 판결	324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325
[도핑검사관 자격취소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도핑검사관 자격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통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2021. 11. 17. 선고 2021누33915 판결	326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이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 2021. 12. 1. 선고 2020누40909 판결	327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관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1. 12. 9. 선고 2020누67492 판결	328
[전·현직 정식이사 인원이 이사정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현 직이사협의체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	
■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3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2022. 1. 12. 선고 2020누52148 판결	330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	
■ 2022. 1. 21. 선고 2021누43714 판결	331
[원고가 물품규격서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납품하였는지]	
■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332
[군인 징계사건의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 2022. 3. 31. 선고 2020누40923 판결	333

[증권신고서 중 갑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분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2022. 4. 29. 선고 2021누53896 판결	33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 2022. 4. 29. 선고 2021누54028(본소), 54035(반소) 판결	335
[실시협약의 성격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어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 하는지]	
■ 2022. 5. 11. 선고 2020누59200 판결	336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5. 12. 선고 2021누45628 판결	337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5. 19. 선고 2021누74190 판결	338
[국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2022. 6. 10. 선고 2021누36051 판결	339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해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그 건축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340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행위의 처분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평가결과 공표 규정이 처분 방식에 관한 예외 규정인지]	
■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341
[교육감의 호봉정정 처분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정산금반환 통보의 처분성]	
■ 2022. 7. 14. 선고 2021누59443 판결	342
[징계절차의 위법 유무 및 징계사유의 존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2022. 7. 15. 선고 2021누54202 판결	34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	
■ 2022. 7. 20. 선고 2021누35188 판결	344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지, 피고2에 대한 금전 지급청구의 성격, 공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서 무효인지]	
■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345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의 성질)]	

■ 2022. 8. 25. 선고 2021누77038 판결	346
[정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2022. 9. 15. 선고 2021누71146 판결	347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348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금액’을 잘못 산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 2022. 9. 22. 선고 2021누59382 판결	349
[생협법상 연합회의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처분의 성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350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이들에게 1주택씩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 2022. 10. 14. 선고 2021누54387 판결	35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학개론 문항의 출제오류 여부 등]	
■ 2022. 11. 17. 선고 2021누75742 판결	35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둬 청구한 때’의 의미]	
■ 2022. 11. 18. 선고 2021누53926 판결	353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추가 청약기회 부여 요구에 피고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354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	
■ 2022. 12. 16. 선고 2021누59894 판결	355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요건 미충족자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하자가 있는지]	
■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35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등]	
■ 2023. 2. 9. 선고 2018누73364 판결	357
[방송공사 사장 해임제청한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358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	

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23. 3. 17. 선고 2021누56659 판결	359
[한국도로공사 점유·사용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 2023. 4. 20. 선고 2021누55076 판결	360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위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존부도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 2023. 4. 28. 선고 2021누73418 판결	361
[사무의 법적 성질, 2023년 사업과의 동일성 여부,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36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상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	
■ 2023. 7. 11. 선고 2022누47829 판결	36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인지, 같은 조 제5항의 원상회복명령이 재량행위인지]	
■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364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365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36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2㎡의 토지분할 신청이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 2023. 8. 22. 선고 2022누34250 판결	36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행정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특성화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7. 행정항고 368

■ 2021. 11. 26.자 2021루1149 결정	36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상 합산원칙과 흡수예외 중 어느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것인지]	
■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369
[과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IV. 형사 370

1. 부패

- 2023. 5. 24. 선고 2022노3302 판결370
[사직서 제출 후 사임등기일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하나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항(수재)과 제3항(알선수재) 위반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죄수관계]

2. 선거 371

-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37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제57조의3 제1항의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 2023. 4. 28. 선고 2022노2709 판결372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직업적 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3. 성폭력 373

- 2022. 5. 13. 선고 2021노2286 판결373
[압수의 적법 여부, 검찰에서의 제3임의제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 2022. 7. 5. 선고 2021노1570 판결374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 2022. 8. 9. 선고 2022노408 판결375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2022. 8. 26. 선고 2021노2518 판결376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적법 여부]
- 2022. 9. 30. 선고 2022노766 판결377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 압수의 적법 여부]
- 2022. 10. 20. 선고 2022노817 판결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의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지]
- 2022. 11. 9. 선고 2022노973 판결379
[폭행행위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 2022. 12. 9. 선고 2022노1121 판결	38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	
■ 2023. 2. 10. 선고 2022노1577 판결	38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3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	
■ 2023. 4. 25. 선고 2022노3067 판결	3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중처벌 규정의 해석]	
■ 2023. 6. 2. 선고 2022노2880 판결	384
[기습적으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26 판결	385
[초등학교 여학생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4. 형사일반 386

■ 2022. 4. 8. 선고 2021노1761 판결	386
[부패재산물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물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	
■ 2022. 5. 26. 선고 2022노8 판결	387
[유류한 물건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	
■ 2022. 6. 3. 선고 2022노580 판결	388
[범죄사실과 무관한 암호화폐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할 수 있는지]	
■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3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 2022. 7. 7. 선고 2022노188 판결	390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수입죄 외에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마약류 수입 범행도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 2022. 8. 18. 선고 2022노644 판결	391
[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 2022. 8. 26. 선고 2020노533 판결	392
[검사가 위법압수를 통해 입건유예된 혐의사실을 파악하여 기소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추가 증거가 전부 증거능력이 없는지]	
■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39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 2022. 9. 29. 선고 2022노934 판결	394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2022. 10. 14. 선고 2021노1714 판결	395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2022. 10. 28. 선고 2022노1180 판결	396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397
[‘채혈동의 및 확인서’ 서명으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압수된 혈액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398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 2022. 11. 25. 선고 2022노1176 판결	399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이 인정되는지]	
■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40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병합) 판결	401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2023. 5. 24. 선고 2022노2832 판결	402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 2023. 6. 30. 선고 2022노3003 판결	403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2023. 7. 7. 선고 2023노244 판결	404
[타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진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2023. 7. 21. 선고 (춘천)2022노106 판결	405
[피해자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 이외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4. <u>형사항고</u>	406
▣ 2022. 8. 17.자 2022로19 결정	406
[법정을 찾아갔다가 공판기일 변경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2023. 1. 4.자 2022로129 결정	407
[추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정재판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년 9월~2023년 8월 중요 판결·결정

민 사

2021나200933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확정

[제6-3민사부 2021. 11. 24.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 쟁점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하자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

☐ 판단

-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 2항과 집합건물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하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기산일(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5년이 되는 반면에, 기산일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하자의 성질에 따라 2년, 3년, 5년이 됨
-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 점,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체계와 집합건물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2민사부 2021. 11. 25.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은 ‘분양계약의 체결’로, ‘분양된 건물’은 ‘개개의 구분건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개정법 시행 후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전환세대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한 사안

□ 쟁점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된 건물’의 의미

□ 판단

-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된 건물’은 개개의 구분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 전체’를 의미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1동의 건물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1동의 건물 전체가 ‘분양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1동의 건물 중 일반분양세대와 분양전환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① ‘분양’이란 1동의 건물을 구조상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눈 후 각 구분된 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②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은 집합건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 규정의 체계에 부합함
- ③ 미시공·오시공 등 공사의 잘못은 적어도 1동 건물의 건축이 완성되어 일부 세대에게 분양될 당시부터는 분양자의 책임 영역에 들어서기 시작하므로,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함
- ④ 개정법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단축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법목적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피고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일부 건물부분인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로서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됨 (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2. 1. 20.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시공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상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하자보수 공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승인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① 이 사건 합의서는 그때까지 발견된 하자를 서로 확인하여 피고들이 이를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합의서에 그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 ② 오히려 하자보수를 실시하기로 약정한 보수공사를 완료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제기 및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점
 - ③ 이 사건 소송은 합의서에 따라 시공한 보수공사 후에 계속 존재하거나 새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인 점 (원고일부승)

[제20-3민사부 2023. 1. 18.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1심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 쟁점

-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소극) 및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판단

-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① 이 사건 공사는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함
-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3억 원을 피고가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 ③ 이 사건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공사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권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취지로 보일 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을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일부승)

[제3민사부 2023. 6. 16.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1. 10. 14.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항공기를 임대한 스웨덴법인이 임차인 필리핀법인의 보증인(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준거법인 보증계약에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3 규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국제적 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계약 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치를 보장한 취지, 피고가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항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 영국 잉글랜드 법이 준거법인 항공기 임대계약에서 보증금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를 임대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정한 조항의 효력(=유효) 및 주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여부(소극)
-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계약의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 대한민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의 적용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제19-1민사부 2021. 10. 27. 선고] <국제거래, 도산>

□ 사안 개요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체결 후, UK Tax Lease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영국 금융기관 등 다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나용선자가 영국 과세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면책의무를 추가한 변경계약이 체결됨
- 면책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당초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과 그 이후 체결된 위 면책의무를 정한 변경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쌍방의 채무 사이에 견련성을 인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쌍무계약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계약이 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대가관계를 구성한다거나, 위 면책청구권이 원계약상 권리와 본래적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면책청구권은 회생채권이어서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소각하)

[제19-2민사부 2021. 11. 24.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캐나다 법인인 피고에게 헬리콥터 엔진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정비한 엔진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 내지 엔진 수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② 소유권에 근거하여 헬리콥터 엔진의 인도를 구한 사건

□ 쟁점

- 손해배상금 청구의 준거법(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추정 복별 여부)
- 헬리콥터 엔진 인도 청구의 준거법(= 항공기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

□ 판단

-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엔진 수리계약의 용역이행자인 피고의 상거소가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되기는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추정은 반복되어 이 사건 엔진에 대한 수리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봄이 타당함
 - ① 피고는 항공기 정비업체로서 전 세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② 이 사건 엔진에 그와 같이 수리된 연료제어장치 등이 교체 장착되는 작업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짐
 -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수리 과정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연료제어장치 등을 교체 장착하고 이 사건 엔진을 기체에 분리·장착하는 등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지 및 피해 발생지는 대한민국임
- 국제사법 제20조는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에는 헬리콥터가 포함되고(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엔진은 독립하여 고유한 효용을 가지는 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헬리콥터에서 일시적으로 떼어낸 구성품이므로, 이 사건 엔진의 물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헬리콥터의 물권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헬리콥터를 매수한 후 대한민국에 이를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엔진 인도청구의 준거법은 이 사건 헬리콥터의 국적 소속국인 대한민국의 법임. (원고패)

[제19-1민사부 2021. 11. 24.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화물 양륙 과정에서 선박에 균열이 발생하여 침수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자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약관법의 적용 여부

☐ 판단

-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보험계약이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 계약인 경우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강행규정인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보험명세서가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 회사인 점, 이 사건 선박도 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행구역이 대한민국 연안 해역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도 대한민국인 점, 보험가액, 보험료 등이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의해 영국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 외에 외국적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법 제3조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1. 11. 25. 선고] <국제거래, 해상>

□ 사안 개요

국내 운송회사가 스위스 해상운송회사를 상대로,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기계의 수침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소극)
- 준거법이 영국법인 사안으로서, 재판적 면책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소극), ‘송하인의 동의 없는 재판적 운송’ 해당 여부(소극)
- ‘포장불충분에 따른 면책’ 관련 증명책임의 분배 [해상운송인이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것이 포장불충분 등 면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다는 일응의 증명(prima facie)으로서 충분함. 그 경우 화주가 위 손해는 해상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포장불충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항소기각(원고패)]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국제거래, 해상>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35173(본소), 2020나2035180(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운송료(반소)

[제33민사부 2021. 12. 9. 선고] <국제거래>

심불기각 확정

□ 사안 개요

원고가 아일랜드의 A회사에 DDU조건(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정밀기계를 수출하면서 피고에게 항공 및 육상에 의한 국제운송을 의뢰하였는데, 더블린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 운송업체 B의 창고까지 육상운송 후 하역 과정에서 화물박스가 파손되고 B가 반출을 거부하자, 원고가 A회사에 대체품을 제공하고 피고를 상대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운송계약의 성격(=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 피고의 운송 중 사고 해당 여부(적극) [더블린 공항에서 수입통관 후 B를 통한 육상운송 중 DDU조건에 따른 인도장소인 A의 주소에 도착되기 전 B의 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운송 중 사고에 해당함]
- 몬트리올 협약 또는 상법이 정한 항공운송 중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상법 제135조에 따른 육상운송 중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적극) [B의 인도거절로 이 사건 화물이 수하인 A에 인도될 수 없는 멸실 상태에 이른 점을 인정함]
- 상법 제147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2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 단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조 제3항의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해당 여부(소극) [소멸시효완성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33450(본소), 2020나2033467(반소)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본소),
물품대금(반소) 확정

[제33민사부 2022. 1. 20.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호주의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원고가 국내 개인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세바늘 피부미용기기 EPEN 제품 공급계약의 제3자 판매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본소로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물품대금 내지 손해배상과 연간 보증발주량 부족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본소 청구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반소 청구 중 물품대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소 청구 관련 소멸시효와 상계 및 반소 청구 중 위약금청구 등에 관해서는 CISG에서 규율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 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됨]
- CISG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위반과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완전배상주의에 따르되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제한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따름),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 CISG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음) 및 효과(= 청산효과설에 따르며, 손해배상무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함),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해제 후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하여, 일방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거래를 한 경우 대체거래의 대금과 계약대금간의 차액이 손해), CISG 제81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 되는지(적극),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물품대금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피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
- CISG 제71조에 따라 발주의무가 정지되어 위약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약금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기준일에 따라 의무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위약금 산정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2. 4. 21.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독점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미국 FDA가 의료기기 판매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는 위법한 제품임을 이유로 미국 내 제조·판매 행위의 영구 중지를 명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준거법[=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미국 플로리다주 법(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부와 그 요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증명), 피고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요건(=당사자 일방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취소를 불허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계약을 신뢰한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가 부당할 정도로 입장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어야 하며, 그 착오가 계약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등급과 소재에 대하여 착오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이 사건 계약 취소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인수한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고 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지위와 권리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원고패)

[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또는 피고의 무단반출 관여 내지 개입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여부(소극),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소극)
-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를 통해 F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① 관세법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함.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 ② F는 관할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함
 - ③ F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도 인정됨
 - ④ 관련 법령 규정은 관세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임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제19-2민사부 2022. 8. 17.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인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LST’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스보일러 및 부속품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LST’ 소재 경제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 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조 등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권이 인정됨
- ③ 피고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미얀마 국민들)이 피고(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피고가 미얀마에서 참여한 가스전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원고들과 체결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강요, 부당한 위압, 기망, 절차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얀마 계약법에 따라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미얀마 국적의 원고들이 미얀마 소재 토지에 관한 계약 효력을 다투고 있고 미얀마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함

□ 쟁점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여부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 ① 피고는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소가 제기되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행하는 데 미얀마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 ②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함
- ③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함
- ④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얀마 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 ⑤ 핵심적인 증거방법이 미얀마에 존재하고 준거법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② 원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련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위 부제소합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판력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에서 통상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각하할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원 확정판결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란 본안판결만을 의미하며 소송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②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원고패소판결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기각)]

[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 사안의 개요

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판단

-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피고의 보증은 말레이시아 법상 ‘독립적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6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권리발생일로 볼 수 없고, 주채무자 A가 처음으로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날 또는 늦어도 A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기산됨
-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신청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음. 그러나 A의 재산관리인(receiver)이 대여계약상 담보로 제공된 A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예탁은행이 원고에게 A가 예탁한 예탁금을 교부한 행위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거나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각 교부일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명령신청 접수 당시까지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함. [항소기각(원고승)]

[제33민사부 2023. 6. 15.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 원고는 2019. 1. 28. 사적으로(폐텍스), 미국법원은 2019. 3. 18.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따라 소장·소환장을 피고에게 각각 송달함
-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원은 2019. 4. 8. 결석재판명령을 하였고, 2020. 12. 3. 원고 승소 본안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원고는 위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함

□ 쟁점

-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적극)

□ 판단

- 미국법원의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 송달의 적시성 요건도 구비하였음
 - ① 송달의 적시성 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플로리다주법상 응소기간(20일)이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플로리다주법이 적용된 판결은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인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부당함
 - ② 원고와 피고는 선행된 국내 소송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면서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사적 송달을 받아 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응소기간 내에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응소기간 마지막 날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는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아도 안됨 [항소기각(원고승)]

2022나2023556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7. 13. 선고] <국제거래,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 법인의 실질적 대표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판단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에는 국내에서 송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위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됨
-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개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피고의 행위가 그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2019나2036668(본소), 2020나2018147(반소) 임금(본소), 기타(금전)(반소)

[제15민사부 2021. 8. 13. 선고] <노동>

확정

□ 사안 개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잠탈로 무효라는 환송판결이 있었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사건

□ 쟁점

- 환송판결 전 체결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의칙 위반 여부, 부당이득 성립 여부

□ 판단

- 부제소합의 효력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만 미친다고 판시
- ‘월 법정 최저임금액’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일수 및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법정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 비교대상임금’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금액
-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불포함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어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탈법행위로 인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사납금이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제38-3민사부 2021. 11.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근로자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소극)

☐ 판단

- 위임직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경위, 그 이후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연 20%)은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고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1. 11.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연봉제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존 호봉제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정관의 위임없이 제정된 대학교 내규가 연봉제 시행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후 개정된 교원보수규정이 연봉제 시행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교원보수규정 개정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교원보수규정의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소극)

□ 판단

-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이 가능하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개별적인 임면대상자에 대한 임면 여부나 세부적 계약 조건 기준을 심의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연봉제 임용계약의 도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 결정은 그 심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호봉제 내지 연봉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불과할 뿐 일정한 인격적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도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 내지 그에 기한 연봉제 임용계약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1. 12.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방사선사인 원고가 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대학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대학 병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학교법인인지 여부(적극)
-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방사선사와 대학 병원 소속 정규직 방사선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 정규직 방사선사와의 차별처우(근로기준법 제6조)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구할 수 있는 기준
-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장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연구소를 하부조직, 기관으로 두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 산하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방사선사와 피고 산하 대학 병원 소속 정규직 방사선사는 방사선사로서의 핵심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대체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을 고려할 때 여기서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는 정규직 방사선사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 원고가 피고의 차별 처우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1. 12.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의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과거에는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음)이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A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로서는 피고 운영의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에 관하여 피고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일반적인 시설관리업무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A회사 및 재하청업체들은 시설관리 전문업체임
- 피고는 시설관리위탁계약에서 시설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의 품질 보장과 도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내용이며, 원고들이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표지로 볼 것은 아님
- 원고들이 시설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1민사부 2021. 12.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공단인 피고의 1, 2급 직원들인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로 인해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1, 2급 직원들에 대하여 3급 이하 직원들보다 임금인상률을 낮게 결정한 것의 무효를 주장하며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했을 때의 임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1, 2급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피고가 결정한 임금인상률이 1, 2급 직원들과 3급 이하의 직원들 사이에 차이를 두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판단

- 1, 2급 직원인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으나, 3급 이하 직원들도 장차 1, 2급으로 승급가능성이 있고,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이들은 모두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고 그 전체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동의주체가 됨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노사합의라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별도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임금인상률 결정은 절차 및 내용면에서 적법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직원과 기존 2급 직원 사이에 일시적으로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일시적인 임금역전 현상으로 인해 피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15민사부 2021. 1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은 회사(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원고)들이, 4교대 순서로 근무할 당시 당직근무시간의 근로 내용이 단순히 숙·일직 근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수령한 당직근무수당 이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라 그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초과근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판단기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직근무일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① 당직근무 시 수행하는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처리, 기계실과 전기실 순찰 및 점검 업무는 주간근무시간에도 처리되는 업무임
 - ② 사우나실 역세(逆洗) 및 린스 업무와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가 야간에 이루어지나, 주간 수행 업무와 비교하여 그 내용과 질이 다르지 않음
 - ③ 당직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크게 약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평일은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나머지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① 기계 노후화 등에 따른 오작동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알람에 대응하지는 않음
 - ② 당직근무 중 보고를 2회씩 하는 등 야간근무시간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 소속 특근자가 22:00 퇴근한 후에는 당직근무자들의 근무를 주시하는 사람이 없었음
 - ③ 당직근무 중 심야시간대에 교대로 최소 1명은 근무하였으나, 그 이외의 인원은 번갈아가며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임. (원고일부승)

2021나2005285(본소), 2021나2005292(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반소)

[제15민사부 2021. 12. 10. 선고] <노동>

심불기각 확정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지원실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정규적인 지점장 또는 육성실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구함

□ 쟁점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① 피고가 자체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교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② ‘2회 연속 4급 판정자’의 경우 해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은 모두 원고들이 교육을 담당한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 달성률 등 성과와 관련된 것임
 - ③ 교육에 미입과한 지원실장도 존재하고 평가등급에서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의 정규적인 지점장이나 육성실장의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① 정규직 지점장은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 이외에도 계약 및 민원관리, 지점관리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지원실장은 직접 또는 자신의 교육생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할 뿐 다른 사항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② 원고들은 정규직 육성실장과 달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결재권한 등 지점장을 대신하는 권한도 없었으며, 교육생 보고 이외에 따로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수수료 지급방식
 - ① 지원실장 수수료는 강의시간 등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육대상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업무 성과에 기반한 것임
 - ② 교육생의 영업실적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원실장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패)]

[제15민사부 2022. 1.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사립대학 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인 교원인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였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사립대학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및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고용계약이고 원고는 근로자임.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이 피고 소속 교원들의 승진, 징계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업규칙에 해당함
- 일부 연구업적 점수 등 기준이 강화되었고 기준 미충족시 기존 승급유예에다가 직급수당 감액이라는 제재도 추가된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 워크숍은 피고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었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피고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고(목적의 정당성), 주기평가 트랙을 다양화하여 평가기준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수단의 적절성), 일부 연구업적 및 필수연구업적 기준이 완화되었고, 트랙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유리한 요소 존재), 변경된 요건 충족 사례도 존재하고(내용의 상당성),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변경 절차에 상당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고 패)

□ 사안 개요

갑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의 직원이자 수리기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을 한 사건 [민사사건 1심(당해사건 1심)과 관련 형사사건 2심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1심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던 사안임]

□ 쟁점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① 피고는 갑 회사가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갑 회사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이는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업무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갑 회사 제품 수리 업무는 피고의 사업 목적 그 자체에 해당함
- ②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에 포함되는 2010년경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85.8%를 수리업무로 달성하였고, 협력업체들은 그 수리 물량의 98%가량을 처리함
- ③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업무수행은 피고뿐만 아니라 갑 회사의 이미지 및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수행 방법, 수행 태도 등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였음
- ④ 협력업체들은 피고와의 서비스업무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⑤ 피고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 ⑥ 협력업체에 수리기사의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2020나2008508, 2008515(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근로자지위확인등(병합)

[제15민사부 2022. 1. 28. 선고] <노동>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피고(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과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가 들고 있는 판단 요소 중 ① 상당한 지휘·명령, ②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이라는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지표인 반면, ③ 원고용주의 작업배치권, 인사권 등, ④ 계약 목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 기술성 유무,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 요소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함
-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직접생산공정(도장) 외에 간접생산공정(서열·불출), 보전업무, 수출선적업무(출고업무) 관련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서열·불출 업무 관련) 도급계약의 목적 자체가 변동되는 사양에 맞춰 해당 부품을 적시에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사양과 서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원청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2. 1. 2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법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조건에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

□ 쟁점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논거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이로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규정인 점
- ②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되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최저기준의 설정에 관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 ④ 집단적 동의제도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한편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측의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며 집단적 동의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 대등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면에서 법규성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항소기각(원고패)]

[제1민사부 2022. 4. 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근로자들이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정산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안

□ 쟁점

-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시 부담금의 정산 방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판단

-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함
- 근로자가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종전 재직기간도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동일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급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함이 타당함
-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하는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는 중간정산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함.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 “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 [향소기각(원고승)]

[제15민사부 2022. 5. 1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지자체 또는 그 수탁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위 각 지자체나 지원센터 등을 상대로 포괄임금제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일부 피고들인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 주체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지원센터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수탁단체들이 지원센터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 근로계약상 각 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전후로 각각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방문가정 수에 가정당 교육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임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나 ‘1개월의 개근에 상응하는 근로 제공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초 계획과 달리 수업시간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이미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근로 시점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보수교육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들의 보수교육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에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38-2민사부 2022. 5. 17.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
 - 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임
 - ③ 정기상여금의 각 분기별 지급이 명절 등의 시점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① 피고 사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라고 명시하여 공지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들에게만 이를 지급하여 왔음. 피고는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함
 - ② 피고의 임금규정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장이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재직조건을 부가하여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어 왔으며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2. 6.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피고5(회사)가 직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위 해고가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② 피고5와 나머지 피고들(피고5 또는 소속 그룹의 임원들)이 위 해고 전에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일상생활 감시, 장기 해외파견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한 사안

□ 쟁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5에 대하여만 적극)

□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선행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 피고5는 2002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동향, 면담 결과, 고립화 방안, 원고가 민주노총 인사들과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 또는 보고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5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단발적으로 취합·관리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저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의 동향 등 정보를 취합·관리·보고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나머지 피고들이 위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2. 8. 2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인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 및 소명’을 허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사정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및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일부 적극)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룸. 피고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 대표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표가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임
- 피고가 원고의 여러 법인카드 결제건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중 일부만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인정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액수, 횟수 및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어서 실체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보험회사인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들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제도(‘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FP) 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진 후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소극), 이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 인정 여부(적극)
- 사용자가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적극),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원칙적 소극)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 판단

- 희망퇴직 내지 명예퇴직제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지원 중 하나인 교육비 지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명예퇴직 승인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퇴직예정일 도래 전에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퇴직예정일이 도래하여도 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원고들에게 인정된 ‘재직 중 보험설계사(FP) 조직 유출’ 만으로도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제1민사부 2022. 9.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다국적기업의 회장이기도 함)로부터 해고됨
- 원고는 본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급여 과다 수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위촉수당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로 적법함
-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여러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원고와 같은 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
- ②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계약기간의 정함도 없었음. 원고는 월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계산방식이나 액수에 비추어 상여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내지 보수의 성격이 강함
- ③ 비록 원고는 매주 회장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및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작성된 영문 고용계약서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촉수당은 피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2. 9. 23. 선고] <노동>

□ 사안의 개요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휴직사유 및 기간’ 조항에서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 석방시까지. 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 단체협약 징계조항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사건 규정’). 원고는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2016. 7. 구속되어 형사휴직에 들어갔고 2017. 5.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석방되었으며, 2017. 5. 31. 실형이 확정됨
- 피고 회사는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원고의 형사휴직 중 실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2.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심의의결하고 원고를 해고함

□ 쟁점

- 이 사건 규정이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피징계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석허가결정, 집행유예 판결 선고 등으로 석방될 때까지 형사휴직을 허용하며, 형사휴직 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보석허가 결정 등으로 석방되어 형사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① 이 사건 규정은 명문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징계사유와 나머지 징계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② 이 사건 규정은 구조상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닌 형사휴직에 관한 조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형사휴직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③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즉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석방되거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비로소 징계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징계권과 방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사용자의 징계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시기적 제한을 둠으로써 징계권 행사방식을 정한 것이므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휴직 중임에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과거의 연봉계약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봉액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연봉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자율적인 의견 교환 기간을 부여한 다음 부서별로 동의서를 취합함.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경제적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대체로 연봉이 상승하도록 운영한 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을 경이(輕易)하게 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년의 연장 자체가 중요한 대상조치인 점,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점, 임금 감액비율과 속도가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차별을 두지 않은 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관한 지원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차별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38-1민사부 2022. 11. 1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공기업인 피고의 자회사는 세무회계 사무소(‘A사무소’)와 6개월간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사무소 소속 세무사인 원고를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이 사건 쟁점기간’).
- 자회사는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제1 근로계약’). 피고는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제2 근로계약’),
- 피고는 1년 뒤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종료통지’).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적극)
 - ① 자회사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업무를 벗어나 자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직책을 가지고 직접 근로를 제공한 점, ② A사무소가 위임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등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한 점, ③ 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이 위임보수 명목으로 A사무소에 지급되었다가 일정액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그대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적극)
 - ① 이 사건 쟁점기간과 제1, 제2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 ② 설령 묵시적 근로관계가 부정될 경우더라도 피고는 파견법의 범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제1, 2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8다 207847 판결),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
- 이 사건 종료통지의 효력(부당해고로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 없음]
-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인용.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2. 11. 1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는 2년 임기로 정하여 피고 공사에 전문업무직으로 임용되어 사내번호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임기 만료 즈음 갱신을 거절함. 원고가 계약내용 및 규정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적극)
 - ① 전문업무직(사내번호사)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필요시 재계약 가능’ 이라 공고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여부에 반영한다’ 고 정하여, 갱신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 ② 업무직관리규정에서 업무직업무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전문업무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갱신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업무직에 관하여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원고는 번호사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이나 피고의 규정상 갱신 제한사유가 없음
-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소극)
 - ①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성적 평가를 계약 연장여부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직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승인시 목표과제(직무)와 업무수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평가기준은 업무실적이라고 보아야 함
 - ② 원고는 직무역량 평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지하기 직전의 2차평가(사장)를 제외하고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 ③ 이 사건 계약연장 심의 과정과 이 사건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있고 사내번호사 업무 계속의 필요성도 있었으나, 갱신을 갱신하는 경우 인력운용의 유연성 감소를 우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임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임.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2. 12. 1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신용카드회사)는 2020. 8.경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2020. 1.경 임원직에서 퇴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경쟁사 이직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쟁점

-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정한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인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 시 원고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 ①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방법과 지급조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임. 특히 장기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임원 개인의 업무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이라는 점에서 다른 성과급에 비해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큼
 - ② 피고가 운영하는 장기성과급 제도는 임원들이 높은 성과보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기성과급을 수년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음
 - ③ 장기성과급의 성격, 장기성과급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장기성과급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지급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성과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 ④ 원고는 전략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직전에는 미등기 임원들 중 경영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한 원고가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경쟁사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영입되어 피고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지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쟁사에서 마케팅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영업전략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항소기각(원고패)]

[제15민사부 2023.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사이에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디자인센터 또는 사이언스국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임
-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 디자인센터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되어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을 담당하거나, ㉡ 브랜드팀에 소속되어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 제작그래픽팀에 소속되어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 ①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 수행
- ②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 조퇴, 휴가 등 사용하고, 일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관하여 매월 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함
- ③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함(2021년 이후에야 분리)
- ④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고, 피고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함
- ⑤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고,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일할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음
- ⑥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 ⑦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 ⑧ 피고의 필요에 따라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함
- ⑨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항소기각(원고승)]

[제15민사부 2023. 1. 1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 협동조합은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공동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함
-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함
-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어 피고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피고는 2020. 8.경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 쟁점 및 판단

-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소극) [피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피고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 ①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 ② 피고 조합은 인사규정은 [신분보장] 조항에서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하면서,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위 인사규정(취업규칙)은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이러한 제한에 구속됨
-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무효)
 - ① 만일 인사 규정에 정하여진 면직사유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보장 조항은 무용한 것으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됨. 피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② 그런데 피고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 (원고승)

[제38-1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 ①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수행을 하였는바, 위탁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파견관계로 볼 수 있음
- ② MD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견근로가 가능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5급 정규직(피고 직제 중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직급)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① MD업무는 근무경력과 직급이 다양한 피고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정기간씩 담당하였고, 특정 직원이 고정적, 지속적으로 MD업무만을 담당하지 않았음
- ② 피고 직원 A는 5급으로 입사하여 8년 뒤 4급으로 승진한 19년차 정규직 직원이었고, 당시 단기간 동안 MD업무를 담당하였음
- ③ 고용의무 발생 당시 피고 정규직 중 5급인 직원은 없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르면 5급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원고를 4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MD업무를 하던 파견근로자를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음
- ④ 사업장의 업무현황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경력,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함께 한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용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통신채권, 민·상사채권, 공사채권(국민행복기금채권), 금융채권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위임직 채권추심원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 ①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여부나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 ② 관련 법령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실적인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할 유인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위임관계에서도 취해질 수 있음
 - ③ 피고가 근무태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거나 일방적으로 채권을 재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
 - ⑤ 위임계약에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중 겸직을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15민사부 2023. 4.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함.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소위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재직자 조건 규정이 없으나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 쟁점

- 운영예규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취업규칙과 운영예규가 상호 상충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의 적용 순서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영예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충적 규정 내지는 실무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우선 규율되도록 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로 제정되는 예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② 이 사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반면, 운영예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피고는 운영예규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③ 각 체력단련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운영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소위 재직자 조건이 없고,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유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됨. [항소기각(원고패)]

[제38-2민사부 2023. 5.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소극)

□ 판단

-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임
 - ① 피고는 행정자치부 발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12월경 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평가급의 지급액을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로 규정하고,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②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체평가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도 퇴직 전년도 분의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함
-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① 피고 보수규정에는 평가급의 지급기준과 지급률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고,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피고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한 개인별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여 결정된 지급률에 의해 산정한 평가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음. 그 지급기준이 매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예산편성기준의 발표 이전에 미리 최소한도로 보장된 자체평가급에 관한 규정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② 피고는 당해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평가급을 배분하면서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합산한 후 개인의 근무평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화 과정을 거쳤음. 2017년 및 2018년 예산편성기준에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되어 평가급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반영하여야 하는 비율에 불과할 뿐이고, 위 금액을 따로 보장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음. (원고일부승)

[제15민사부 2023. 5.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 등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평일 오전에 출근하여 영업계획 수립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주부사원 미팅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지역으로 가서 영업활동을 한 다음, 영업을 마친 후 저녁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영업활동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외근 근무의 특성, 회원가입 권유 업무의 특성상 외근 시 근로강도가 높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유효한지(소극)

□ 판단

-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기재로 보임.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매일매일 정해진 업무량과 일정이 부여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스케줄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창에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와 업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였던 점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3. 5. 3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 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은 피고의 조직·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시행세칙 중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2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은 ‘근무기간’과 ‘정년’이 별개의 개념임을 전제로 대학교원의 근무기간 및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기간이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②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의 종기가 정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결국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음. (원고패)

[제15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피고는 SRT 운영 회사임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음
-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 청구

☐ 쟁점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① 승무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음.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하는 것임
- ②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 원고들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음.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 산출되고 각 직급과 직무별로 거리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③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3498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77184 판결)와 비교하여 보아도 이러한 결론이 타당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함. (원고일부승)

[제38-1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노동조합인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하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 그 후 A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해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가능한지(적극)

□ 판단

-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이행청구권이 있음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됨
 - ①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음.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함
 - ②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피고에게 교섭청구를 계속해왔음에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가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되거나 교섭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③ A노조 설립이 무효이더라도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청구가 과거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는 기존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기간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음
 - ④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교섭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님. 세부적인 교섭사항이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교섭사항의 조정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이후 상호 교섭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음. 따라서 교섭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님 (원고 승)

[제15민사부 2023. 7.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하였음
-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생기게 하고, 근속기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함

□ 쟁점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노동조합(원고)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음
 - ① 원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유무효에 따라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을 둘러싼 조합 내부의 책임 소재, 원고와 조합원의 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준수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음
 - ② 위 조항의 유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 액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 ③ 이 사건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조항이 강행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분명한 사안에서도 근로자 개개인이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조항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므로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게 됨
- 다만,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음 [항소기각(원고 패)]

[제38-2민사부 2023. 8. 2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 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를 지급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 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 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 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소극)

□ 판단

-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 피고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 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다름.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 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은 근로자들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별 급여체계에 따라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 됨. 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 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 출하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18민사부 2021. 9. 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감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주주대표소송)

☐ 판단

- 이사의 감시의무의 대상은 다른 이사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 나아가 피용자가 집행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판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인 피고들이 임직원의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제14-2민사부 2021. 9. 9.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위 선택권을 행사한 사건

☐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여계약의 효력을 착오에 의한 취소 등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정에 관한 고려 대상으로서 동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하위직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해고 처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한 임원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착오 유발로 이를 알지 못했던 회사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부여계약 일부 취소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원고일부승)

[제14-3민사부 2021. 10. 14.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주주인 원고가 상법 제398조가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대표이사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2011. 4. 14. 개정되면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가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2011. 4. 14. 개정 전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2005다4284 판결)은 위 승인에 사후 승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음. 그러나 개정 후 현행 상법 제398조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 승인이나 추인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계비속에게 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함. (원고일부승)

[제18민사부 2021. 11. 26.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의 주주 A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제1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주주명부 기준 A보유 주식을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 이에 대한 원고의 즉시 항고에 따라, 항고법원이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이 밝혀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함
-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함

□ 쟁점

과거 시점에 주주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주 지위를 부인당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를 다투어 왔음
 - ② 회생계획에 원고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더라도 주주 지위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후속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③ 원고가 주주였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어 심리·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함[별도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함]
 - ④ 이 사건에서는 이미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리하여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원의 본안판결에 따른 부담을 절감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음. 오히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경우 법적 분쟁을 최종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법절차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반함. (원고 승)

[제14-2민사부 2021. 12. 2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피고로부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피고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소송에서 원고(수익자)와 피고(채무자)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어 피고(채무자)의 원고(수익자)에 대한 주식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피고(채무자)와 원고(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피고의 채권자와 원고(수익자)의 관계에서 피고(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뿐, 피고(채무자)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는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승)

[제12-2민사부 2022. 1. 12.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1과 A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정에 따라, 원고1은 A의 주주였던 피고로부터 A주식을 매수하고 피고는 원고1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1 주식을 취득함. 이후 위 협정의 종료 및 원상회복 합의에 따라, 원고1과 피고 사이에서 최초 취득한 위 각 주식을 다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가 체결됨
- 피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 해지를 통고한 후 원고1 주식을 전부 타에 매도하고 원고1로부터 받은 A주식을 원고1에 반환하자, 원고1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에 따른 원고1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또는 그 해석상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음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① 원고1은 A와 사이에 전략적 제휴협정 및 원상회복 합의를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협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상법 제341조의2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취득 허용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인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 ②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원고1이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를 체결한 것은 기존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1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됨.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상 권리·의무를 원고2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18민사부 2022. 1. 14.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인 피고가 이의함.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중단됨. 이후 A회사에 대한 2차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다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어야 한다’ 는 이유로 각하됨

□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 에 선행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이의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처리방법
- 선행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폐지되었음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수계가 없었던 경우, 후행 회생절차에서 동일한 관리인만이 이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소송수계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선행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후행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그 소송수계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함
-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이때의 수계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음
- 관리인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었고 후행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가 관리인 외에는 없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항소기각(소각하)]

[제14-3민사부 2022. 3. 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신탁재산인 甲사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甲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원고의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려면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1다84335 판결 등), 담보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약정금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주요한 발생원인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제6호(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제15호(그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甲사 주식은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의 업무 및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므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관련 청구권도 아니며, 원고가 납세자인 이상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의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승)

[제16민사부 2022. 3. 31.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가 원고(증권사)로부터 자금 차용 과정에서 10% 이자 약정 외에도, 대출취급수수료 1억 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피고회사의 실질 사주인 피고1로부터 시행사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약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약정함
-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자, 피고들이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24%를 초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8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는 주식예약완결권 취득은 메자닌 금융기법(mezzanine capital)에 따른 투자의 대가이므로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툼

□ 쟁점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 ①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면서 이자로 간주하는 것에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은 물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②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고, 금융자문수수료도 금융자문에 대한 대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금융자문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대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됨. 주식매매예약완결권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자로 간주되며, 그것은 차주인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1 개인이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③ 원고가 수령한 이자,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임. (원고패)

[제14-2민사부 2022. 5. 12.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구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50%가 소각되자 주식매매대금도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다툰 사건

□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주식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채권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등),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다270916 판결 등),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채권계약으로서의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으로 특정된 이상,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된 이 사건 주식 50%는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양도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승)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제16민사부 2022. 7. 21.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중국의 에너지기업 CERCG가 자회사인 CERCG캐피탈(버진아일랜드 설립) 발행의 거액의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함.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하고 원금 1,635억 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사건 ABCP’)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설정한 펀드(‘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ABCP를 50억 원어치 매수함
- 이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가 부도 처리되자, 펀드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운용·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게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역시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①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② 그 운용과정에서도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 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14-3민사부 2022. 9. 1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탁금을 브라질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원고에게 ‘증권’인 브라질국채를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브라질국채)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소극)

□ 판단

- 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 증권의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9항은 ‘매출’을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음
- ②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고,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임
- ③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브라질국채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에게 ‘브라질국채 매수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님
- ④ 수탁회사가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심불기각 확정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피고는 해외 부동산사업을 위해 A법인과 B현지법인을 설립함. 대주단은 피고가 설립한 C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함. 위 대출약정에서는 ① 피고의 C, B에 대한 채권은 대주단의 채권에 후순위이고, ② 피고가 C, B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지급받거나 회수한 금원을 대리은행에 반환하기로 정함(‘이 사건 후순위약정’). 이후 대주단의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됨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후순위약정 관련 권리는 신고되지 않았음.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C, A에 대해 파산선고됨
-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작위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는지(소극)
-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회생절차개시 전 부작위의무 위반이 존재할 것)

□ 판단

- 부작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의 이용에 따라 만족을 얻는 청구권에 한정됨을 의미함. 부작위청구권은 그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② 부작위청구권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함
 - ③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회생채권의 액수 산정 등 회생절차의 실무상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따름
- 반환청구권 등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후순위약정의 체결과 피고의 부작위의무 위반인데, 위 위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에 따라 비로소 갖추어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일부승)

[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원고가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사업부(‘이 사건 사업부’)를 분할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매도하면서(‘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사업부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부진(제1사정)과 주거래처에 대한 1년간의 수주 실패(제2사정)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 사정인지(적극)
-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매수인이 알았던 사정’을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경우, ‘알았던 사정’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 산정방법(=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1, 2사정은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피고들의 거부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에 기재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알았던 사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최종매매대금을 이 사건 사업부의 LTM EBITDA(최근 12개월 차감 전 순이익)에 멀티플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제1, 2사정은 각 1년간 경영실적의 악화를 초래할 뿐인 점을 고려하여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감소한 각 1년간의 차감 전 순이익의 합이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 합자회사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 <상사>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 등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A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 이 사건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사는 B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원고는 B사의 합병신주 및 기존에 보유하던 B사의 구주(舊株) 중 1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함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의 파기환송심임

□ 쟁점

-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적극)와 책임의 제한
-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A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B사 주식 중 1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상법 제403조 제5항) 원고적격이 유지됨. 주식 처분시 선임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면서 B사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합병신주 1주를 남길 의사였다고 보아야 함
-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A사는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태양,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피고의 지위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억 원으로 제한
- 담합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발생한 이익을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제외하거나 손해액과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담합행위를 실행하려는 임직원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인기 화장품을 제조하여 B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A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서 이 사건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이 사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함. 원고들은 이 사건 PEF에 출자금을 납입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임
- 이 사건 SPC는 A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됨
- 그 후 A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출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PEF 설립·운용자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PEF 설립·운용자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

□ 판단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의 투자대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LP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 설립 이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게 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 이 사건 PEF 설립·운용자인 피고들은 투자대상인 A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제12-1민사부 2023. 2. 15.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원고(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 등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가 담합의 기본합의에 참여하여 제2차 공구 중 일부에는 대표사로 낙찰을 받고 일부에는 들러리로 참여함. 이후 피고에 대하여 제1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당시 대표이사였던 A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됨
-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피고에 대하여 제2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제2회생절차에서 담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또는 귀속되는지(소극)

□ 판단

-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또는 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공정거래법이 ‘손해 발생’, ‘이익 취득’을 위반행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위반행위 효과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구분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할 것에 대한 피고의 공모(또는 고의), 그에 기한 피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원고의 손해 발생,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가 증명되어야 함
- 피고의 담합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성립된 후 구체적인 위법행위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전에 피고에 대한 제1회생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서, 제1회생절차 전에 있었던 피고의 담합(불법행위)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공적 수탁자로서 재산의 관리처분권 한만을 이전받는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내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원고패)

[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통정허위표시 여부(소극)
-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 피고의 대리인 B는 금전 거래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실사주인 C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 B로서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무효인 약정을 추인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실사주 C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차용금 30억 원은 전부 상장회사에 대한 C의 개인적인 지배력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의 대리인 B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자가 C임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제12-3민사부 2023. 4. 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소방용품(공기호흡기용기) 조달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용기 내 이물질(알루미늄 가루) 발견 등 사유로 불합격되자, 원고는 다시 청소·점검을 했다고 밝히며 재검사를 요청함. 피고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고 계약해제 통보를 함
- 원고는 고압공기 분사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포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납품대상 물품 전부를 청소하고 다시 포장·보관한 상태에서, 물품인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당초 검사·검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용기 내 이물질 발견 때문인데, 당시 발견된 이물질은 미량이고 세척 작업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용기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이물질이 상시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검사 요청에 대해 재검사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반려 통지만 한 것으로는 관련 예규상 계약담당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용기는 원고의 재검사 요청 당시 및 현재까지 최초 부적합판정 사유였던 이물질이 모두 제거되고 외관 및 성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보관되어 있어, 재검사 시 다시 불합격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가 재검사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용기의 상태와 보관 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검사 이행거절 등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재검사에 합격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지급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원고일부 승)

[제8민사부 2021. 8. 19.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전 중수부장인 원고가 ‘원고가 노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피고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위
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암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
- 위법성 조각 여부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암시하거나 적시하는 방법으
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사실에 관한 시간과 장소가 언론보도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의 허위 여부는 피고가 그러한 사실
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가 그 신빙성을 탄핵하
는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허위성도 증명되었으며,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1. 9. 10.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정정보도의무 이행판결과 아울러 위 의무이행 불이행에 대비하여 명한 간접강제결정이 확정된 후, 위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

□ 쟁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 정정보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이 채권자가 그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 경우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참조). 그러나 대상 사건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확정적이어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도 위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간접강제 배상금의 본질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은 간접강제 대상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성질,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 이행의 난이, 불이행의 계속으로 채무자가 얻는 이익, 불이행의 사회적 영향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고 그 배상금을 정하는 점,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 간접강제 배상금을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 한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간접강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단계에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8민사부 2021. 11. 25.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아귀점 식당에서 상한 아귀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했다는 보도를 한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허위 보도인지(적극)
- ‘본점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했고, 체인점에도 상한 아귀가 일부 납품되었다’는 보도 내용이 ‘체인점에서도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지(소극)

□ 판단

- 아귀점 식당에서 과거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상한 아귀가 사용된 기간과 빈도,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도 “그동안 상한 아귀를 섞어 팔았다”라고 보도한 경우,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과거 일정 시점부터 보도 무렵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상한 아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제된 보도에서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 그런데 이 사건 보도는 체인점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도 전반부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본점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다음 상한 아귀가 체인점에도 일부 납품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보도 내용 자체로 전반부에 보도된 음식점은 체인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반부에 ‘본점에서 공급된 아귀를 쓰지 않았다’는 체인점 운영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을 통해서 ‘체인점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4. 8.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허위사실들이 적시된 기사가 작성·보도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위 같은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건

□ 쟁점

- 어떤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기사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언론보도가 있는 날이라고 보아,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함(쟁점에 관한 판단)
-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추가의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정정보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4. 22.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신천지의 뿌리는 박태선의 전도관으로 올라간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는 신앙촌에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전도관’으로도 불리는 종교단체인 원고가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으로 약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예비적으로 반론보도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요건인 ‘정정/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론이 정당함
-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라고 특정한 “신천지의 폐쇄적인 신도 관리 방식 및 사기적인 전도수법은 천부교에서 비롯되었고 천부교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사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 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제9민사부 2021. 10. 28.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병원 의료진이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진단 환자에게 그 원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비장 조직에 초음파내시경 유도 하 세침흡인술(Endoscopic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환자에게 위(胃) 또는 비장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시술 전 준비단계에서의 과실 여부(소극)
-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여부(소극)
-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적극) [활력징후 측정이나 CT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
- 출혈에 대한 조치상의 과실 여부(적극) [대량출혈 발생시 적극적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제9민사부 2021. 11. 18.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자궁내막암 3기로 자궁적출술을 받은 망인이 혈관형성이상 병변에서 발생한 다량의 상부 위장관출혈로 사망에 이르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검사 등을 못한 불완전이행책임 주장의 당부(소극) [진료채무 불완전이행은 해당 진료가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평균수준 미달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임을 뜻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위장관 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서 볼 때 진료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망인의 쇼크 발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지체책임 주장의 당부(소극)
- 설명의무 등 위반 주장의 당부(소극) [항소기각(원고패)]

2019나2053700(본소), 2021나2021065(반소) 손해배상(의)(본소), 병실퇴거 등
청구(반소) 심불기각 확정

[제17-1민사부 2021. 12. 2.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기관지 튜브 삽입 상태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튜브 발관 후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환자와 처, 자녀
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병원 측이 환자 등을 상대로 입원진료계약 해지에
따른 병실퇴거, 간병비 등 부당이득반환 및 진료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의 가족
도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경
우,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입원치료가 계속 필
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병원 측이 퇴원을 구할 수 있는지[입원진료계
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적극) (원고일부승)

2021나2013354(본소), 2021나201336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심불기각 확정

[제17-1민사부 2022. 1. 2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노년성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청구하자,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시력교정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이 사건 수술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소극)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①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은 인공수정체 사용이 필수적인데, 그 종류(단초점, 다초점)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이상 시력교정 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② 이 사건 보험약관은 2016. 1. 1.부터 시행된 표준약관과는 달리 부보대상에서 이 사건 수술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① 판례상 입원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도 위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② 이 사건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 ③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진료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발생한 부작용·합병증 등 문제, 구체적인 처치·관리 내용, 입·퇴원시간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음. (원고일부승)

[제17-2민사부 2022. 9. 29.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와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거리는 2~10mm가량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실시된 운동유발전위검사(MEP monitoring)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직접적인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늑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MEP 신호강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이를 극심한 신경자극에 해당한다거나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 부위가 척수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척추로부터 떨어져 있음
 - 추궁판 절제술과 늑골 절제술이 시행되면 고착된 척추 만곡의 구조에 가동성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척추 측만증을 교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척수의 압박 또는 신연에 의하여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손상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향소기각(원고패)]

[제9민사부 2023. 3. 3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피고 측은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 1심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항소심에서는 개호비의 인정 범위가 주로 다투어짐

□ 쟁점

-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개호비 인정의 범위

□ 판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책임비율(40%)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체감정(정신과)이 다시 이루어졌고(동일 의사에 의함),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향후 원고에게 1일 4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기왕 개호비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음)
 - ①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달라진 정도와 그 내용, 피고 제출의 동영상에 드러난 원고의 모습[일반 공중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밀착’ 보조가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동안 혼자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시개호 대상으로서 1일 8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그러나 원고 개호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고, 당초 원고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입원기간 동안 병동에서 보인 생활 모습, 임상적 진단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상대방인 피고가 선별적으로 제출한 짧은 영상자료에 드러난 단편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③ 무엇보다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정신과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의견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원고일부승)

[제9민사부 2023. 4. 13. 선고] <의료>

□ 사안의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짐
 -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함(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려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고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회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2. 2. 17. 선고] <중재>

□ 사안 개요

- 피고 갑(운송인)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을에게 운송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갑과 을 중 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운송료를 청구하는 제1중재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배척당함(제1중재판정). 원고는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청구하는 제2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상법 제840조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제2중재판정)

□ 쟁점

- 중재절차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중재합의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제2중재판정)
-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중재법을 따르지 아니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제1, 2중재판정)
-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할 사안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할 사안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제1, 2중재판정)

□ 판단

- 이 사건 정산금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중재합의대상인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제척기간 도과를 문제삼지 않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며, 중재판정부는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소송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제1, 2중재판정에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중재법을 따르지 아니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 사유 인정되지 않음
-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란 단순히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으로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뜻하는데, 제1, 2중재판정에 위 사유 인정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중재>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함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항소기각(소각하)]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 ‘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제33민사부 2022. 12. 8. 선고] <중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음
-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를 토대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았음
- 원고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우선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같은 날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서로 다른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2부가 각각 작성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방법의 해석

□ 판단

- 원고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형태,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정의와 표준계약서 서식,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가 각각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사이를 규율하는 주된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이고, 원고의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시키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부수적인 계약서로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배치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중재에 따른 분쟁해결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함. (원고패)

2020나2038172 손해배상

상고심 계속중

[제4민사부 2021. 9.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제품제작 수급자가 도급자를 상대로 제품제작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도급자와 수급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영업비밀의 귀속관계(= 공동 귀속)
-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 중 1인이 다른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영업비밀 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님] (원고패)
- 동일 쟁점의 2020나2016653 사건도 같은 날 판결 선고

[제5민사부 2021. 10. 21.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음악저작물의 작곡 또는 작사한 저작권자들인 원고들이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각 음악저작물(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하여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의 응원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성격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소극)
- 저작재산권의 침해와 달리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동저작물적 성격을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소극) [악곡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변경이 없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창작성이 없음. 가사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없음]
- 작곡가인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작사가인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소극) [원래의 가사와 개사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제4민사부 2022. 1.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가 ‘대성’이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한 원고와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상호사용계약기간 종료 후 ‘티에스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자, 원고가 상호사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티에스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사용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

□ 쟁점

피고가 ‘대성’을 단독으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대성’이 포함되어거나 대성그룹이 연상되는 유사상호의 사용까지 금지되는지 여부

□ 판단

- 상호사용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문언의 객관적 해석, ‘대성’이라는 상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나 원고나 원고 계열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계약을 근거로 피고의 장래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티에스’와 ‘대성’이 명칭과 의미에 있어 분리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상호사용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의 상호에 ‘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성’이라는 단어에 한하여, 피고가 이를 상호의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 및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티에스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대성’ 부분의 사용금지를 명함. (원고일부승)

[제5민사부 2022. 4. 2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애완동물 소변검사 자가진단 키트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이에 연계되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원고가 피고들의 애완동물 소변검사 자가진단 키트 제품 및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상품의 생산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 원고 상품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각 타인의 상품,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내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고들의 상품이 원고 상품과 대비하였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들의 상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려동물 소변검사 키트 등’ 이 일정한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구 또는 기능적 표현 형태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제품의 형태 또는 영업활동으로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 상품은 피고들 상품과 대비하여 포장의 고양이와 강아지 및 육각형의 도형이 포장에 배치된 위치, 크기와 형상, 제품명, 가로 세로 비율 및 색상이 다르고, 원고 진단키트 제품의 검사스트립, 비색표 및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은 각 소변검사를 하는 제품 및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통상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보임
-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 진단키트 제품과의 차별성 있는 부분은 그 내용상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선행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었거나, 통상의 유사한 제품이 가질 수 있는 형태이거나, 원고만이 독점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설령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피고들 상품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4민사부 2022. 4. 2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피고가 제작·판매한 가방이 원고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 가방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 원고 가방이 선행 가방들에 개시된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상품 형태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가방과 피고 가방은 가방의 길이, 높이, 너비를 비롯하여 가방의 형상을 구성하는 조임끈, 조임끈을 관통시키는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하여 조임끈을 조일 때나 조이지 않을 때나 앞면, 옆면, 뒷면이 형상이 같음. 내부 수납공간이 피고 가방에 존재하지 않고, 소재와 색상이 다른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이고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밖의 차이점은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상품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음 (객관적 형태 모방). 피고 가방이 원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한 것도 인정됨 (주관적 모방의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혼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 원고 가방의 형태가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동종 상품이 흔히 가지는 물개성적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제4민사부 2022. 5. 12.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모르파티’ 음원(‘이 사건 음원’)의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믹싱 등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음원이 포함된 음반을 발매·유통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 위 음원의 음반제작자로 등록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음원의 1/2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음원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음반제작자로서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보려면 실연이나 프로듀싱 등 음반제작에 관한 사실적, 기능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하고, 음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반의 성공에 따른 이득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반면에 실패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 음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획’과 ‘책임’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에 미쳐야 하고, 일부 과정에 기여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만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음반제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일부 과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라면 공동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이견우에게 곡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는 소속 가수 김연자에게 가창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음원 제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원 제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음원의 발매·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음반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한 손익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음원의 제작·판매의 전 과정을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화를 원고와 후행 감독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영화는 원고 촬영 영상에 후행 감독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과 영상편집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된 것으로 원고 촬영 영상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기술자문계약 및 관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기술자문료 산정을 위하여 피고 제품 중 원고 특허 실시 제품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사안으로, 제1심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인 사건

☐ 쟁점

- 전속관할 위반 여부(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함. (파기이송)

[제5민사부 2022. 6.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를 통해 건네받아 이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내 남자의 여자’를 집필하였고, 피고들은 위 시나리오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음
- 원고가 이에 대해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입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소극)
-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A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 시나리오 사이에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 중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피고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원고의 저작물을 차용하여 연출하였다고 원고가 특정한 장면들을 저작권 침해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의 영상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거나 전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제5민사부 2022. 9. 1.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회사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C’S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소극)
- 피고 측 파일들이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공사관리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적극)

□ 판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되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그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 COC’S 프로그램은 코볼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측 파일들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나 JSP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서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과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재무 부분은 프로그램 언어와 구동방식이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과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모두 웹 방식으로 JSP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인 점, 디렉토리 이름이 일치하고 파일 유사도가 82.7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한글 주석이 피고 측 파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을 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일부승)

[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S&T 미디어’ 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도 함. 피고는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S&T 미디어는 S&T 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적극)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피고와 S&T 미디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적극),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효)

□ 판단

- 원고가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S&T 미디어임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OST 제작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에 있는 점, OST 제작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저작재산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 목적물은 저작인접권 및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 관련 채권·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일부승)

2021나2006264 상품공급대금 등, 2021나204347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11171 물류용역대금 등 심불기각 확정
[제4민사부 2022. 11. 24.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 내에 있으면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식재료,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A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B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분리되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 관계로 바뀌면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②사건),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삼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음
-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①, ③사건).

□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A회사가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 계약인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A회사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B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
- A회사가 B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장한 사유들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 B회사는 A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얻었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모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하여 5년 연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B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①, ③사건 원고일부승, ②사건 항소기각(원고패)]

[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 제1 내지 5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정산금, 부당이득금

□ 판단

-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 기재 음반명, 제4차 계약 선인세의 지급일자, 피고의 정산내역에 확약서 기재 채무 외에 제4차 계약 선인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은 포함되지 않음. 제3차 계약서에 수익분배비율이 원고 몫으로 7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를 변경하는 명시적인 문서가 없는 점, 관련 직원의 증언 등에 비추어 제3차 계약에 따른 원고의 몫은 70%임
- 각 계약서에 피고의 음반판매를 위한 영업, 배송 등 관련 비용 부담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각 계약상 피고의 역할은 유통업무인 점, 각 계약에서 음원유통을 제3자에게 의뢰할 것을 전제하였거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A사의 유통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을 각 계약의 수익분배기준으로 정했다고 봄이 타당함. 제3차 계약 업무를 직접 수행한 증인의 증언내용, 과거 선인세를 먼저 정산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차 계약 체결할 당시 제3차 계약에 따른 인세를 과거 선인세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각 계약에 따라 인세를 정산하면 제1, 2, 3, 5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 표시 이후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제4차 계약은 제3자의 투자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4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각 계약의 정산 결과 원고가 일부 청구한 미지급 정산금 부분 인용, 피고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제1, 2, 3, 5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관되었던 각 음원 유통권을 원고에게 이관할 의무 있음. (원고일부승)

[제5민사부 2023. 2.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온라인 매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전시, 광고, 판매하는 원고는, ① 직선으로 구성된 용기 및 라벨, ② 흑색과 백색의 단일 색상 조합으로 본체는 백색, 뚜껑은 흑색, ③ 로고를 라벨 측면 상단에 배치, ④ 직관적인 제품명을 사용하되 한 줄 문구 부기, ⑤ 정자체 제품 설명 외에 일체의 꾸밈 요소를 배제하여 정제된 이미지(‘이 사건 디자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고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으며 디자인 및 마케팅기법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들 상품이 원고의 일부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소극), 피고들의 행위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 상품 출시 전후로 그와 같은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이 다수 출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직관적인 제품명은 일반수요자들이 제품 성질,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자인에서 로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모방행위는 완전한 모방,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피고 상품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된 용기 형상은 이전부터 제작·판매되어 온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상이거나 다른 액상 용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독특한 개성으로 주장하는 요소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피고 상품의 디자인 사이에 발견되는 일부 유사성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 ‘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뒤 소외2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의 XPLC 25 칩과 이 사건 피고 칩 사이에, 핀의 개수 일치, 배선 형태 유사, 일부 회로의 패턴 유사, 층의 개수 일치, 반도체 배치 형태 일부 유사 등이 인정된다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도체 칩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소자들 간 연결 관계와 전류 흐름 등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반도체 칩이 유사한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의하면, XPLC 25 칩의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 사이에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PLC의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로 지목한 17개 항목, 63개 파일과 피고 측 소스코드 중 167개 파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위 위원회는 원고의 XPLC 25 칩 제작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의 유사도 감정과 관련하여 Verilog 언어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파일들만 감정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위원회에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 사안 개요

-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이하 ‘피고 등’)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
- 피고 등이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반, 특히 디지털 형태의 음반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되어 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제 또는 전송된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음반이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음반이나 복제물이 이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웹캐스팅업체는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혹은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하여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바, 위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님(원고패)

2020나2030949(본소), 2020나2030956(반소) 계약금반환청구 등(본소), 매매대금(반소) 확정

[제21민사부 2021. 8.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통합 오배수배관이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이 아닌 1층 상가의 천장에 설치되자, 그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

☐ 판단

분양계약서, 설계변경 사전동의서의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규정은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설계변경에 적용되고,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1. 8.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공항개발사업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거액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문제로 지연되자, 사업시행자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조정 감면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실시협약의 ‘토지사용료 조정’ 규정의 의미

☐ 판단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업기간 또는 토지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시협약의 체결 목적과 경위, 문언,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사용료 등 재조정 여부를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는 취지로 보이고, 당사자들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법원에 의한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원고패)

2020나2044788(본소), 2021나2013224(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반소) 상고후 소취하

[제8민사부 2021.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본소: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 반소: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 쟁점

- 본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반소: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인지

☐ 판단

- 본소: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패)
- 반소: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에 따라, 추완항소에 의해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이 취소되기까지는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제5민사부 2021.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 한정 유효),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이 쟁점이 된 사례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함
-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에 비추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압류 등의 사실이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에게 임차인통지서가 송달된 이상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알지 않았더라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무자의 배우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압류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에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1. 9.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외국의 명의도용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원고(수출업자)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국 또는 지급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한 ‘비상위험’ 또는 수출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실)
- 단기수출보험계약시 피고가 수행하는 국외기업 신용평가의 목적에 수출계약 상대방과 신용조사 대상기업의 동일성을 보증함으로써 명의도용자에 의한 수출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고의로 수출계약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문의에 응하여 신용조사 결과가 정당하다거나 수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원고패)

2016나2079343 소유권이전등기

심불기각 확정

[제17-2민사부 2021.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피참가인을 대위채권자(원고)가 아니라 제3채무자(피고)로 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제3민사부 2021. 9. 17. 선고] <일반>

☐ 사안개요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인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으나, 그에 불구하고 연대채무자들 간의 연대채무관계는 종전대로 존속함
-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타에 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해당 연대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도인인 원래 채권자의 채권 중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도 미침. (원고승)

[제15민사부 2021. 9.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1998년경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

☐ 쟁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수사과 소추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문의 죽음에 관련된 범죄를 규명하고 그 범죄자를 처벌받게 하는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고 증거의 일실과 공소시효의 도과 등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망자의 유족들로서는 원한과 의구심을 풀지 못한 채 장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바,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에 단순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하여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뒤늦게 밝혀진 범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에서, 유족들의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일부 승)

2020나2019188 관리단집회결의무효 및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제34민사부 2021. 9. 29. 선고] <일반>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제41조)의 경우,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경우의 의결권 대리행사(제38조)와 달리 구분소유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결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중 1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하여 서면결의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제22민사부 2021.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별도의 합의로 잔금지급기일이 12개월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일 도래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에 비추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별도의 합의에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감이라는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함
- ② 매도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함. 매도인은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③ 매도인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도인은 당초의 계약기간부터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예된 계약기간까지 사이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를 차단하고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여 반대급부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리하고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1. 10.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허위의 차용인을 내세워 이자율 월 10~30%로 정하여 거액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음
- 이후 원고가 차용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 중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불법원인급여 적용 여부(소극)

□ 판단

-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부당이득이므로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계속하여 차용하기 위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이자 변제를 가장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민법 제746조에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내세워 그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제4민사부 2021. 10.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을 피고로 하여,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사업지연을 초래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사업시행인가가 있기 전에 사업구역 내 점포 임차인들을 포함한 영업자들을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대체영업장으로 이주시킨 후, 해당 사업구역의 특성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와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인가가 있기까지 9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이루어진 사전적 영업보상조치를 비롯한 피고들의 개별적 행위에 위법성은 없음
-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사전적 영업보상조치로 인해 원고들의 임대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물인 점포의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는데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상 원고들의 점포에 관한 사용수익권(임대)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을 가하게 되면, 점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49660, 2020나2049677(병합), 2020나2049684(병합) 손해배상(기)

[제12-2민사부 2021. 10. 27. 선고] <일반>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 원고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같은 날 선고된 2021나2012665 판결, 2020나2036480 판결도 동일 쟁점 사건임]

□ 쟁점 및 판단

- 제척기간 도과 여부 [1년 단기 제척기간 항변은 배척, 3년 장기 제척기간은 병합된 사건별로 소제기 기간 상이하여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 ①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기간(=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공표일인 2015. 7. 15. 전날까지)
 - ② 공표 전 매각분에 대해 인과관계 부존재를 인정하여 제외할 것인지(일부 적극)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인 2015. 5. 3.까지는 분식회계나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 원고들 청구를 배척함]
 - ③ 공표 전 하락분 중 분식회계 이외 요인으로 인한 주가하락 인정 여부(소극)
 - ④ 정상주가 형성일(= 사건연구 방법을 통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5. 8. 21.로 판단), 공표일과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하락분 중 분식회계 이외 요인으로 인한 주가하락 인정 여부(소극)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주위적 청구 부분 각하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97다32215 판결, 대법원 2006다20405 판결 등 법리에 따라 증명된 손해 일부 인용함]
-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는 70%, 회계법인은 30%로 제한)(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1. 10.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방산물자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차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잘못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에 따른 상계의 효력을 다투며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약특수조건에 원고에 대해 2차 협력업체의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주장비계약(이 사건 제1 내지 4, 6계약)의 경우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소극)
- 계약특수조건에 위 제출의무를 정한 주장비계약(이 사건 제5계약)의 경우, 복이행보조자 사용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적극), 약관법 위반 또는 국가계약법 위반 특약으로 무효 여부(소극)
-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 제출에 따른 위약벌인 가산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제14-1민사부 2021. 11.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여부 공개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 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가 열람·제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의 ‘이용’ 현황에 ‘비식별조치’ 현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를 근거로 ‘비식별조치’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이 ‘가공’, ‘편집’, ‘이용’ 등을 ‘처리’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가 개인정보의 열람·제공의 대상을 ‘이용’ 또는 ‘제공’ 현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 중 ‘가공’, ‘편집’ 등에 해당하는 ‘비식별조치(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조치)’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열람청구를 배척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같은 조 제3, 4, 5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 함께 규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 처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 권리에 해당하고, 권리, 의무의 내용과 범위도 명확하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비식별조치’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되, 다만 피고 회사들이 이미 원고들의 확인 요구에 응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제5민사부 2021.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상영업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파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파일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며, 영화 등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 및 자막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 관련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모두 해당하는지(적극)
-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 수신기기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 관련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적극),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소극)
- 법원의 구체조치: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도로서, 피고들은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만큼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거나, 피고들은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위 각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하여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만큼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 의무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 (원고일부승)

2021나2002996(본소), 2021나2003005(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확정

[제3민사부 2021. 1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가압류 집행 후에 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원고가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 전유부분을 매수함.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함께 원고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기각 부분은 항소되지 않았고, 당심에서는 반소청구만 다투어짐)

□ 쟁점 및 판단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후 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사후에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였다면 그 시점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지(적극), 가압류의 효력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미치게 되므로, 가압류에서 전이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는지(적극)
- 1필지의 일부에만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법정대지(= 1필지 전체), 집합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대지(= 그 여러 필지 전체), 1필지에 여러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가 법정대지로 되는 건물(= 그 여러 집합건물)
- 한 필지(1토지)는 집합건물 두 개동(1, 2동) 모두의 대지가 되는 반면, 다른 한 필지(2토지)는 그 중 한 개동(2동)의 대지가 되는 경우, 1토지에 관하여 각각의 전유부분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의 지분 비율 계산은 ‘1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 및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 중 1토지에 위치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 중 1토지에 위치한 부분의 면적은 ① 2동의 건축면적 중 1토지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② 이를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반면 2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는 대지사용권은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충분함). (반소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1. 12.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3인조 강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과 그 가족들,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상 원고들)이,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유죄판결확정 이후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도 담당하여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던 검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고 내사사건을 종결한 것에 검사(피고)의 위법행위 성립 여부와 귀책사유 유무

□ 판단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안에서,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담당하였다가 이후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도 배당받아 담당하게 된 검사로서는 내사가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으로 돌아가 관련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실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취한 후 이를 토대로 진범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어야 함
- 피고가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현저한 불합리 등이 인정되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 위반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주채무자가 되었던 원고가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 ②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여 대출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는 상환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③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④ 채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⑤ 원고는 민법상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가 바로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민법 제4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구상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함. (원고패)

[제16민사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 피고 등 3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상호 간에 피고가 전체 지분을 책임시공하되 다른 공동수급사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옴.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잔류하되 원고의 잔여 시공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피고가 위 시공협약에 따라 대신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전체 시공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정산 처리하여 왔으나, 다만 원고의 정산금 일부가 미지급 남아 있는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문제된 사건

□ 쟁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의 시공협약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정산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법률과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업무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조합 관련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됨(민법 제704, 706, 711, 712조)
-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공동수급체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인 자신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약정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처리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35-3민사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목사와 교인(원고 측)과 장로파 교인(피고 측)으로 분열된 A교회의 분쟁 사건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담임목사인 원고 B는 ①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② 설교, 예배 및 교회 직무집행 방해 금지, 나머지 원고들은 ③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④ 원고 B가 주관하는 예배, 설교, 기타 집회활동 등 참석 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 쟁점

-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년에 도달하여 은퇴한 경우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시무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나머지 원고들이 A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제1심에서는 원고 B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 부분은 제1심 판단과 같이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심 계속 중 원고 B의 정년이 도달함. 민법 제691조, 총회헌법 등 규정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거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원고 B가 담임목사로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 B가 정년 도달 전 원고 측 교인들로만 임시 공동의회를 열었고, 위 공동의회에서 원고 B에게 은퇴 후에도 A교회 예배 인도 및 설교를 계속 맡긴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으나, 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함
- 당심 계속중 피고 측에서 제직회를 열어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고, 노회에서 A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는바, 위 제직회 결의 및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 그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이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보아, 위 파송 이후에는 원고 B가 담임목사로서의 시무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원고 B의 위 ①, ② 청구 모두 기각)
- 제반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이 A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A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나머지 원고들의 위 ③ 청구 인용, 원고 B가 담임목사임을 전제로 한 위 ④ 청구 기각).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1. 1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사업비지원금계약에 기한 지원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추진위원회와 피고(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가지는 보관금의 교부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피고(신탁회사)에게 가지는 보관금 관련 채권의 내용
-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계약 종료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잔여 보관금 지급청구권)

□ 판단

-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관리, 자금 집행절차 및 요건 등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하여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위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지출처에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됨. 다만, 추진위원회로서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대리사무 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에게 ‘잔여재산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원고의 가압류결정 등은 추진위원회가 계약 해지 등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잔여 보관금 지급청구권에 한하여 미친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제3민사부 2021. 1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 판단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 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 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패)

[제5민사부 2021. 12.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인데, 피고들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학교의 폐교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들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학교의 폐교를 결정한 것이 그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사립초등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사학의 운영을 그만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폐지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한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함
- 학교법인이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경위와 불가피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였는지 여부, 재학생의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나 잔류 희망 학생을 위한 상당기간의 존치계획 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결정 통보하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교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피고의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위자료로 재학생은 각 300만 원, 학부모는 각 50만 원 인정.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2. 1.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기
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며, 기지
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및 기망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을 인정함(1심
에서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기망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함)
- 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사업부지 현황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원고들이 모두 고층 호실을 배
정받아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층 아파트
의 건축 가능성과 층수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임
-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 혼재된 지역이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피고가 광고한 것
처럼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함. 피고가 이를 설명하였다거
나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③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 현재까지도 여전히 준비 중임. 원고들
이 만약 이를 알았다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층배정에
따른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지하2층, 지상 6-24층, 9개동 총 714
세대’로 명시하고 원고들에게 고층의 동호수를 배정하여 더 많은 조합
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이는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함. [항소
기각(원고일부승)]

[제14-3민사부 2022. 1.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한 원고가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선정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 판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입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도 당해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기준을 제시한 다음,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이 이미 이행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낙찰자 선정에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패)

[제4민사부 2022.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상가점포 사전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점포내부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점포내부 기둥 현황에 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적극)
- 수분양자의 법정추인 해당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점포 내부 기둥 현황에 비추어 분양자에게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 내부 기둥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함
- 다만 수분양자는 완공 후 점포 내부 기둥의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착오의 상태에서 벗어나 분양계약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분 송달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분양대금 잔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정추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에 분양자에게 도달한 이 사건 소장 부분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2.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이 1980년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재심무죄 판결을 받고 종전 유죄판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인 2010년에 피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종전 소송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①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변호인 선임권 미고지, 면회 방해’를 불법행위로 특정하였음
- ② 선행사건의 공동 원고 중 1명은 형사재심을 청구하면서 불법구금을 청구원인에서 철회하였음
- ③ 재심으로 유죄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선행사건에서 유죄판결의 확정애 따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④ 따라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불법구금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유죄판결의 확정애 따른 정신적 손해는 추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임. (원고일부승)

[제12-2민사부 2022. 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타에 임대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다는 특약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 계약도 함께 체결함
- 하남시장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차 연장신고에 대해 수리 불가를 통보하고, 신고명의자인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철거를 명함. 원고는 피고의 매수 이후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부과된 2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피고가 가설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한 후 이를 철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임관계에 따른 필요비 상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위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적극)
-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한 원고의 기망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동산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음. 그럼에도 신고명의가 원고로 그대로 남아 있는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 대관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를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위 납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승)

[제7민사부 2022. 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홈쇼핑 업체와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홈쇼핑 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택배집배점 계약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택배집배점들에게 위탁함
- 피고의 택배집배점 A가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창고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전소 멸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에서는 다른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만을 유지함)

□ 쟁점

- 택배집배점 A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주 6일 동안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겸업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가 택배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시, 통제를 통해 피고가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 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의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택배 회사의 피용자로서는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홈쇼핑에서의 배송지시가 접수되면 곧바로 운송장을 부착하여 배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피용자가 계속적으로 판매 예정 상품을 미리 인수하여 온 점, 그러한 과정에 피고의 창고까지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피용자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원고로부터 미리 인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홈쇼핑 판매 예정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인식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제3민사부 2022. 1.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가압류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추심하려 하자,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이후 새로 개설한 예금계좌에서는 예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가압류 집행 당시 이미 존재하던 계좌의 예금청구권은 대출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피압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

□ 쟁점

- “장래에 [...] 가지는 [각종 예금] 채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보다 늦게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에도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지(소극)
- 예금채권이 압류된 거래업체에 대하여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금융업계의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가압류보다 늦게 개설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특징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고 볼 수도 없어 피압류적격부터 갖추지 못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시중은행이 신규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는 사실인 상관습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그러한 상관습이 존재한다 하여도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어도, 가압류의 효력이 그 집행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신규 계좌에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님
-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금계약)가 존재하여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예금채권의 발생까지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당장은 잔고가 없어 구체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2010다76870 판결). 잔고가 없는 계좌에 장래 예입할 금액의 반환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는 이상, 가압류의 제3채무자 입장에서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임. [항소기각(원고패)]

[제12-2민사부 2022. 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 사건 협정’)에 따라, 원고의 배전설비인 전주(전봇대)에 피고가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함
- 한국도로공사가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이유로 전주 및 통신설비의 이설을 요청함
-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통신설비 이설비용 상당액인 판결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해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 관계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종국적으로 피고의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 피고)

□ 판단

- 이 사건 협정 조항 등은 통신설비 이설공사의 시행주체뿐만 아니라 그 비용부담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배전설비 이설비용은 원고가,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① 원고는 이 사건 통신설비 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아니고,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한 타공사 비용 부담을 정한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원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임. 원고와 피고는 전기설비 제공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음
- ②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설비 제공제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설비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그 대가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한 금액만 지급받음. 원고가 받은 점용허가로 인해 피고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피고가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을 것임
- 피고가 통신설비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2. 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전기사용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자가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신청자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 쟁점

한국전력공사 공급약관 제8조 본문의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효력 요건인지 여부

□ 판단

전기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규율내용과 전기사용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의 내용 및 규율형태를 종합하면, 전기사용장소 소유자의 동의는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변경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전기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협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공급약관이 전기사용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원고승)

[제21민사부 2022. 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①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②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 ‘□’ 표시가 있기는 하나,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음
- ③ 기둥이 있는 상가와 없는 인접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데, 분양자가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상가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기둥의 존재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음
- ④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으로 인한 공간 활용 및 동선 제한, 가시성 방해,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⑤ 분양계약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06196(본소), 2021나2006202(반소) 손해배상(본소), 대여금(반소)

[제29-1민사부 2022. 2. 10. 선고] <일반>

확정

□ 사안 개요

투자조합A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B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조합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음. 원고가 A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고지·설명의무 위반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소극)
- 피고의 기망 불법행위 인정 여부(적극)
 - ① 피고가 A조합의 자산 현황, 특히 조합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B회사 주식을 타에 양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 주식을 다시 반환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A조합에 투자하는 것이 B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
 - ②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느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았더라면 A조합에 아예 출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출자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
- 손해액 산정 시점(= 불법행위시) [불법행위와 동시에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이 사건에는 피고가 들고 있는 예외적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 과실상계 여부(소극)
- 원고가 A조합 탈퇴시 받은 주식 가액의 손익상계 여부(적극)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A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이득으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액의 손익상계 여부(소극) [주가 상승분에는 B회사 운영자인 소외인의 주가 조작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손해배상액의 제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함)
-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제38-3민사부 2022. 2.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교단의 정기총회에서 A를 총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B를 총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이후 피고 유지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독자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들을 선임함
- 원고들(교단과 B)은 피고 유지재단을 상대로 위 이사장 및 이사들 선임결의가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들에게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원고 교단과 피고 유지재단의 관계,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피고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 판단

- 원고 교단 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피고 유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경위, 피고 유지재단의 운영 형태, 특히 원고 교단 임원 및 피고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에 관한 관련 규정의 변천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지재단은 원고 교단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원고 교단 구성원을 대표하는 원고 교단 총회의 결의나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유지재단 이사회가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여 한 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함
- ① 교회에 귀속된 재산은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이고, 교회 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인 유지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의사결정에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피고의 설립 목적은 ‘교회 자산의 관리·유지 및 선교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제공’에 있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 교단 등의 재정집행행위의 대외적인 법적·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③ 원고 교단과 피고는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따라 원고 교단의 임원들과 피고 이사회의 이사들을 일치시켜 원고 교단과 피고가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직운영체제를 구축력 있는 관행으로 수용하여 왔음
- ④ 피고의 이사회로서는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피고의 정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승)

[제14-2민사부 2022. 2.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투자증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 원고가 약정한 자문료가 과다하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한 자문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자문료의 범위

☐ 판단

대법원은,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및 신탁보수에 관한 사건에 적용하여 왔는바(대법원 91다8722, 8739 판결, 대법원 2004다49393 판결, 대법원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3다26425 판결), 금융자문계약의 성격을 사무처리의 위탁을 본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투자증권사가 수행한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100억 원의 자금조달(피고 투자증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이 대출 실행)에 관한 자문료 10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자문료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투자증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원고일부승)

[제17-2민사부 2022.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각 1/2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 판단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의 양수인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있어 공유자 중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등의 행사에 있어 공유자 전원이 대표조합원 1인을 통하여 이를 행사하게 되지만, 공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그중 일부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인 전원이 양도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대표조합원 1인만이 양도인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제9민사부 2022. 3. 3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은 원고가 부당해임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청구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 잔여임기가 더 길게 인정되어야 하는지(소극)
-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소극)
-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인 원고에게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① 원고 재직 당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연도 이사의 보수 총액을 10억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한도 내에서 그룹 회장 K가 임원들 개개인에 대한 보수액수를 정하여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 해임 이후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만 과거와 달리 “임원 개인별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것”의 내용을 추가하여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됨

② 피고 대리인이 이 법원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21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종전대로 내부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 이사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는 당해연도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 총액만을 승인한 다음 이사 개개인에게 지급될 각 보수의 구체적 액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그룹 회장 K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였고, 실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뿐 아니라 甲, 乙 등 피고의 다른 이사들도 각자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이와 같이 피고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 이사들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이 적법하게 정해진 이상 이러한 보수의 결정과 지급 방식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점에서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조차 없었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함),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원고로서는 보수청구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14-3민사부 2022. 4.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학조치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항소기간 종료일(2018. 10. 11.)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항소제기 하루 전(2018. 10. 10.)에 성년에 이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가 법정대리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 사건

□ 쟁점

법정대리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법정대리인이 한 항소의 효력(= 유효)

□ 판단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다7256 판결), 원고 친권자의 법정대리권도 피고에 대한 소멸통지가 없었던 이상 소송절차상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항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다만, 본안판단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제38-3민사부 2022. 4.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이 정한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존속하는 임시적 권한이므로, 관리단이 실제 성립되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분양자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의 체계, 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피고의 수임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일종의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 규정을 통해 아직 실질적인 자치 관리를 개시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단과 분양자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 속보게재 쟁점에 대한 판시는 유지되었고, 다만 다른 쟁점 관련하여 일부 파기환송된 경우임

[제20-1민사부 2022.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납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판명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각 대금에서 1순위 배분된 채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공매절차가 무효여서 공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 배분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채납처분비의 부담 주체(=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 판단

-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 비록 지방세징수법에는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채납처분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채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처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채납처분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됨에 따라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제24민사부 2022.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관리단(원고)이 구분소유자이자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① 공용부분 관리비, ② 특별수선충당금, ③ 전유부분 관리비(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금)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에 따른 파기후 환송심 판결임)

□ 쟁점

- 이 사건 관리규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관리규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특별수선충당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전유부분 관리비(예비적으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합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서면결의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1년 8개월은 사회통념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이 아님), 일부 호실의 구분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서면결의가 4/5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환송판결). 따라서 원고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 특별수선충당금 청구권 부분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관리규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유부분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거나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음
-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부적법함. (원고일부승,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제3민사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리비에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2015. 4.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서로 정산·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함. 원고가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

□ 쟁점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 이를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는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있는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청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27민사부 2022. 5.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건설회사 갑으로부터 갑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압류 및 전부명령상 피전부채권은 “해당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을 제외한다”고 표시됨
- 피고는 동법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해당 공사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노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툼

□ 쟁점

-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붙임서류로 표시된 ‘원가 및 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상당에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잔존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 금액의 산정 방법

□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위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붙임서류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일부이므로 붙임서류에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다면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위 노무비 상당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text{노무비} / \text{총공사대금} \times \text{미지급공사대금}]$ 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5.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위반 외에 피고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대법원 65다947 판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함. (원고일부 승)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횡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 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설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진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정관에 대하여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하급심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36)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그 후 신설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위 정관의 문언과 달리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② 위 규정이 개정이유를 ‘관련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패)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26886(본소), 2026893(반소) 건물명도(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일반>

심불기각 확정

□ 사안의 개요

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를 구하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 임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한 사건

□ 쟁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 한다는 것의 의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

□ 판단

-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임대인은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2호)
- 위와 같은 법률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 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 신규임차인의 존재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신규임차인이 아닌 피고 자신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 부담할 조건만을 제시함) 등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고승)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행정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처분이 이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 쟁점

- 법령에 규정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용도폐지처분이 무효인 경우, 용도폐지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단

- 공유재산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도폐지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특히 공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9조),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용도폐지 사유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 이 사건 용도폐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약정의 무효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여러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 이전에 무효인 용도처분을 한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음. [항소기각 (원고일부승)]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1967년 납북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어부들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경찰수사관, 담당 검사 및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적극)

□ 판단

- 경찰관들이 1969. 1. 27.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한 다음 반공법위반 등 피의 사건을 인지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다음날 검찰청으로부터 전원 구속송치하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그날부터 매일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은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인 1969. 2. 5. 발부되어 다음날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함께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1969. 1. 2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2. 7. 이전까지 11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어 있었다고 보았음
- 이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 또는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차 재심청구 당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후, 2, 3차 재심청구는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계속 내려지는 등 피고인들의 형사판결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음
- 경찰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부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기소와 법관의 재판업무 관련한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제7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

① 원고가 최초 화주로부터 1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A(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담보물 이전은 형식적 거래이지만, A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② 최초 화주와 거래명세표상 양도인이 동일한 회사이고, 그 회사로부터 양수인을 거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겸 양도인) → B(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A와 B는 통정하여 B 앞으로 담보물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③ 최초 화주, 거래명세표상의 양도인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른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C(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이전은 형식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C는 무권리자일 뿐 A와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1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도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수행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

□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판단

-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함
-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 설립 후의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6.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함(대법원 2014다75462 판결 참조)
-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제21민사부 2022.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판단

-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 (원고패)

[제35-2민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쟁점

-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①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음
 - ② 비트커넥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 ③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 ①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 ③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7.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인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 원고가 계약에 근거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고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한 사건(당심에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내지 상법 제61조,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쟁점

-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

□ 판단

- 1차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권한,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후속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거나 후속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차 계약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체결 관행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은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 주선, 권리 분석, 매각조건의 도출 등인데, 결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인 점, 1차 계약에 ‘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로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제4민사부 2022.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은 피고1 소속 직원들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3, 4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1의 직원들은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음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탈출 또는 구조, 화재 진화 시점이 적어도 2~3분 이상 앞당겨졌을 것인데, 화재 발생 초기 2~3분의 차이는 손해 발생의 여부 및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므로, 피고1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피고 3, 4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으므로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작동으로만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피고 3, 4 및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2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목적물이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함을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었던 점, ② 보험목적물에서 1개의 건물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는 보험설계사가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인 점, ③ 청약서상 보험목적물의 연면적이 종전보다 1개의 건물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이점을 지적하거나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에서 책임제한(보험계약자의 책임 50%) 후의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함(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중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제5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 사건 응시제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 사건 응시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의 시험응시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던 점, 중수본 지침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자체가 제한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매도인)의 회장 A는 2007. 7. 5.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매수인)에게 종중 소유 임야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 원고 종중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2019. 9. 1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종중 소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증명 정도

□ 판단

-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8다8898 판결 참조). A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 ① 피고는 당시 원고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의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②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등기신청에 나아간 이상, 그로 하여금 종원 명부,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종중 회의록, 종중 총회 참석자 명단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실성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 ③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패)

[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 쟁점

-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해제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소극),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항변을 배척하고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 판단

-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가 이 사건 해제 조항에서의 ‘기타 주택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함. 주택법 제64조가 계약취소나 해제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인 전매금지위반행위를 해제권 발생 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해제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만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계약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나 다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타 주택법 위반행위 사유를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도 하므로, A가 위약금 조항 내용에 위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숙지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 조항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주장을 배척함. (원고일부승)

[제21민사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당사자 사이의 종전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 피고 동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가 작성되었으나, 적재물 제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쟁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의사의 합치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함
-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교섭절차를 거쳐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해석임
- ③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위 사항 외에 원고가 요구한 적재물 제거 문제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양해 아래 그에 터잡은 새로운 법률관계나 거래를 형성하지도 않았음. [항소기각(원고패)]

[제13민사부 2022. 9.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 피고 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대출금 채무 중 1.6%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의 피고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채권, 즉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급부청구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탁법 제63조 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자산신탁을 대위하거나 직접,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저축은행의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시효정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판단

-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임. 이는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소멸시효 정지 제도는 권리자가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시효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만일 신탁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탁법상 소멸시효 정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민법상 소멸시효 정지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에도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함. 또한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종료한 때’에는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패)]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제24민사부 2022. 9.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보험대리점)와 RM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됨
- 원고가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관련 수수료 중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속약정의 해석 방법(=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해석)
-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성과수수료의 지급의무를 긍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본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①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면, 그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 ②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성과수수료는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됨
 - ③ 피고는 법인전환 이전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종래 비례수수료에 포함되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인정됨
 -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이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건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9민사부 2022. 10. 20.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2018. 6. 10. 해킹이 발생하여 2018. 7. 15. 재개되기까지 이용이 중단됨. 원고들은 그 보유의 가상화폐 일부(비트코인, 펀디엑스, 엔퍼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거래소 폐쇄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 서비스 재개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원고들이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의 시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등 사유로 약 한 달 동안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상화폐 반환청구에 불응 또는 지체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 및 범위

□ 판단

- 아래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유출 가상화폐와 보유 가상화폐를 구분하여 손해배상 의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들이 일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 처분권주의에 따라 최종 인정금액을 산정함
-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인정. 이행불능 당시인 2018. 6. 10.의 시가상당액 기준
- 2018. 7. 15. 기준 보유 가상화폐: ①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은 성립하지 않으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인정(원고들이 가상화폐 출금을 희망하더라도 피고가 그 반환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및 가상화폐의 특성 등 고려). 다만 일부 원고들이 2018. 7. 15.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 중 2018. 6. 10. 기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출금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손해배상의 범위: 차액설의 법리에 따름. 적어도 보유 가상화폐에 관한 2018. 6. 10.과 2018. 7. 15.의 각 시가의 차액 상당(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에 관하여 시가가 하락하였음, ‘시가하락분’)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됨. (원고일부승)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제9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그 산하 신학대학원생인 원고들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①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등, ② 근신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함. 관련 사건에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구 고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징계처분을 기재한 소책자 배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구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범위도 학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피고는 학칙 등 명문의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학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였음. 이러한 징계처분 및 그 후속 과정상의 일련의 조치는, 피고가 징계권 등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무형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됨
- 피고가 배포한 소책자에는 원고들의 성(姓)과 학년, 징계의 내용을 명시되어 있어 제반 사정상 원고들을 지목하고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었고, 소책자가 예장통합 총회 사무국에 제출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높았음. 소책자에 기재된 징계 내용 등으로 보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도 충분함. 반면, 원고들의 구체적인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교단이나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처분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됨. (원고일부승)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을 위 자녀(혹은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위 재산은 ‘실질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된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의 가액을 다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지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574 판결(확정)도 위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은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당해 반환청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판시함. (원고일부승)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라 아니라 무효의 등기를 유효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배당금(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 일부)을 뺀 나머지 금액을 토지 매수를 위해 출연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합계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근저당권 양수대금과 근저당권이전 비용의 합계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됨에 따른 손해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 쟁점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민법 제80조 제1항), 청산인은 그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을 잔여재산으로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7조 제1항), 이 사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는 등 청산업무가 완료된 이후의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임. 따라서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는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만으로 원고의 잔여재산인도 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 사단법인의 부채 내역이나 이를 전제로 한 정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일체를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을 ‘A 사단법인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위 채권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항소기각(소각하)]

[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 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 내용이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서 실제 지급된 생존연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약관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지(소극) [공시이율 변경에 따른 생존연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적시하는 것일 뿐,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적극) [약관에 ‘생존연금은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지시문구를 분명하게 두고 있고, 가입설계서에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직접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 약관상 연금월액 산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 [산출방식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정 관련 피고의 설명의무 대상(= 이 사건 산출방법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취지의 특정한 해석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적극) [가입설계서를 교부하면서 즉시연금 유형별 연금월액 예시, 만기보험금의 지급 유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함]
- 예비적·가정적으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시 법률 효과(= 이 사건 산출방법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됨) (원고패)

[제20-2민사부 2022. 12.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산하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통고하고(‘이 사건 통고처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며, 원고들은 위 벌금 전액을 납부함. 이후 원고들이 통고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 벌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통고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①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임의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②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범칙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한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③ 통고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액수도 알 수 있고,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되었다고 보임
 - ④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및 공소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임
 - ⑤ 원고들은 통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 [항소기각(원고패)]

[제8-3민사부 2022. 1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①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서,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나아가 상법 제662조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시효기간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더 장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측을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라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포함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다른 권리에까지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②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8조에서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료 반환채권에 상법 제648조와 같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③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민사계약보다 더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④ 설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를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그 보험계약자라 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원고일부승)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확정

[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함으로써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일부 적극)
- 2차 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 판단

-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위 참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허용함
-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찰정보를 위 사람들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2차 가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는, 친부모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500만 원, 계모 또는 계부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들(희생자들의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외삼촌)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 (원고일부승)

[제9민사부 2023. 1.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금융기관)는 채무자A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대출금 채무, 양도담보목적물을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9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되, 담보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그 후 압류 경합 등이 발생하자 B가 9억 원을 혼합공탁함. 원고는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함. 1심은 6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부분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6억 원 부분인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중 6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 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음. 담보한도액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A와 합의하여 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9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도 부합함
- ③ 계약서 말미(末尾)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인도받은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함
- ④ A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 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경찰관이 이 사건 직전 범행 직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활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① A의 이 사건 직전 범행은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의 범행임. 경찰관으로서 는 근처 피부착자가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 ②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내포한 고도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당시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의 조치 소홀이 정당화되지 않음
- 보호관찰관이 A의 재범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①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A는 집중관리대상자인 피부착자 중에서도 상위 12.5%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무렵 A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 ② 대면접촉은 실질적 재범방지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침상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 A는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하지 않던 기간 동안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누락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지름
-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제12-2민사부 2023. 3.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회사의 X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됨. 당시 B가 근보증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원고는 저축은행 직원과의 통화 시 본인의 자필이 맞다고 답변함
- X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및 근보증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가 연대보증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

□ 쟁점

-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근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등

□ 판단

- 근보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원고의 자필 기재가 아니고, 전화 통화에서 자필이 맞다고 답변하였더라도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원고 서명이 자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음
 - ① 보증인이 스스로 기명날인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입법취지가 물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서면 방식을 갖추었다는 점은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이므로 보증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함
 - ②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X저축은행은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가 B 등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추인 주장도 배척함. (원고승)

[제33민사부 2023. 3.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업무대행사인 A회사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가 지정한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함. 이후 원고들은 피고, 시공사인 B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분담금 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함
- 원고들은 분담금 납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담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분담금 납입의 효력 및 추인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

□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A회사를 통하여 조합가입계약 및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원고들이 A회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A회사의 분담금 수령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이 완납된 것을 전제로 한 납입확인증 교부, 중도금 대출 알선, 최고장 발송 등을 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 이와 같은 추인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고는 유효한 최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해제 통보 역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호실을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분담금 반환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가 효력이 없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아파트 공급계약상 분양가와 재분양가의 차액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음. 위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한편 나머지 원고 1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제24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자녀들(원고와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후,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함(‘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별도의 상속재산도 있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의사능력 등’)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피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제1예비적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쟁점

- 의사능력 등의 유무, 공정증서 작성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유류분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속세 부담에 관한 구상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 의사능력 등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수요건과 기명요건 등 공정증서 작성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 ①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 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등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③ 원고는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④ 나아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에 변동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일부승(제2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제14-1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화주들의 물건들을 위 창고에 임치함. A는 위 창고에 인접한 곳에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와의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A에게 ‘X택배’라는 상호의 사용을 승인함. A의 직원인 B가 이 사건 영업소 부근에 있던 드럼통에 폐지 등을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과 원고 내지 화주들 소유의 재고자산이 전소됨

□ 쟁점

-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손해의 범위 관련하여, 화주들의 재고자산 상당액이 포함되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A, B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① 피고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업소를 두면서 택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A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함
- ② 영업소 관리계약에서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A가 피고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택배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두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영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해 두면서, 피고는 자신의 배송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음
- ③ B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A의 피용자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92다29948 판결 등 참조). 화주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화주들에게 현실로 원고의 부담부분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음. 설령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108조에 따른 긴급처분권으로서 화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19-1민사부 2023. 4. 26.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의 어머니로, 2014. 5.경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X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역시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5. 7.부터 2016. 6.까지 재직하였음
- A는 X 및 Y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6. 1.까지 원고에게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 등을 수입해주면서 제품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쟁점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소극), X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소극)
- 피고가 Y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A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객관적·규범적으로 명의사용자인 A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다700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A에게 Y회사의 계좌 관리를 비롯한 그라비올라, 코코넛오일 등 수입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A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간과한 것은 피고가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 <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 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에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33민사부 2023.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오다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었음

□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접수되더라도, 취소주문 접수 당시의 취소 가능한 수량(매도주문이 이루어진 수량에서 취소주문 접수 전에 거래가 완료된 수량을 제외한 것)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을 입력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된 때에는 이미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게 남아있어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미리 설정하여 놓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원고의 취소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 피고 기본약관을 토대로 보면,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로서는 회원, 즉 거래 당사자들의 매도, 매수, 취소 등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거래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일이 미리 설정되어 있던 기존 알고리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을 약관에 기재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의 설정 내용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24민사부 2023. 5. 18.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 망인은 2016. 9.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 4.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함.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

□ 판단

- 아래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검인절차에서 원본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효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① 원고들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자필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증이 효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②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 후에야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된 점, 자필증서의 내용이 망인의 재산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망인의 조카들 중 굳이 피고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자필증서가 비닐코팅 되어 보관되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점,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감정인도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낸 점, 망인이 2019년 심장 수술 전에 자필증서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 ③ 자필증서의 유효 여부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하여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도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원고들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승)]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채권 중 권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였음
- ①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약 3억 6천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피고들은 조합의 전 임원들로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
- ②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용액을 소송비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유보해 두어야 하는데도, 2700여만 원만을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음
- ③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무자력이 되어 원고회사의 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 ④ 피고들은 조합 해산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고, 잔여 재산을 모두 분배할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원고일부승)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확정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각자 발령받아 A회사에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음. A회사는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
-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1, 3은 반소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을 구함. 별소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쟁점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 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에 앞서 이루어졌음
-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본소 인용),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피고 1, 3의 반소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이미 본소 청구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2에 대한 본소 기각)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사용자)는 2016. 10.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 7.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2. 12. ‘망인의 상속인들 및 원고로부터 각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하여 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공탁하였음

□ 쟁점

상법 제735조의3에서 정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 판단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위와 같은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이 정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의 규약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기재된 보험수익자(사용자)와 피보험자(근로자)의 상속인 사이에 소송상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허용함이 타당함. (원고패)

2021나2013279 손해배상(기) *2021나2013286, 2021나2013293 같은 날 선고
[제16민사부 2023. 6. 8. 선고] <일반>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원고 등’)은 시각장애인임.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는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원고 등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적극적 조치로서 대체 텍스트 제공과 불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함. 1심은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 등
-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

□ 판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①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음
 -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고시나 지침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③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협력업체들의 협조 없이 피고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음(원고일부승)

2022나2037555(본소), 2037562(반소) 손해배상(기), 강의대금 등 상고심 계속중
[제9민사부 2023. 6. 15.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하여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함. 2019. 10.경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의 오프라인 강의까지 중단시키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피고의 강의대금 지급 청구의 반소 부분은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쟁점

- 피고의 강의계약 위반 여부,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 상호간의 관계 및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해석(법적 성격), 그에 따른 위약벌 등 지급의무의 범위

□ 판단

- 피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하였고,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은 상호 보완하여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판단함
- 원고 청구 중 대부분을 차지한 이 사건 강의계약에 규정된 돈[= (기지급 강사료 + 금전적지원금) × 2 +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 ×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 × 2]에 관하여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함
- 위 ‘기지급 강사료’와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프라인 약정 체결 전까지 강의계약에 규정된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백한 데, ① 오프라인 약정에 ‘본 약정과 강의계약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본 약정을 우선’한다고 명시한 점, ② 오프라인 약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강의계약의 정의조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강의계약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프라인 약정 체결 당시 쌍방의 의사등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약정 체결로 인하여 종전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 강의만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하여,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함

□ 쟁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소극)

□ 판단

- 불법행위책임: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원고들이 제공받은 비대면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들이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서비스나 수업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불이행책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원격수업 개설에 관한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염병 차단·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제한은 안전배려의무의 적절한 이행이므로,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되거나 학교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배상책임: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항소기각(원고 패)]

2022나2038947(본소), 2038954(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상고심 계속중
[제21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개설한 사실상의 도로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원고 개설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가 연결 부분의 인도에 연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저지함
- 이에 원고는 통행방해금지를, 피고는 인도 복구공사 방해금지를 청구함

□ 쟁점

- 피고가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저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함
 -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특정인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을 금지한 바 없었음
 - ② 원고 개설 도로로 차량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거나 달리 손해가 발생할만한 사정이 없음
 -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음
 - ④ 원고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도로도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회전반경이 커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금지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
 - ⑤ 이 사건 도로의 인도 부분은 횡단보도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로서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연석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 ⑥ 원고는 1년쯤 전에 원고 도로의 배수호가 이 사건 도로를 관통하는 대가로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위 동의서에 의하여 차량의 이 사건 도로 진입도 허락받은 것으로 믿고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일부승)

[제13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및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가압류·가처분 등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책임 법리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로서 말소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대상 사안에서는 임의경매절차 정지의 잠정처분에 관한 피고(신청인)의 귀책사유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잠정처분 신청 전후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태양·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 (원고일부승)

[인천 제1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건설업자)이 도시철도건설공사 1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할 공구를 상호 협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발주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최초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피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소극)
-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9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부당한지(소극)

□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피고들의 담합으로 증액된 가격상승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① 감정인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더미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고, 다양한 모형과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공종대상을 확장·제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와 손해액 추정치 결과가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여 기본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인 점, ② 위 감정의 기본모형은 안정적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도시철도건설공사와 유사한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여 손해율 추정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통계학적 추정 방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결과가 손해액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과소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설불리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인천 제2민사부 2023. 8.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함. 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② 무상양도 대상을 ‘공공시설’ 등으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무상양도 대상을 ‘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 ③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국가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임. ①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음.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됨. ②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원고일부승)

[제40민사부 2021. 6. 1. 결정] <항고, 도산>

□ 사안 개요

- 회생절차에서 본인이 주식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였고,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 주식(주주명부상 지배주주 소유)에 관하여, 책임있는 주주라는 이유로 전부 무상소각되고, 다른 구 주식은 일부 감자만 되는 차등적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던 사건(부채초과로 주주의 조는 의결권이 없었음)
- 제1심 결정(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항고인 승소, 이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임

□ 쟁점 및 판단

-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등을 바탕으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지배주주를 주주로 취급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 이 사건 회생계획의 특수성(해당 주식에 관하여만 전부 소각, 다른 주식은 감자)을 고려하여, 다툼은 항고인이 훗날 실제 주주였다고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판단될 경우를 대비한 권리보호조항을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이 권리보호조항(금원 지급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을 변경함 (일부인용)

[제40민사부 2021. 11. 24.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대상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 쟁점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대상사건 심급별로 각기 따로 구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 [①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환송 전과 환송 후를 구별하지 않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1회 산정, ② 상고심 소송목적의 값은 환송 전 항소심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상고심에서 불복한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함(대법원 1993. 3. 15. 자 93두8 결정의 취지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송목적의 값이 대상사건의 각 심급에 일괄 적용됨’을 전제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인지대 등을 계산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을 다시 산정한 사례 (일부인용)

[제40민사부 2021. 12. 15. 결정] <항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라임펀드 투자자로서 판매 은행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기·착오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 본안소송 진행 중 피신청인(금융위원회의 명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들에 관한 신탁계약을 인계받은 자임) 등을 상대로 모펀드의 자금유출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제1심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한 사건
- 항고심 계속 중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문서를 변경하여, ‘원고가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자펀드의 환매를 위해 모펀드로부터 자금이 유출된 경우 그 유출금액, 각 거래일자, 환매된 자펀드의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펀드의 현재 잔존가치, 배분을 등 이 사건 펀드의 현재 잔존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명세서 등’으로 구체화시킴

□ 쟁점 및 판단

-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함
 - ①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손해액인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펀드의 처분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의 액수가 밝혀질 필요가 있음
 - ② 이 사건 펀드는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펀드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원고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③ 반면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④ 라임자산운용이 청산 상태로서 업무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위원회가 제1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문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변경된 신청 인용)

[제40민사부 2022. 1. 12. 결정] <항고, 일반>

□ 사안 개요

사건본인 교회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자가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사건 본인에 대한 배임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사건본인 교회 내부의 분쟁 경위, 사건본인 교회의 전 대표자와 현 대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과 현 대표자가 위 부동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전반에 관하여 이해상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전 대표자 및 현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소송 제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 전 대표자 및 현 대표자를 상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교회 소유 재산은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의 규약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건본인 교회의 총회결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교회 재산에 관한 총유의 법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소 여부에 관한 사건본인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항고기각)

[제40민사부 2022. 3. 30.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들을 상대로 손익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함.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제1상고부분)과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지연손해금 감액 부분, 제2상고부분)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들은 항소심 패소부분(원금과 감액된 지연손해금, 제3상고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함. 상고심은 위 상고들을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해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예비적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예비적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제1심 법원	항소심	상고심
주위적 피고	전부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예비적 피고들	전부 승소	항소일부인용 (지연손해금 감액)	상고기각

□ 쟁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만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가 병합되었다가 부대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대청구부분이 독립된 소송목적물이 되므로, 부대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하되, 주된 청구의 가액을 한도로 함(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라11 결정 등 참조)
- 제2상고부분은 부대청구에 해당하지만, 부대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가 있다고 하여도 제2상고부분이 독립된 소송목적의 값이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제1상고부분)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상고(제2상고부분)를 모두 포함하므로, 소송비용액에 산입되는 상고심 변호사보수는 각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 (항고인용)

[제1민사부 2022. 3. 31. 결정] <항고, 노동>

□ 사안 개요

채권자(갑 회사의 A노조)가 채무자(갑 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B노조(채무자 보조참가인)의 설립이 실체적, 절차적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는 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구한 사건

□ 쟁점

B노조의 설립이 실체적, 절차적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B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설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① 노조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설립은 무효임
 - ② 사용자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 등 노조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단체의 임원진이 노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B노조를 설립한 후 근로자들이 새롭게 그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면, B노조는 기존 근로자 단체와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 노조로 인정됨
 - ③ B노조의 설립 과정 및 활동 내역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B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에 반해 활동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B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④ 채무자 소속 근로자 약 5,800명 중 약 3,000명이 B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므로, 명백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B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하고 그에 가입하였다고 보아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
- B노조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규약 개정 결의에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결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 적법한 총회 결의에 의해 다시 규약을 개정하였으므로 그 하자도 모두 치유되었음. [항고인용(신청기각)]

[제5민사부 2022. 5. 26. 결정] <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이 사건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채권자의 명성이나 채권자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대국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이 사건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임.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자는 이 사건 대국 등에 관하여 타이젼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 및 강의를 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대국에 관한 채권자의 대국 수준의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이 사건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 사건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제40민사부 2022. 6.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 및 항소기각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 쟁점

-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들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항고기각)

[제40민사부 2022. 10. 12.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 ‘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은 ‘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제40민사부 2022. 11. 1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본안 사건

- 본안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종종, 종종의 대표자란에는 회장 직무대행자 장○○, 피고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음
- 장○○은 종종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포기했고, 법원은 청구포기조서를 작성함

-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

- 김☆☆은 장○○이 종종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임을 자처하면서 본안 사건의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고, 장○○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006,400원으로 확정함.

□ 쟁점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제3자의 소송비용 상환에 관한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수소법원이 그 제3자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음
- 그런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소송의 소송비용 상환에 관한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을 해야 하고, 이때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들의 체계와 내용, 특히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민사소송법 제10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함 [항고인용(신청기각)]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 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제40민사부 2023. 3. 30.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채권자에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음(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 그런데 간접강제 신청 시점은 위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음
- 제1심은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함

□ 쟁점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접강제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채권자는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판단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결정인데,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그 신청의 기초가 된 가처분 결정이 의무이행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항고기각(신청각하)]

[제5민사부 2023. 4. 27. 결정] <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하여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2022. 5. 13. 자 종료 통보로 2022. 5. 18. 종료되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영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

□ 쟁점

- 채무자의 행위가 영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신청기각)]

[제33민사부 2023. 5. 18. 결정] <항고, 중재>

□ 사안 개요

- 신청인 안방(홍콩법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 대가(중국법인)는 신청인 안방의 권리를 양도받고 피신청인들과 에스크로우계약 및 환수계약을 체결함. 이후 신청인 대가는 피신청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에스크로우 계좌의 지급금지를 요청함. 피신청인들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에스크로우 계좌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함. 중재판정부는 2020. 8. 20.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쟁점

피신청인들의 책임범위에 대한 중재판정문의 해석(= 부진정연대채무와 유사) 및 집행거부 사유의 유무(일부 적극)

□ 판단

- 중재판정문 주문은 ‘피신청인들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만 정하고, 위 계약에 피신청인들의 지위로 부가된 ‘acting severally and not jointly’ 문구는 준거법인 영국법상 통용되는 것이 아님.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를 판단한 것을 보면, 각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금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지나, 다만 어느 누구라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 보수·비용 부분은 모두 명확하므로 그대로 집행이 허가되어야 하나, 다만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의 강제집행 총액을 제한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집행을 허가함
- 뉴욕협약 제5조의 집행거부사유가 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중재합의 부존재, 절차상 대등한 지위 보장 위반, 판단유탈 및 방어권 침해,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 위반,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및 이유 불기재, 불특정, 사기, 배신적 주장의 용인, 하자 있는 증거,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집행권원, 손해의 공평부담원리 위배, 소수지분 매도인들의 수범자 제외, 과도한 배상, 손해전보 범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에스크로우 계좌·제1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이미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거부 사유 인정되고,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한도로 집행 허가함
- 중재판정문의 금전지급 명령을 문언대로 집행할 경우 피신청인들의 책임과 다른 형태의 책임으로 집행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결정의 이유를 참고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함. (항고 일부인용)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제40민사부 2023. 6. 13.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부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
- 1심은 피고 중의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음

□ 쟁점

-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조),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항고인용)

[제25-2민사부 2023. 7. 4.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아파트 관리단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가 범죄경력확인 회신서를 제출받지 않아 결격사유 확인 과정을 누락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의 관리단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 및 이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신청함

□ 쟁점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집행관 공시 명령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집행관 공시명령을 함께 적어 부가하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①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부작위명령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아 별다른 의미가 없음
 - ② 실체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작위명령에 대한 공시명령은 집행관의 직무내용에 속하지 않음
 - ③ 공시명령의 실효성(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위하·예방적 효과)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작위명령에 대한 공시명령은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이를 가능한 회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실무적으로 행하여지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의 집행관 공시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 보관 사실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그러한 가처분의 내용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여지가 있음 [항고기각(신청 각하)]

[제50민사부 2023. 7. 10.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 공동주택 2개동 및 상가 1개동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에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채무자)이 상가동(별개의 구분소유권 대상)을 완전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수평증축하여 증가된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한편 상가를 다른 위치에 별동증축하는 내용의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함.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계획을 승인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함

□ 쟁점

- 여러 동으로 구성된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별개의 구분소유권 대상인 상가건물을 완전철거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별동 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주택법이 허용하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소극)
-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에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을 벗어난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을 주택법상 정족수에 따라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주택법을 위반한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적극)

□ 판단

-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구분소유자들의 리모델링 결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전제인 동시에, 다수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반대하는 소수자의 재산처분을 강제하는 매도청구권의 발생근거이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결의 내용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
- 주택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형식, 체계,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동으로 구성된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별개의 구분소유권 대상인 상가건물을 완전철거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별동 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은 주택법이 허용하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주택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결의가 주택법상 정족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여 유효라고 보면 공동주택 정비에 관한 법적 규율을 형해화하고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재산권 한계를 생성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총회결의는 주택법에 위반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가 위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음 (채권자 일부 승)

2023라20950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제25-2민사부 2023. 7.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원고(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전부 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

☐ 쟁점

-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해고무효확인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지 여부)

☐ 판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실질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노무 공급계약과 달리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재산권의 소로 볼 수 없고 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야 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5조 제4항에서 해고무효확인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임
- 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해고 후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한 개의 권리에 관한 확인과 이행청구로서 경제적 이익이 공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액인 쪽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에서는 금원지급청구 가액이 5,000만 원보다 다액임에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가액인 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은 잘못임
- 다만 이 사건은 피신청인(원고)만 항고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바로 잡을 경우 소송비용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함 [항고기각(신청 인용)]

[제40민사부 2023. 8. 10. 자] <항고>

□ 사안 개요

-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 항고인은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판단

-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항고기각)

가 사

2022르22029 이혼 등

확정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민사사건에 있어, 제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판단

-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둬.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둬.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원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일부승)

[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 고 자인)
- 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쟁점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판단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량 피고와 별거
- ② 원·피고가 재혼 무렵부터 3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장남이 2010. 8. 6. ‘세대주’로 등록된 이후, 2020. 7.경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장남의 세대주 등록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상호간에 분쟁 발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습하지 않음
-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소송계속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나아가 피고 측이 이 사건 빌라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 ④ 원고는 기초연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의 소득(① 2020년 귀속 소득금액 57,822,832원, ② 2023년 현재 매월 457,220원의 국민연금 수령) 및 재산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함.
- ⑤ 별거 원인에 관한 피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딸을 비난하거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등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임
- 재산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① 원고는 재혼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임.
- ② 쌍방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 혼인생활의 과정(피고, 그 어머니 및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및 기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원고일부승)

[제2가사부 2023. 5. 4.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둔.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제2가사부 2023. 7. 2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18년 사망)은 2010. 9. 30.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6.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 11. 15.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 함.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함
-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됨
-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함(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임)

□ 쟁점

-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제1심심판 변경)

[제2가사부 2022. 4. 11.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류 가사비송사건 준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피신청인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됨.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함
- 환송 전 당심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
- 이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 파기환송 결정함(대법원 2020스507).

□ 쟁점

-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적극)
- 위 보수 산정의 기준(= 본안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 판단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됨(환송결정)
- 가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됨
- 다만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음
- 이 사건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

[제2가사부 2022. 6. 27. 결정] <항고, 사전처분>

□ 사안 개요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 중 신청인(원고, 아내)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피고, 남편)을 상대로 ‘신청인과 신청외 A(딸, 성년)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 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이루어짐
- 이후 피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A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X아파트로 특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전처분 당시 거주하던 Y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으로 위 사전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 사전처분 이후에 딸 A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이 X아파트와 Y아파트를 오고가며 생활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부산으로 이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

□ 쟁점

-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 사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사전처분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 ①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은 딸A와 함께 X아파트에, 피신청인은 Y아파트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1심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하여 위 거주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②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 ①의 사정 및 사전처분 이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의 거주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 ③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전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라도 이 사건 경정결정의 위법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항고기각)

[제2가사부 2022. 7. 27.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제1피상속인(갑)의 사망(2003. 10. 26.)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배우자로서 상속인이었던 제2피상속인(을)이 사망(2017. 6. 30.)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른바 수차상속(數次相續) 사안임

□ 쟁점

-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의 심리·판단의 방법(=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개별 판단)
- 유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부적법)

□ 판단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갑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의 사망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유증은 고려할 수 없음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됨[서울고등법원 2021브2001, 2021브2002결정(확정) 등 참조]. 을은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본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일부인용)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2. 15. 결정] <항고>

확정

□ 사안 개요

-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하자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 쟁점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2011스19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근거한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음
- 참가인의 상속포기취소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① 참가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참가인의 몫이 A에게 귀속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② 참가인은 참가인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착오 역시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함. [항고기각(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

행 정

2020누3879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7행정부 2021. 8. 12.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보다 매출액이나 자산규모가 큰 납품업자들에 대하여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면서, 예상 판매수량을 기초로 한 납품업자의 원고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수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원고에게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분담비율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에 해당하는지(적극) (원고패)

[제6-1행정부 2021. 8. 25.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병원 등에게 공급한 제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 원고가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병원에는 하나의 대리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대리점별 판매지역 또는 판매병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원고패)

□ 사안 개요

축산업 및 양계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 등 4개 회사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이후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동행위가 관계 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존속회사가 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패)

[제7행정부 2021. 9.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승)

[제7행정부 2021. 12. 23.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가 사업자단체인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결정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건축구조기술용역의 최저 또는 적정 단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가기준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원고의 위 대가기준 결정·통지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패)

[제7행정부 2022. 2. 17.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건설기계(굴삭기) 제조업체인 원사업자(원고)가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작도면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및 위 제작도면을 납품업체 이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구 하도급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 중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 요구됨
-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됨
- 수급사업자가 부품 설계 후 양산 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승인도’가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는 상세한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함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 금지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판단 기준 [= 원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음]
- 원사업자가 부품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에게 부품의 제작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 납품업체가 작성한 제작도면을 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구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제3행정부 2022. 3.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는, 원고 등 8개 운송사가 갑 제철소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물량담합(3호)과 입찰담합(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임

□ 쟁점

-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 제철소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용인하고, 입찰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정액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단일한 의사와 공동의 목적에 기초하고 있는 점, 합의 대상과 내용이 동일하고, 참여사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담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개별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되고, 처분시효 도과의 원고 주장은 배척함
- 갑 제철소가 운송사들 간에 합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고, 갑 제철소가 ‘텐더링’ 제도를 두고 있었다거나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투찰가격 수준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이상 하나의 공동행위 중 일부는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정률 방식으로 산정하고, 일부는 정액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그러나 2009년과 2012년도의 정액과징금은 다른 연도에 ‘정률 방식’ 산정보다 현저히 크고 산정방법이 과징금고시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 결국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어 과징금 전부를 취소). (원고일부승)

[제7행정부 2022. 5. 12.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중소형 폐기물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 관하여 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던 원고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 쟁점

경쟁제한성을 ‘관련시장(해당 입찰)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하여 대기업의 입찰 참여 가능성이 제한되고, 다른 중소기업자들이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를 제한 받았으므로, 결국 해당 거래분야인 중소형 소각로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중소형 소각로 입찰’이라는 동일한 품목과 동일한 계약 방식에서의 담합으로 11건 전체가 하나의 공동행위인데, 이러한 공동행위의 성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의 내용 및 입찰담합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입찰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지 않고 이와 동일한 품목 및 계약 방식의 입찰, 즉 지방자치단체가 추후 발주하는 중소형 소각로 입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함이 타당함. (원고패)

[제3행정부 2022. 10. 13.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0년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A노조는 201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음
- B회사는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9. 1. A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인 C회사 하역 작업에 대하여 A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함. 그러자 원고가 C회사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고(‘이 사건 행위’), 이에 C회사가 B회사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 조합원 등이 철수하였으며, 이후 B회사는 A노조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A노조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존재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행위로 B회사의 운송작업뿐만 아니라 A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방해되었고, 원고와 B회사의 노무공급협약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A노조의 배제를 통한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견고화하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노조와 B회사 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로 원고가 울산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도 인정됨
- 나아가 이 사건 행위로 A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방해되었음. (원고패)

[제7행정부 2022. 10. 27.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를 납품 받을 때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기자재를 발주할 경우 기본계약 체결 업체들에게 기자재의 구체적인 사양 등이 기재된 POS(Purchase Order Specification, 기술사양서)를 발행하고, 이에 응하여 납품 희망 의사를 밝힌 업체들 중에 납품업체를 선정한 다음 개별계약(Purchase Order)을 체결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정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판단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요구 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함임. 따라서 법정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서는 아니 되며, 적어도 법정 사항들을 기재하는 취지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식에 의하여야 함
-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전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팝업되어 납품업체의 전자서명을 받는 기본동의서는 위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반면 PO에 첨부된 POS는 기술자료요구서를 대체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고 납품업체의 검토와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함. 그런데 POS에는 법정 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요구하는 법정 사항 모두가 기재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됨. (원고패)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중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중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중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중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정거래법령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부당이득 규모의 요소를 기본 산정기준의 결정 단계와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재량고려사유의 형량에 하자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 위법성을 제거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 이 사건 선행판결은 ① 원고가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이득액의 약 1.8배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따른 부과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제3행정부 2022. 12. 1.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 판단

-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판매한 행위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봉쇄하여 혁신을 저해하므로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조선업체들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의 효과적인 구현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원고만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허여하면서도 해당 기술 라이선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는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함
- 피고가 관련 상품시장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각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도 인정됨
- 다만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서로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상품은 끼워팔기의 대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국한되므로 이에 한정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기술 라이선스 실시료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제6-1행정부 2022. 12. 1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2. 2.부터 2020. 8.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납부를 명함

□ 쟁점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하였는지(적극)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기능을 수행하며,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함. 원고는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하였고, 이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됨
- 이 사건과 같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오픈마켓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비교쇼핑서비스, 특히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로서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해당함. 네이버쇼핑이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위계로써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함. (원고패)

[제7행정부 2023. 2. 2.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

□ 쟁점

- 감액의 대상이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이라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소극)
-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正当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正当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하도급법 제11조의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지급된 것 외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이미 발생한 것 외에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과 향후 발생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이를 감액으로 보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正当화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이 正当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지출 비용,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여 활동을 통하여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수급사업자들은 처분 당시 원고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 당시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용자에게 온라인 검색서비스와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서비스(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가 ①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제공 및 왜곡 행위(‘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②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 대한 가점부여 행위(‘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및 판단

- 비록 원고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이전 내부적으로만 개편 사실을 알리고 색인정보 입력에 대한 안내를 하는 한편, 원고의 자회사에게 키워드 입력 가이드를 교부하면서 원고TV 동영상 색인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즉 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목과 일치하는 키워드’의 인입을 추가로 실현함으로써 고객을 오인하게 할 우려를 발생시켜야 함. 그런데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원고TV 동영상 키워드 인입률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감소한 점, 키워드를 인입하지 않는 사업 방식을 취한 검색제휴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키워드 인입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을지 의문인 점,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로 원고TV 동영상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에 원고는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고,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쳐 고객을 오인하거나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적법함. 한편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함. (원고일부승)

[제7행정부 2023. 2. 1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함(‘이 사건 광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판단

-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기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들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위 보고서가 곧바로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광고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일반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는 점,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 표시 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함
-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른 점, 소비자들이 시공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따라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제6-1행정부 2023. 5. 31.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피고는, 원고가 2016. 12.경 A그룹 소속 B회사와 4:6의 비율로 기내식 공급 관련 합작투자법인인 C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 및 C회사와 30년간 독점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내식 독점사업권 거래를 매개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D가 설립한 E회사 발행의 1,600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A그룹의 투자·자금조달회사인 F회사가 유리한 조건(금리 0%, 만기 최장 20년)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E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이는 제3자인 A그룹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E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및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원고의 위 행위가 특수관계인 D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나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주체인 원고의 행위로 보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인 A그룹을 매개로 한 D 및 E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여부

□ 판단

- D의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하더라도 A그룹을 상대로 사법상 효력의 무효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A그룹이 D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 원고 주장과 같이 D의 배임행위나 대표권남용행위로서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관하여 지원주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원고가 B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설립한 C회사와 기내식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E회사의 BW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제3자를 매개로 한 일괄거래를 추진함에 따라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E회사 및 이를 지배하는 D에게 귀속되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적법함. (원고패)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제3행정부 2023. 8. 31.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들과 민수시장에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음

□ 쟁점

- PHC파일 사업자들이 수요자인 건설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와 가격 합의를 한 기간이 공동행위 기간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PHC파일 사업자들 중 대중견기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후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는지(소극)
- 연간단가계약·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판단

- 공동행위에 가담한 회사들은 협회와 합의하기 전 PHC파일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인상하고 단가율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는 공동행위에 따라 결정된 가격과 단가율을 관철하기 위한 실행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 기간이 공동행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대중견기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중소기업과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유지하는 등 합의를 준수하였고, 경쟁을 배제하여 원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형성하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대중견기업의 요청이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준수된 점을 고려하면,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공동행위는 계약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합의한 기준가격표에 단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PHC파일 제조사들이 건설사들과 연간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정해진 가격·단가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연간단가계약과 수의계약에 따라 판매한 매출액 역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원고와 계열회사는 함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각자가 법률상 별개 법인격을 가진 독립한 거래주체이며 계열회사와의 거래도 합의된 가격의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가 계열회사에 판매한 관련상품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됨 (원고패)

[제1-1행정부 2022. 4. 19.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와 그들 사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피고에 난민인정을 신청함. 이에 대한 피고의 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 라는 특성이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이유가 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대안적 국내피신 주장의 증명책임의 소재와 내용(= 주장하는 자가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

□ 판단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중 ‘집단(group)’ 의 의미(= 보호받아야 할 특성을 공유하고 그로써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다수의 개인들)
-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 라는 특성은, ① 그 결혼이 출신국 사회에서 혼인 관습이나 가족 규범에 어긋나고, ② 이로 인하여 가족과 동족 집단의 박해에 직면하기 쉬우며, ③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기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함을 의미하며, 거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들어감은 물론이므로,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함. 따라서 단순한 사회적 지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수준을 넘어, 폭력과 감금, 협박을 수반한 강요로써 이혼 및 재혼을 강제하는 것 또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에 해당함
- 대안적 국내피신은 난민협약이 난민 정의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요건으로서,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 (원고승)

[제1-2행정부 2022. 10. 18.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 말레이시아 국적의 원고는 무슬림 트랜스젠더로서 2017. 10.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가 2019. 3.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난민법에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함
- 원고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위협이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를 넘어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나아가 미국 국무부 등 다수 기관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가하여지고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는 박해에 직면하였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말레이시아 샤리아 형법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충분히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음. (원고승)

2020누569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제6-1행정부 2021. 10. 2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요양병원 근로자인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60세에 도달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 취업규칙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정년제 규정이 신설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원고승)

[제10행정부 2021. 1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의 충청본부 대전사업팀의 팀장(3급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원고의 전산정보시스템(KR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소외인이 2년에 걸쳐 KRS에 접속하여 264회에 걸쳐 각종 정보를 조회·열람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점 제휴업체 선정 및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자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 ① 참가인은 소외인에게 특정 정보를 건네주는 수준을 넘어 ‘수많은 기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제공
- ② 원고의 대외비가 장기간 외부로 유출되어 원고의 정보 보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 초래
- ③ 소외인이 조회한 정보로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침해
- ④ 원고 회사에서 KRS 계정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적발된 다른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 수위에 비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으나,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더 중하므로 합리적인 차별임. (원고승)

[제10행정부 2021. 12. 17.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광주과학기술원)가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을 2014. 7. 1. 위촉연구원(실험조교)으로 채용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9. 6.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참가인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적극)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적극)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원고가 다른 해와 달리 참가인으로부터 자기업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2019. 6.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데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소극)
- 2019. 6.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한지(적극). [항소기각(원고승)]

[제9행정부 2022.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 피고(검찰총장)가 원고에게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피고가 비위사실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가명으로 진술서를 징구하고 비실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①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소송당사자가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등), 피해자 등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됨
 - ②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실조사 및 징계양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① 원고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② 증인신문을 통해 당사자 주장의 진위를 가리고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탓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함
- 피고는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에 의하여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승)

[제10행정부 2022. 1.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용역업체)에 입사한 용역근로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들은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고, 일부 참가인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였음
-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원고가 2017. 9. 1. 참가인들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직접고용하는 각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2018. 8.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 사건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가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2, 5호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및 그 의미[=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2, 5호가 정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은, 업무의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불가피하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의 효력(= 무효)
- 파견근로자이던 참가인들이 2017. 9. 1. 사용사업주인 원고의 직접고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제10행정부 2022. 1.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억 6,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2018. 9.경 취소됨)을 받음
- 원고가 소외인과 그 보험사로부터 위 승소 금액 중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한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비와 휴업급여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액이 위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적극적 손해액 및 소극적 손해액보다 더 적은 액수이므로 더 지급할 요양비 및 휴업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결정 및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성인임에도 원고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이 사건 합의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소극)
-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소극)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 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무 전부를 ‘면제’ 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의 법리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면제할 당시에는 아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위 포기·면제 후 비로소 보험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아직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이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한지(적극). (원고패)

[제7행정부 2022. 5.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성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징계감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변경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변경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팀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원고(팀장)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자, 원고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에 따른 것이고, 개정된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 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이며,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 또한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성 관련 위법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을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양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행위의 성격에 맞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근로자들의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함. (원고패)

[제7행정부 2022. 5. 19.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10여 명의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 그중 한 명이 ‘참가인2’)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참가인1)이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참가인2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종결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자, 이에 참가인들이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와 기간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사용자가 재심판정을 이행하여 참가인1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미공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실행위로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위 공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이미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음. 따라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명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향소기각(원고패)]

[제7행정부 2022. 6. 9.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종사근로자인 원고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이 사건 출입자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면서, 출입 관리 직원에게 노조사무실만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여 출입을 허락받음
- 이 사건 출입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다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 제지 당함
-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전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이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단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소규모 육성 피켓시위인 점,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 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인 점, 물리적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이동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출입관리자에게 이들의 방문목적은 속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제1심판결 중 부당전책에 관한 부분 취소). (원고일부승)

[제7행정부 2022. 9. 1. 선고] <노동>

□ 사안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였다가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위탁업체(피고보조참가인)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해고)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종전 수탁업체와 새로운 수탁업체 사이에는 고용승계의 합의가 있지 않았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가 새로운 수탁업체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①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② 직원들의 복무관계는 고용승계 전후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③ 새로운 위탁업체는 자신이 사용할 근로자를 선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종전 수탁업체가 운영하던 시기에 저지른 비위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고용승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새 수탁업체가 고용승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는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허용하더라도 애초에 수탁업체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나 변경된 수탁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 위탁업체는 직원이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승)

2022누3412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2. 10. 20. 선고] <노동>

심불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원고(사용자)는 여러 곳에 공장(A공장, B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으로 원고의 근로자라도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음
- 노동조합이 A공장 근로자들 외에 B공장 근로자들도 참가하는 집회를 A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불허하였고, 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이 집회를 강행하자 원고는 집회에 참가한 B공장 근로자들(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경고)하였음. 이에 노동조합과 B공장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사용자가 여러 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다른 공장에 근무하는 자는 공장 출입 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내(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 판단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노동조합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음
- ① 단체협약에는 특정 공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은 자신이 개최하려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 사항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근로자라면 원고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므로 참여 근로자가 A공장 소속이 아니더라도 위법 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원고는 징계처분 등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신원 확인도 용이한 점, ④ 이 사건 집회는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한다고 하여 영업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함. (원고패)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산재>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용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산재>

□ 사안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은 2003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3급으로 상향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 9,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13급으로 하향 재판정되어 진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6,300여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결정됨.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일부를 부당이득금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 5.분까지 합계 1,300여만 원이 충당됨
- 고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족으로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재보험법상 장의비와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충당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장의비는 100%,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부당이득금에 각 충당한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충당처분’). 이후 2019. 9.분까지 합계 4,100여만 원이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9. 9. 26. 900여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모두 징수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충당에 동의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유효)
-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의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고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고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충당처분이 위법한지(적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이 사건 충당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와 충당에 관한 제86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잔여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기재하지 않았음],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충당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항소기각(원고패)]

[제1-3행정부 2021. 7. 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피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에서 부외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실질 귀속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 여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판단

- 갑(원고가 사외유출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주장하는 자)이 퇴사한 이후에도, 갑의 계좌로부터 원고가 대표로 있는 A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갑이 운영하던 법인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표로 있는 A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도 함께 조사된 점, 갑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도 돈이 입금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갑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귀속 불분명으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조사 과정에서 갑과 원고의 진술이 어긋나고 계좌내역만으로는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부외원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제1-2행정부 2021. 7. 16.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도 매수하였으나 지적 및 공부정리 미완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그로부터 해당 집합건물 중 1세대를 분양받은 원고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당초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었다가 법령상 추정사유가 발생한 사안임)

□ 쟁점

원고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사실상 취득’ 하였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취득세 추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제9행정부 2021. 8.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피고는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사 등 주식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사건 조항’)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자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경정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조항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판단기준

□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가업승계 특례 가액 산정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해당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채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위 판단기준에 따라 쟁점주식별로 판단하여 일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제9행정부 2021. 9. 30.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증권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증권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확장형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으로서, 이에 의하여 구현된 금융투자기술은 종전 금융투자기술의 수준보다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기존의 업무 절차, 시스템,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을 이루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제3행정부 2021. 10.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국내 통신사업자가 주한미군에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해왔는데,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에서 주한미군 등을 제외하는 괄호규정이 신설됨
- 과세관청이 시행령 개정 전 주한미군에 대한 통신용역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주한미군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적용 규정과 취지, 부가가치세법령과 소득세법령, 한미행정협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제9행정부 2021. 10. 2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하였음에도 원고를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의 법적 성격 및 불복 방법
-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일정률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징수한 처분의 법적 성격 및 불복 방법
- 조세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 건물관리업무를 중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 무효)

□ 판단

- 과세관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한 납세고지는, 사업자 신고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임
-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일정률로 결정하여 징수한 처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함
-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하는 데에 적합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휴업신청을 거부하고 집합건물관리단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내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관리단이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도 그 신고 이전부터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기초하거나 동일한 하자가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함. (원고승)

[제1-3행정부 2021. 11.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증명
- 자경농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원고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위하던 원양 수산업의 규모, 해외 체류기간, 토지의 규모, 해당 수종의 재배·관리 방법, 잔디밭이 실제로는 운동장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무 식재 부분은 경계 구획, 조경 목적·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항소기각(원고패)]

[제9행정부 2021. 11. 2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보험회사인 원고들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의 문언,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령상 책임준비금의 과세표준 공제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조세정책적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와 달리 위 실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경정을 거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9행정부 2021. 12.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금융위원회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이 사건 조항’)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피고들(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원고들(금융회사)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아 90/10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을 고지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한정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조항은 차등과세 대상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자산)’으로 규정하는데, ‘실명’이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지 견해 대립이 가능함
- 거래자의 확정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계약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고, 반면 계약당사자를 출연자로 정한 경우는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거래(‘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함
-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와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까지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하면, 차등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선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계좌개설 시점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기준이나 실상에도 어긋남
- 과세요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후 출연자를 금융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할 여지가 있을 뿐임
- 이 사건 계좌가 ‘합의 차명거래’로 개설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 ②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승)]

[제11행정부 2022. 1. 12.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자동차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노숙자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노숙자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이뤄진 사안에서 그에 따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적극)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① 원고는 검찰에서 약정서의 글씨체, 녹음된 전화 목소리, 장기간의 노숙 생활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수사기관이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한 무렵부터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
- ② 원고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는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음
- ③ 자동차에는 이해관계인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판결문을 없이는 등록명의를 말소할 수 없음
- ④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법적 안정성은 저해되지 아니함
- ⑤ 기타 사정들, 즉 피고는 자동차의 실질적인 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 원고는 노숙자로서 제3자에게 속아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사정, 자동차는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환가가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평택시장은 명의도용을 당한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정 등이 있음 (원고승)

[제3행정부 2022. 1. 2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A회사는 창고용지를 분양받아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음. 이후 A회사가 B회사에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B회사에 이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A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B회사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
-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B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이 사건 추정조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를 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
- 이 사건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에 임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B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 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인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추정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할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의 ‘직접 사용’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또는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요건은, 그 문언상 “당해 재산이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될 당시 예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직접 사용’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합병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이 사건 추정조항의 ‘매각’에 해당하지는 않고, 자가물류방식으로 물류산업이 영위되었더라도 이 사건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승)]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군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 패)

[제11행정부 2022. 6. 1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병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종합병원은 건축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국민의 보건 복지증진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것임. 피고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부영주택에 직접 이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부영주택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함
 - ②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을 건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대한전선부지는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한전선부지 중 20,000㎡ 내외’를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지침만 정해져 있었을 뿐 병원부지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③ 원고는 종합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만 사업의 규모, 행정절차의 지연 등 원고가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④ 원고와 부영주택은 종합병원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별다른 공백 없이 계속 진행하였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원고승)

[제1-3행정부 2022. 7.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10% 세율을 적용함
- 피고(과세관청)는 세무조사를 통해 A회사 주식 중 44%를 B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C가 다른 해외법인들을 순차 통하여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 구 중소기업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 판단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는지(적극)
-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 시점(=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 판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에 더하여 개정경과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다출자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간접소유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① 2009. 3. 25. 개정 시행령에서 간접소유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간접소유라는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② 2011. 12. 28.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를 추가하였는데(이후 이 부분이 ‘최다출자자’로 개정됨), 이는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 ③ 최다출자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 또는 한 사람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원고패)]

[제8-1행정부 2022. 7.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A전자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경 B은행과 투자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B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그 후 A전자의 임원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인 2014. 11.경 또는 2015. 8.경에 일부씩 취득하고, 이를 A전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규정 취지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고, A전자와 B은행 사이의 투자계약,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행사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 사건 거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항소기각(원고승)]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스크랩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인도네시아)

□ 판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국내에 거주한 점, 원고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함
- ① 먼저 ‘항구적 주거’ 기준에 따르면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②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점,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온 점, 원고가 구입한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임.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③ ‘일상적 거소’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승)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A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4억 원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약 34억 7,000만 원씩(‘이 사건 이연익금’) 분할하여 익금 산입함
- 원고의 부친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인 A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순손익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상 위 규정의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양도차익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양도차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상속세는 법인세와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A회사의 2014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부분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0억 원이 되고 결손금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원고승)

[제11행정부 2022. 9. 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함
- 피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창원의 토지(‘이 사건 쟁점토지’) 지분과 그외 2주택을 소유한 점을 이유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부과함

□ 쟁점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판단

-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의 내용은 관련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옳음

②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취득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임

- 원고의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318호) 제5조가 정한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구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유예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본 1심과 달리, 무효는 아니고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항소기각(원고승)]

[제3행정부 2022. 9. 1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망인과 그 배우자, 자녀들 중 일부가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망인의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과 갑의 지분으로 변경됨. 그 후 원고들과 갑은 일부 부동산(순번 5, 6 부동산)을 갑 단독소유로, 일부 부동산(순번 1, 2, 3, 4, 7, 8, 9 부동산)을 원고들 공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변경함(‘이 사건 재분할’)
- 원고들과 갑이 이 사건 재분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고들은 공유물분할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과세관청)이 거부함

□ 쟁점

이 사건 재분할 전체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중 일부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들과 갑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순번 1 내지 7 부동산만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당초 원고들과 갑 모두의 공유로 되어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정산관계를 변경하여 갑이 원고들 중 일부에게 순번 8, 9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원고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일 뿐, 순번 8, 9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님),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를 공유물분할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①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②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데, 위 ①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②의 경우에도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정산 등을 통하여 대가를 교환하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갑이 공유하고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갑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음 (원고승)

[제8-1행정부 2022. 9.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에 대한 납품대가로 A로부터 이 사건 제1어음(지급기일 2016. 4. 30.)과 이 사건 제2어음(지급기일 2015. 6. 30.)을 발행받았는데, 이 사건 제1, 2어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각 부도처리 되었음
- 원고는 2015. 12. 8. A측에 어음금액의 40% 상당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액(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인지(적극)
-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은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여전히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즉 대손이 확정된 날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 [=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가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 11. 1.이므로, 대손세액 공제 과세기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 (원고패)

[제11행정부 2022. 9. 2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망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권자로 2016년 사망함. 원고A는 망인의 처, 원고B는 망인의 자녀로 미국 시민권자들임. 망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금 744,974원, 미국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B가 단독으로 상속함
- 피고(과세관청)는 망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2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망인의 과거 국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6억3천만 원을 부과함

□ 쟁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국내 상속세 납부의무 산정 기준이 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하고 국외 재산은 제외)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국내 상속재산만 포함되는지(소극)

□ 판단

-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역외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납부할 구체적인 상속세액이나 그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법 규정 체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제적 과세권의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상속세법 제3조 제2호 등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되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는 점, 이는 국세 등의 납부의무 자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으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과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요청을 조화시키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상속세에서와 같은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문제는 없는 점 등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3행정부 2022. 10. 20.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의약품 등 연구·제조기업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 12.경 44만 주(‘이 사건 주식’)를 보유함.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5. 원고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 원고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6,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였다가,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쟁점

-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라는 문구가 본문에서 각 호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본문에 주어를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각 호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구는 ‘취득’뿐만 아니라 ‘양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러우며, 개정 전 조항과 달리 양도 주체와 관련된 요건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개정이유나 부칙 등은 발견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도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벤처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모험자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양도 당시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항소기각(원고 패)]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 판단

-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포함되기는 하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그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본질에 반하는 점, 원소유자인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인 점, 위 조항의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경우 양수인이 원고들에게 위 1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들이 향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패)

[제3행정부 2022. 12.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 2. 26.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2. 잔금을 지급한 뒤 2016. 12. 7.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편 원고는 2019. 10. 5.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 12.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 11. 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때로 본 사례)

□ 판단

- 대출확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비록 원고가 신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인적담보 해소일 이전인 2016. 11. 22.이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원고승)

[제1-1행정부 2022. 12. 1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A가 이 사건 주택을 2018. 1. 10. 매도하고 약 한 달 뒤 사망하였고, A의 배우자인 원고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소유하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여 A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그 판단기준

□ 판단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다른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지정지역의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 즉,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위 1주택의 양도 당시 나머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 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승)

[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 쟁점

-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다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2가 같은 항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같은 항 제8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같은 항 제8호의2는 물론 그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항 제9호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가 분여하는 이익은 ‘주식 발행 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 주주가 갖는 이익’이지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아야 함
- 1심과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1-1행정부 2023. 5. 16.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벤처기업법의 규율 대상인 A회사로부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납입 행사가액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사건 차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피고(과세관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납입 행사가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이 사건 차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서 정한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 판단

- 관계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 ① 투자의 사전적 의미, 즉,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님
- ②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이를 다른 형태로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액까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5두11203 판결 등)
- ④ 원고의 주장처럼 보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투자자가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까지 전부 비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지나친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됨
-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는 절대적인 ‘양도 제한’조항이 아니고, 그 추징의 범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부분만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하등 모순이 없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의2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법령 규정들도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 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8-2행정부 2023. 5.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에게 주당 350만 원에 매도(콜옵션 내지 풋옵션 포함)하였다가 다시 그 옵션을 행사한 B, C펀드들로부터 그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음
-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로 위 주식 매도가 B, C펀드들의 조합원들(출자자 D, E, F)에게 고가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주당 97,320원)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예비적 처분사유로 증여자가 위 조합원들이 아닌 B, C펀드들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사유를 추가(그 고지세액은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됨)한 사건

□ 쟁점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자가 B, C펀드들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범위
- 구 상증세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옵션의 반영 여부

□ 판단

-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은 같은 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B, C펀드들이 위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로서 증여자에 해당함
-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되므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추가된 예비적 처분사유 중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법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별 당사자(옵션 매수자)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옵션 매도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내지 콜옵션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법인의 자산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자산가치나 당해 법인의 수익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령상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산정 시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제8-2행정부 2023. 7.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 12. 22.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0. 31.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함
- 피고(강서구청장)는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함

□ 쟁점

-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 이 사건 토지 중 병원장례식장 부분이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부속병원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3년 경과도 포함되므로, 학교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 12. 22.)이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아님
-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하였다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됨.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 패)

[제8-1행정부 2023. 8.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열량의 석유가스(이하 ‘프로판’)를 약 2% 혼합한 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를 도시가스로 공급함
-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60원/kg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프로판은 20원/kg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하였음
-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므로 위 물품 중 혼합한 프로판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와 프로판 세율 차이인 40원/kg 상당에 대해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이 위 법에서 정하는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 위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물품 중 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의미하더라도 그 생성 과정 자체가 자연적이라는 의미이지 인공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의 가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천연가스라고 봄이 타당함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제조’는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제조’에 해당함
-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함.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제9-1행정부 2023. 4. 6. 선고] <토지수용>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차량 세차장이 설치, 사용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분할 전 제1, 3토지가 일체로 사용되어 왔음. 원고들은 2006 ~ 2007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용재결 시점까지 제1 ~ 3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가 설치, 사용되어 옴
- 충전소 부지 내에 세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충전소와 세차장이 영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일체로 운영·양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나 ‘특별한 용도’ 라고 할 수 없음
- 충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상 규정이 없다거나, 충전소 운영 주체와 세차장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제1 ~ 3토지가 곧바로 개별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제1 ~ 3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함께, 세차장 진입로인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3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 대로에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의 경우 가늘고 긴 부정형의 형상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 3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거나 제2토지의 경우 전형적 맹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1 ~ 3토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함. [항소기각(원고승)]

[제7행정부 2021. 5. 2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관할관청이 형질변경 이후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무단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를 상대로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승)

[제6-1행정부 2021. 7.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1이 A약국을 단독 개설하고 원고2를 봉직약사로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원고들 공동 명의로 B약국을 개설·운영하다가, 이후 다시 B약국의 개설자만 원고2 단독 명의로 변경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약국 운영 기간 중 요양급여 부정수령을 이유로 업무정지 20일의 종전 처분을 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B약국이 계속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업무정지 1년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이 형식적으로 원고1 단독개설, 원고들 공동개설, 원고2 단독개설로 순차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인적 구성과 물적 시설 및 운영 상태가 같은 상태인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고패)

[제9행정부 2021. 8.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환수를 명하고, 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향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사업비를 환수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함

□ 쟁점

행정처분이 성립하려면 내부적 성립요건과 함께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됨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는 문서의 수신자로 A대학교 총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A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고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점,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는 기재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서에 해당할 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서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으로서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처분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함 (원고승)

[제9행정부 2021.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제작하여 신제품인증을 받은 냉동고(‘이 사건 냉동고’)를 피고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위 제품규격서에 명시된 시험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된 검사결과를 근거로 일간소비전력량 초과를 주장하여 원고가 납품기간 내에 수요기관에 납품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일간소비전력량’의 의미 해석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일간소비전력량’은 원고 주장 측정 방법에 의해 측정된 소비전력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① 이 사건 계약은 대한민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이 사건 냉동고의 ‘일간소비전력량’의 정의나 측정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바에 따라 소비전력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② 이 사건 계약서 등 문언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냉동고의 일간소비전력량 및 그 측정 방법에 관하여 제품규격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봄이 타당함
- ③ 원고 주장 측정 방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와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④ 조달청고시가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피고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비전력량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냉동고가 계약의 제품규격에 부합하는지의 문제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원고승)

[제6-3행정부 2021.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어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공공기관에 의하여 위 소송에서 문제된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면 소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해당 부분 각하) (원고일부승)

[제4-2행정부 2021. 9.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후,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는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장제를 실행한 참가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에 관한 권리가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중혼의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
- ②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 가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누구도 소송상으로는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됨. 더욱이 원고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여하였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피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함. 참가인은 1994년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25년 동안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제3행정부 2021.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의사인 원고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자격정지기간의 산정 기준을 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관련 형사 사건의 벌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후에는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변경)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함으로써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로 위반행위가 분리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위반행위로서 포괄일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시. [항소기각(원고패)]

[제11행정부 2021. 10.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자전거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급여를 수령한 데 대하여,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급여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아 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에 비추어, 교통사고 당시 만 77세인 원고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비스듬히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의 행위가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고승)

[제6-2행정부 2021.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도핑검사관 자격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도핑검사관 자격 취소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사전에 원고에게 심사대상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통보에서 도핑검사관 자격 취소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재심의 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핑검사관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적극)
- 도핑검사관이 부담하는 비밀엄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소극)
- 취소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도핑검사관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통보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소극) (원고패)

[제11행정부 2021. 11.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사들인 원고들이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의하여 ‘환적 컨테이너’에 대하여도 안전운임을 지급하게 되자, 고시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국토교통부 고시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이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적용하도록 한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근거로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① 문언에 의하면, 모법 규정은 피고가 안전운임의 액수를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운송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 ② 모법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안전운임일 뿐이고, 모법 규정이 이미 한정된 안전운임제의 대상인 운송품목을 구체화할 수는 없음
- ③ 관세법, 해운법, 대외무역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를 구분하고 있음
- ④ 모법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화물차주의 이익과 화물업계의 이익이 대립되어 첨예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의하면, 안전운임제의 대상인 운송품목에 대하여는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승)]

[제6-3행정부 2021. 1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사지마비 증세로 의병 전역 후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를 상대로 길랑바레 증후군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길랑바레증후군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고 길랑바레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거부되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일부승)

[제3행정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참가인(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이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9인을 정식이사로 선임 의결하여 이에 따라 피고(교육부장관)가 위 9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들이 적법한 종전 정식이사에 해당하는지(적극)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가 기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정수를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소극)
- 전·현직 정식이사 인원이 이사정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제9조의6 제4항에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면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비록 학교법인의 이사정수가 9인이고, 학교법인의 현존하는 전·현직 정식이사인 원고들은 4인으로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나,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운영 시 설립 목적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위 협의체로부터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한 취지,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라는 문언은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의 상한을 정해둔 의미라고 해석함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정위원회가 현존하는 전·현직이사인 원고들이 상지학원의 이사정수 9인의 과반수인 5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한 9인의 정식이사 선임 의결은 구 사립학교법 제9조의6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한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승)

[제3행정부 2021. 12.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까지 이 사건 공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소극)
-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공제규정은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 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1일당 총 1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점, 그 밖에 공무원의 보수·수당의 내용과 성격,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면,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제11행정부 2022. 1.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을 받은 자들로서, 피고(한국환경공단)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를 받게 되자 2019년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
-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의 신고를 한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여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환경법상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9호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을 지언정 곧바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대상자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수리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행위의 유효성이나 효력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되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들의 신고수리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항소기각(원고승)]

[제8-3행정부 2022. 1.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조달청과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물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위 물품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조달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규격서상의 소프트웨어를 수량대로 납품하지 않아(즉, 소프트웨어를 USB에 저장하여 물품 수량만큼의 USB를 제공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물품규격서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납품하였는지(적극)

☐ 판단

- 물품 필요조건에 “운영 소프트웨어(License) 1본(copy), 사용설명서 USB 1개” 로 기재되어 있는바, 운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USB에 저장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수요기관에 제공한 운영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인증키에 등록된 라이선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수요기관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라이선스의 개수만큼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를 모두 정상 운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운영 소프트웨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운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수요기관에 모니터의 수량만큼 정상 제공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USB는 소프트웨어와 설명서의 납품수단인 저장매체에 불과하여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

[제6-1행정부 2022. 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부사관인 원고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진술인의 개인정보 부분 제외)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 징계절차 관련 공문, 원고가 발령받은 약식명령서, 원고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자력표, 상벌발췌확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을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군인 징계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육군 징계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항소기각(원고승)]

[제3행정부 2022. 3. 3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싱가포르에 주식을 상장한 중국 갑 회사가 이를 원주(原株)로 한 증권예탁 증권(‘이 사건 증권’)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나 약 2개월 만에 증권 거래가 정지되었음. 피고가 갑 회사 제출의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신고·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원고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자(‘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갑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분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갑 회사의 2010. 9.말 기준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비전문정보임.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작성 주체는 아니지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증권 취득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여기서 상당한 주의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말하는 점, 비전문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수인으로서 적절한 검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비록 갑 회사와 공모한 거래은행 직원들 또는 그들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가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하였고, 갑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거래은행에 불시에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은 거짓 기재가 드러나게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갑 회사가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해 그 실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니한 것은 인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로 인하여 과징금 액수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원고패)

2021누53896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8-2행정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 중 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해당 세부과제 보고서를 제출함
- 그 후 피고는 위 세부과제 연구성과 근거자료로 2014년 작성된 논문(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인 원고가 미성년자인 장00을 이 사건 논문의 제2저자로 표시한 것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세부과제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의 제재조치(이 사건 처분)를 함.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적극)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① 원고가 장00을 논문의 제2저자로 표시한 것이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기한 특별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등 불공정한 의도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 ② 처분사유의 내용 및 행위의 정도, 논문이 작성된 시기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처분사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③ 원고가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되어야 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 (원고승)

2021누54028(본소), 2021누54035(반소) 부동산인도 등(본소), 유익비 등 지급
청구의 소(반소) 상고기각 확정

[제8-1행정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인천국제공항공사)와 피고(스카이칠십이)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유휴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투자비용을 부담하여 골프장을 신설한 뒤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 12. 31.에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실시협약상 협의의무 불이행, ②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③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등을 주장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이 2020. 12. 31.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실시협약의 성격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어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 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항소기각(원고승)]

[제11행정부 2022.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전체가 동일한 아파트 명(名)으로 분양공고되어 공동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A 아파트와 B아파트는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상이함. A아파트 주택단지만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일부 주택단지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도 해당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아파트와 B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함. 동시에 분양공고가 되었다거나 공동으로 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언제나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서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과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을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또는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패)

[제3행정부 2022. 5.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자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임

□ 쟁점

-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원고가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판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함으로써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법무부에서 마련한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연수 허용기관과 외국인 연수생의 세부운영 기준 및 사증발급 심사기준,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초청인에게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국민인 초청인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성격상 외국인이 스스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원고와 같은 연수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초청자격 부적격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경우 국민인 초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수기관의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됨
- 다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소각하)]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는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고, 피고는 A대학교 의과대학장임. 피고가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A대학교는 종전에 국립대학이었으나, 이후 국립대학법인 학교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A대학교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대학교 징계규정은 징계절차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다룰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시효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은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인 점, A대학교 총장 임명과 재무회계에 국가가 관여하기는 하나, 이는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일정 정도 국가 감독을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소각하)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9. 7.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이를 유지·관리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 설치되었고,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 설치되었는데(‘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설치 주체·경위 및 지배·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위 무단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이 사건 대규모점포 소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 등 조치를 함으로써 원상으로 복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나, 같은 날 곧바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도 계속 신탁회사가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적극) (원고승)

[제9-3행정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업무 수탁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등급을 종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하였음. 원고는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의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함.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처분 방식의 특칙이라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행위의 처분성(적극)
-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를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처분 방식의 예외로 규정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부정적 평가등급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 평가등급의 부여 내지 평가결과의 공표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의 실질을 가짐.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하거나 재원 예정인 아동의 학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의 환경·건강·안전 등의 관리실태, 교직원 근무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며, 이로써 그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원시킬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됨. 그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청의 평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함. 결국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그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은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평가인증제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전면적 의무평가제로 개편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의 효과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표’ 규정이 도입된 것임. 그와 같은 입법 취지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을 해석할 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처럼 평가등급 부여에 관한 처분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고 새길 수는 없음
- 결국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7행정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공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 군복무기간 중 일부를 호봉기간에서 제외하였고(‘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호봉정정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향후 3개월 간 급여에서 정산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고)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산금반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함. 이에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함

□ 쟁점 및 판단

- 교육감의 호봉정정 처분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적극), 처분청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인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복절차를 알리는 것을 누락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 피청구인에 사건을 송부)
 - 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호봉을 낮추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봉급 등의 보수에 직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구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②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은 소청심사 절차에도 적용됨.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해야 함
- 정산통보의 처분성(소극)[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호봉이 소급하여 정정되면 그 정정 자체로 인하여 ‘기지급된 보수액’과 ‘정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이러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의 성격,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횡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유무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닳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제4-2행정부 2022. 7.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사업시행자 대표)는 피고1(시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약 169억 원(‘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및 비용분담계획의 폐지가 고시됨. 피고1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금 중 이미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원고가 환급가산금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위 환급된 부담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1, 2(시)에게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1은 이를 거부함. 원고는 피고1에게 위 거부처분 취소를, 피고2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 원고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지(소극)
-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 이 사건 합의가 공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서 무효인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묵시적 일부취소에 해당함. 처분의 일부 취소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의 환급을 구할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였음. 원고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1의 거부행위는 환급 결정 및 환급금 지급으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피고1에 대한 청구 부분 각하)
- 피고2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는 지정해제결정 고시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따른 가산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임.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환급에 대해 준용할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됨.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 피고1과 원고의 협의 끝에 이루어짐. 이를 원고가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공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제7행정부 2022.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 쟁점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소극)

□ 판단

-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소각하)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는 5세대가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원고는 지하층 지층호 옆에 있는 부분(‘이 사건 쟁점 부분’)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피고 정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원고 소유권의 입증 여부

□ 판단

-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단순히 공용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라는 사회적 실체를 인정해 사실상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적절한 범위에서 확장하기 위함이므로 건물 자체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일부가 구분소유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
- 한편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 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도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제3행정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그 소유 행정재산인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마포농수산물 시장을 개설해 피고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음. 피고는 원고와 위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마트 운영위탁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20. 3. 26. 원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따로 응답하지 아니함

□ 쟁점

-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전차인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수익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통시장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부적법함
-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전차인의 지위 확인 소도 부적법함. [항소기각(소각하)]

[제10행정부 2022.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한 사람임. 중앙징계위원회는 피고(외교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19. 6. 5. 원고를 해임(‘이 사건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하는 처분을 함

□ 쟁점

-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중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판단

-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받은 것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원고가 골프라운딩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가족 항공권을 수수한 것은 위 구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수수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다양한 기념품을 받은 것이 구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화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아가 하위 직원들에게 모욕적·강압적 언사를 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가 당시 구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범위는 ‘강등부터 전책까지’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원고승)

[제7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인 원고가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점, 피고가 공제사업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인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함

□ 쟁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상 연합회가 그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처분의 성격(= 재량행위)
-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적극)

□ 판단

- 생협법은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규정하면서(제65조 제1항 제3호),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66조 제1항). 연합회는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제규정에서 정하면서도, 그 주요 내용을 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공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설(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공제규정에 대한 인가와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정관변경 인가를 거부한 이유는 어떠한 연합회라도 공제사업을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적격성을 별도로 검토·판단한 것은 아니었음. 그런데 ① 생협법이 공제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어떠한 연합회도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고, 연합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인 점, ② 어느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면 피고로서는 그 연합회의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사업 내용과 그 연합회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인가나 공제규정 인가 등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하려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원고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관 변경 자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원고승)

[제9-3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빌라(집합건물)는 1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3인이 그중 한 세대씩 양수함
-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적극)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조합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에서는 대표조합원 1인의 명의로 참여하게 됨(대법원 2006다5324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즉 토지등소유자에게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
 -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신설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였음. 그 여러 명에게 각 1주택씩을 공급한다면,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②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1주택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1, 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 1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만 공급받는 경우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함
-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고 원고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유효하지 않고, 결국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됨. [항소기각(원고패)]

[제10행정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의 응시자들로서, 부동산학 개론 11번 문항(‘이 사건 문항’)에 관하여 오답 처리되어 합격점수에 미달함. 이 사건 문항은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선택지 중 ②항 내지 ⑤항이 옳은 내용임은 다툼이 없고, 피고는 ①항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이 사건 답항’)를 틀린 기술로 보고 정답으로 확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답항은 경제학 이론상 옳은 설명으로서 이 사건 문항은 정답이 없어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에서는 원고들 승소로 판결함

□ 쟁점

- 이 사건 답항이 경제학 이론상 틀린 설명인지, 이 사건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는 것인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일반 경제학 이론의 관점, 즉 재화의 수요, 수요의 법칙 및 공급의 법칙의 개념, 재화 수요의 결정 요인, 수요량의 증감과 수요의 증감의 개념, 균형가격 및 균형의 의미, 수요곡선 및 그 이동,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균형가격의 변동,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완전탄력성의 가정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답항의 내용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항에서 이 사건 답항을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설령 일반 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 사건 답항이 부분적(특수한 경우)으로 옳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객관식 선택형 문제 출제에 관하여 오류의 존부 판단에 대한 기존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답항을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처리한 피고의 조치가 출제와 관련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자격시험의 출제 및 답안작성 지시사항에서 응시자들에게 각 문제마다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항 1개만을 선택할 것으로 요구하므로, 복수의 결론이 가능한 이 사건 답항을 유일한 정답항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답항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특수한 경우로서 국내외의 관련 자료상으로도 그 적용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답항의 내용, 표현 및 구성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정답 선택에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미흡함이나 불명확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제3행정부 2022. 11. 17.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음

□ 쟁점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이 사건 규정’)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 의미
-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와 규정 형식 등에 차이가 있어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어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거짓청구에 해당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시력교정술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진료행위의 어느 범위까지가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8두19345 판결을 통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진료비 거짓청구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목적과 대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사유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들이 사기죄로 고발되어 처분결과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이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와 그 증명 정도는 행정상 제재처분인 자격정지와 그 기준을 달리하는 점, 피고가 다른 사례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일부 사례만으로 행정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 이 사건의 경우에 처분기준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추가 청약기회 부여 요구에 피고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협력하거나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방법으로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한 것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신청을 포함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권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법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봄이 타당함
- 입주자모집공고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입주자모집 및 공급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며,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 원고에 대하여 공고된 내용대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공고문 책자를 보내준 것은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의제된 다거나 사실상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공주택의 공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적 법률관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확실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입주자들의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청약신청기간을 도과시키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약신청기간을 포함한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적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제9-2행정부 2022.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행정청인 피고(도봉구청장)가 ‘장기요양기관인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가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

□ 판단

-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문 주재자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위법 사유를 발견·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를 행정절차에서 구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됨
-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한 청문 절차는 절차마다 고유의 의의와 기능이 있음.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는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그 하자의 정도도 중함
 - ① 청문 주재자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청문이란 행정청과 구별되는 제3자가 당사자한테서 의견을 듣는 데서 나아가 증거조사까지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독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임. 행정절차법이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별도로 청문 규정을 둔 점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거나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② 원고가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지만,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거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청문 주재자는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 기일을 열지 않았음
 - ③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 작성의무,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행정청에 대한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청문조서를 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은 적도 없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음
 - ④ 청문 주재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 ⑤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실질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청문 결과에 대한 검토 의무와 반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음. (원고승)

[제10행정부 2022. 12.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소송참가인(‘참가인’)은 국내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국내 병원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일본에서 교정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함
-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참가인에게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증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정함. 그럼에도 피고는 참가인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경력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년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 피고는 참가인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치과의사 전문의)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 추가)

□ 쟁점

-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적극)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지(적극), 구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9. 5. 7. 대통령령 제2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의2 요건 미충족자에게 자격을 인정한 하자가 있는지(적극),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적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소극)

□ 판단

- 치과의사 전문의로서의 영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됨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결정’은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고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룰 수 있음
- 참가인은 구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의2가 정하는 ‘치과의사로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수련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필수적인 고려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를 인용함. (원고승)

[제10행정부 2023.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 그런데 이미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제기가 누적되던 차에, 주무관 A가 감사담당관실에 참가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함
- 피고(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감사,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가 모두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함

□ 쟁점 및 판단

- 참가인의 신고가 적법한 부패행위 신고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고에 해당하는지(적극)
- 참가인에 대한 감사가, 그 조사 방식과 절차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참가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가 정하는 불이익조치 중 사.목이 정하는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단순히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거가 이루어져야 함) 및 위 판단에 필요한 비교형량(=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훼손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상의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
-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의 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적극) 및 각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 피고의 2020. 6. 22.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이 위법한지(적극) [항소기각(원고승)]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 ‘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제10행정부 2023.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12. 21. 무단점유(2012. 10. 11. ~ 2017. 10. 10.)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 “국(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원고의 강릉지사 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199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기업이 계속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소극)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소극) [도로구역 결정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도로구역 해제결정이 고시되거나 용도폐지 공문이 보내진 2003~2006년경 각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소극) [해당 기간 동안 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속국도 관리청의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적극)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른 ‘인계 요청’에 해당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
- 2012. 12. 2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 소멸 후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및 무효확인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가분성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분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무효확인) (원고일부승)

[제3행정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 총장인데, 참가인은 1 내지 7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였음.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1,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 4 내지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

□ 쟁점

-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당초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여전히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징계사유의 존부도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구 교원지위법은 제10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피고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3에서 ‘피고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처분성이 없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피고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며,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결정임. 피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당해 교원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송물은 위 결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징계사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함
- 비록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도 미치기는 하지만, 이는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 그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처분권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기속력이 미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1, 3 징계사유의 존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심리 결과 1, 3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2, 4 내지 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여 피고의 결정을 취소함. [항소기각(원고승)]

[제8-2행정부 2023.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A구청장)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2020년 ‘서울청년센터 A’ 운영사업(‘이 사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서울특별시 A구 청년 기본 조례」, 구「서울특별시 A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음. 원고 등 8개 업체 중 B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이 나오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도중 B조합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서울청년센터 A 오랑」 운영사업(‘2023년 사업’)의 동일성 여부
-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두5865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A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의 각 내용, 사업장소, 규모, 주요시설,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업의 위탁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98두12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종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고 2023년 사업 역시 이 사건 사업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결국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소각하)

[제3행정부 2023. 6. 1.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하였음.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함

□ 쟁점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바닥면적이 해당 기계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고의 골재선별·파쇄시설 중 쇠석기 등 기계 면적(224.25㎡)만을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 「국토계획법, 골재채취법 등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과 달리 시설물의 경우 벽 등으로 구분되어 그 바닥면적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설치와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시설물의 업종, 제조 방식이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 바닥면적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 골재채취법령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000㎡ 이상 규모의 사업부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골재선별·파쇄업의 제조 형태와 특성에 비추어 원석을 파쇄하기 전 원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의 바닥면적에는 쇠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224.25㎡) 뿐만 아니라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수 없음. (원고패)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1995년경 지류제조공장 안에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설치함. 원고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1999년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원고는 2011. 5. 31. 위 공장에 20t/h 용량의 공정용 강철수관증기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원고가 허가 없이 위 보일러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

□ 쟁점

-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해당하는지(적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이 재량행위인지(적극)

□ 판단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의 공장에 설치한 공정용 보일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완결적 ‘열 생산시설’ 이므로 피고로부터 별도 신설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변경허가가 필요 없으나(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보일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 생산시설이고 그와 동일한 종전의 공정용 보일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비·장치·기구 등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바꾸거나 늘리는 개설(改設), 증설(增設)로 볼 수 없고, 열 생산시설의 ‘신설’로 보아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의 문언, 원상회복명령의 제재적 성격, 위법의 전체 체계, 특히 공급대상지역에서도 열 생산시설의 신설을 피고가 허가할 수 있고 허가받은 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용량을 증가하는 데는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음[항소 기각(원고 승)]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함

□ 쟁점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가 있는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국적법에는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음. 주소 개념을 채용한 동기나 맥락, 주소 요건에 결부한 법률효과는 개별 법령마다 다르므로 개별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함
- 자연인의 총체적 생활관계는 지속과 축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형성·유지·발전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 점(민법 제18조 제2항, 주소 복수주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를 고려하면, 국적이탈 신고 당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국내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지 않다고 속단할 것은 아님
- ㉠ 국내에 상시적·영속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친권자 등과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였는지, 친권자의 국내 체류에 외국 정부 등의 의도적 권력 작용이 개재하였는지, ㉢ 국내 체류에 관하여 국제법이나 정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른 특별한 법적 대우를 받는지, ㉣ 국적이탈을 위하여 신고한 외국 주소에서 복수국적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한 적이 있고 현재도 그곳을 거점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생활관계를 계속 형성·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 승)

[제3행정부 2023. 7.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이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을 일부 변경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 원고들은 분양신청서 등을 보냈음에도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함

□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한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원고 1, 3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없음
- 원고 2는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하지만,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설령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그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2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소각하)

[제10행정부 2023.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 부분(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용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하여 달라는 신청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법 제57조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2020. 12. 4.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 쟁점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도 적용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등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고 정한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이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도 적용될 수 있음
- 위 대법원 96누7519 판결은 ‘토지분할신청의 내용이 건축법령이 정하는 각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1995년 개정 지적법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그 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데, 위 판단의 근거가 된 구 지적법 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 이후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2011. 10. 10.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89호) 삭제되었더라도 위 대법원 96누7519 판결의 법리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
- 원고의 분할신청은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 신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건축법 제57조 및 제61조에 저촉됨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원고 승)

[제1-1행정부 2023. 8.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2019. 9. 10. 피고(고양시장)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정비구역은 그것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상 기본구상과 특성화계획 등의 실현을 통하여 자족성 있는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됨에도,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거부함.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행정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특성화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는 재량행위로서 관할 행정청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운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정비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전제가 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행정주체가 그 수립 및 결정에 관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고 행정계획의 성격상 그 내용 면에서 상당 정도의 추상성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행정주체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부여한 도심지 및 상권의 기능을 경시하고 일반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위 재정비촉진계획이 예정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도시 기능 배치 및 그에 따른 공간 설계 등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제9행정부 2021. 11.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사업비 용도의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

□ 쟁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합산 원칙’), 그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흡수 예외’),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합산 원칙)

□ 판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문언 해석상, 위 법조항의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의 소송과 재산권상의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 비재산권상의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의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안소송은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함 (항고인용)

[제8-1행정부 2022. 5. 31.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판결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그 후 행정소송 제2심판결, 제3심판결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제1심으로의 파기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의 범위(=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항고기각)

형 사

2022노3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확정

[제6-3형사부 2023. 5. 24. 선고] <부패>

□ 사안 개요

-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및 정상참작감경 관련 직권판단
-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임등기일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소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과 같은 조 제3항 위반(알선수재)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죄수관계

□ 판단

-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선고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형법 제70조 제2항) 이를 위반하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은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등기 시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검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배척함
 - ①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상업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함
 - ②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데,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사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였음
 - ③ 지역농협은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채 대출심사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 (일부무죄)

[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 사안 개요

-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판단

- 선거운동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준비행위의 대가로 이익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①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와 그에 대한 이익의 제공이 선거운동기간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관련성을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음
 - ②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공약을 수립하거나 홍보물·인쇄물을 기획·제작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선거운동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함
- 이에 이르지 않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정치인이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행위로 보는 것은 대법원 판례나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 당원모집활동이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피고인2, 3이 받은 급여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책임당원 모집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제7형사부, 2023. 4. 28. 선고] <선거>

□ 사안 개요

-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함. 피고인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됨

□ 쟁점

- 피고인이 직업적 단체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직업적 단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직업적인 이해관계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과 관련된 단체도 포함되고 노동조합은 이에 해당함.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과 위계질서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 직업적 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권유·요구하거나 지시하는데 이르렀다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조합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A정당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같은 직업적인 기관·단체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 정당의 지지기반이나 조직구조에 따라 정당 간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당원은 소속 정당, 후보자에 대해 강한 유대감이 있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임. 그러나 본 사안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고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원심파기(양형부당)]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 <성폭력> 확정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동영상 7건(‘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함. 이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SD카드에 들어있는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고(제3임의제출), 피고인을 촬영죄 및 소지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검찰에서의 제3임의제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소지죄는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및 피해법익도 구별되며, 범행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압수의 동기가 된 촬영죄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그 별건 혐의에 관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제출받아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하는 것은 그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먼저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으로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임
- 제3임의제출은 이미 소지죄에 대한 인지·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위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위 범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일부무죄)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상고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① 피고인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으면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피고인 IP 주소를 통하여 언제든지 업로드될 수 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가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수사상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됨
- ②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 폴더에 공유파일이 다운로드된 경우, 개별 이용자는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에 접근 가능한 이용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파일은 모든 비트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공유되므로 수사기관도 위 폴더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음
- ③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은 공유파일 전체나 그 일부를 보유한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파일의 조각을 각각 다운로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소지의 영상물 파일을 하드카피하여 반출한 것과는 다름
- ④ 피고인은 자신의 하드디스크 내 다운로드 폴더에 관하여는 위 프로그램에 의한 정상적인 접근을 한도로 하여 그 범익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사기관은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바 없고, 이후 시더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허용된 오픈 소스 코드를 이용하였음
- 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신설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법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항소기각(유죄)]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2-2형사부 2022. 8. 9. 선고] <성폭력> 상고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면, 위 현행법 제2조 제4호 다.목 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해석됨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것 외에도 ②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함.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 성인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접촉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단순 해석하는 것은 각 근거 법률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음
- 대법원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로써 곧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일부무죄)

2021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8형사부 2022. 8. 26. 선고] <성폭력>

확정

□ 사안의 개요

- 영어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초등학교 여학생 A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원의 원장인 X로부터 CCTV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추가 범행 및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확인하였고, X가 B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피고인을 A, B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 제1심에서는 B에 대한 영상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쟁점

- B에 대한 영상파일 압수의 적법 여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영상파일 부분은 X로부터 적법하게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 ① 임의제출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제출에 따른 압수가 완료되고 전자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X가 B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후적 사정을 들어 임의제출 당시의 제출범위가 A에 대한 범행 관련 부분에만 한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② 임의제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되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됨. 이 사건 학원의 CCTV는 X가 소유·관리하던 것이어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
- ③ B에 대한 범행은 A에 대한 각 범행과 그 시기가 근접하여 있고, 장소도 동일한 학원의 인접 강의실이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수법인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음. A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의 특성,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교육적 목적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했던 점 등에 비추어, B에 대한 영상파일은 A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유죄)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력> 상고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등을 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제1항 범죄사실), 발부된 제1영장으로 저장매체원본(‘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제2항 범죄사실)이 확인됨
-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모아 임의로 복제한 후 제2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음. 제1항 범죄사실에 의하여 제3영장이 발부되어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실시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 쟁점

- 제1영장의 압수대상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이므로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소극)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압수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하는 것 자체에 압수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압수절차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①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는 제1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한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출력은 유관정보를 대상으로 제한되는 점, ②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는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와는 무관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압수는 별개의 압수절차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당일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 제2항 범죄사실을 단순히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관련성 원칙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참여권 포기 의사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제9형사부 2022. 10. 20. 선고] <성폭력>

상고기각 확정

□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이 거주하는 B동이 아닌 그 옆동인 A동 옥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A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A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함

□ 쟁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의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어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자가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원칙적으로 동일인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됨(다만, 정당한 주거권자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자 등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① 강제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17층과 18층 사이의 비상계단인 점, ② A동은 중앙 현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비상계단은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자리 외벽에 위치하여 그 구조상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③ A동은 임대아파트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초소를 운영 중이고, 다른 동의 공동 거주자들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동 비상계단은 건물구조와 용도상 원칙적으로 A동 공동 거주자들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해자는 당시 일시적으로 A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A동 거주자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음),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위 A동 비상계단에 대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렇다면 위 A동의 비상계단은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주거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제3자의 주거인 A동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침입과 관계가 없는(주거침입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무죄)

2022노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제8형사부 2022. 11. 9. 선고] <성폭력>

상고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은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쟁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각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여 유사성행위가 행해진 사안에서, 폭행행위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폭력행위의 잔혹성, 피해자의 상태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폭행과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 범행날짜와 구체적인 장소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범행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다고 하기 어려움
- ② 체포 당시 피해자의 상처, 소견서의 기재내용은 폭행행위의 참혹성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 ③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서도 피해자의 기절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언급, 피해자의 반복된 비명과 울음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함
- ④ 피해자가 장시간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더 심각한 피해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폭력이 가해진 상황에서 성적 접촉은 지극히 비정상적임
- ⑤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자신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유사성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됨. (유죄)

[제4-2형사부 2022. 12. 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갓갓’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인 2020. 6. 18. 네이버에 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후 2020. 7. 7. 네이버에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였으며, 2020. 9. 8. 해당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네이버에 재차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담당자의 참여하에 영장을 집행함

□ 쟁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

□ 판단

- 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것은 당시 경찰의 영장집행의 의사 및 외관, 영장집행의 실무관행, 네이버측 담당자의 인식과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교부받게 되는 시점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였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팩스로 송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 경찰이 집행 착수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은 있으나,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법원은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항소기각(일부유죄)]

[제8형사부 2023. 2. 10.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해군 함장인 피고인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심에서는 주로 상해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쟁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판단

-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들[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부하고 입원치료를 했던 의사 A, 환송 전 당심(고등군사법원)에서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채택한 감정인 B, 환송 후 당심 증인 의사 C]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서 채택한 증인 D는 심리학 전문가로서 인격장애와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원인과 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언행이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를 들어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3세의 젊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평소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던 지휘관으로서 해군 함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 경험에 해당함.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음
-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려움
-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해자가 호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부존재하였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발병의 원인으로서는 평가되지 않음. [항소기각(유죄)]

2022노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제10형사부 2023. 4. 13. 선고] <성폭력>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함

□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행위로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됨. 위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8도1481 판결 참조),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함.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행위(같은 조 제4항)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법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함
-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 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일부무죄)]

2022노3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12-1형사부 2023. 4. 25. 선고] <성폭력>

확정

□ 사안 개요

- 기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학생(12세)을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정보보호법’) 제18조의 해석(=법정형의 장기에 한정하여 가중)

□ 판단

- 청소년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으로서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함
- 청소년정보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 행위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 중 ‘추행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법정형의 단기를 ‘징역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도 2분의 1까지 가중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단기는 ‘징역 7년 6월’이 되어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9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와 집행유예 제도를 활용한 특별예방효과의 제고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됨.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까지 가중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가중되는 형은 위 법정형의 장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파기(양형부당)]

2022노28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확정

[제11-3형사부 2023. 6. 2.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년여가 지난 후 사귀는 동안 룸카페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하여 고소함
-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쟁점

- 기습적으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임
-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행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함. [원심파기(유죄)]

(춘천)2023노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8. 17. 선고] <성폭력>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동촬영기능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음. 검사는 그중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에 대한 촬영행위를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

□ 쟁점

- 초등학교 여학생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한 내용의 표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08도244 판결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이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함. 화장실에서 일상적으로 용변 보는 모습과 같은 신체 노출만으로 이를 음란한 행위라고 한다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반함
- 성기·엉덩이 등의 노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어야 함
-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 및 그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 성적 행위로 열거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호의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참조].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원심파기(일부이유 무죄)]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7형사부 2022. 4. 8. 선고] <일반>

상고기각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함(행위시법주의).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새롭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부가형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됨.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추징에 관하여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시 법률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하였다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몰수 규정이 신설되거나 몰수의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몰수형에 처할 수 없음
- 부패재산몰수법은 2008. 3. 28. 제정되어 2008. 4. 26.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전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등’ 이 부패범죄로 추가되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추가되었고, 개정법률 부칙(2019. 8. 20.) 제2조는 ‘제2조 제3호 및 별표 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부칙의 문언이나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 의하면, 위 부칙은 위와 같이 추가된 범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도 부패범죄로 되어 있었던 횡령 및 배임 범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될 수 없음. (추징 불허)

[제13형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한 사건

□ 쟁점

- 피고인 갑이 경찰서 남자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피고인 갑이 유류한 물건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 경찰이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의 정보 탐색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정보 탐색과정에서 피고인 갑에게 증거의 취득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인 갑은 당시 체포된 상태였던 점, 경찰서 화장실은 체포된 피고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경찰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인 점,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당시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특정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기 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할 당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갑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 갑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유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는 당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갑은 추가적인 정보 탐색과정에서 증거의 취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음.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무죄)

[제7형사부 2022. 6.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는데, 검사가 가상화폐지갑의 몰수를 구한 사건

☐ 쟁점

- 범죄사실과 무관한 암호화폐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보관이나 입출금 거래에 사용할 ‘주소(address)’와 그 주소에 접근하여 거래를 승인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가 필요함. 암호화폐 보유자가 보유 주소의 개인키를 잊어버리면 그 주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됨
- 이 사건 가상화폐지갑은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형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주소와 개인키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하고 거래를 할 때에만 컴퓨터(혹은 모바일)에 연결하며, 거래 시 개인키를 사용한 프로세스를 장치 내부에서 수행하고 승인된 거래 내역만을 컴퓨터에 전송하여 개인키를 온라인상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이 사건 가상화폐지갑이 피고인의 마약류 거래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 가상화폐지갑에는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주소·개인키 등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데, 위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통해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위 가상화폐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암호화폐를 피고인이 관리가능한 다른 주소로 이체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압수하거나, 피고인이 암호화폐 주소·개인키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암호화폐를 인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함으로써 범죄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몰수 불허)

[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준 경우 이를 필로폰 수수로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란, 유·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 갑이 2021. 6.경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갑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500g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수입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 마약류 수입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에서 정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일부무죄)

[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쟁점

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된 양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마약 불상량” 또는 “마약 미상량” 등으로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이 부분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유죄)]

[제7형사부 2022.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함
- 검사는 위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함

□ 쟁점

- 검사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서류를 위법하게 압수하여 기존에 입건유예된 혐의사실을 파악한 후 수사를 재기하고 기소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되었던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전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입건유예 당시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수집행위 자체가 그때 이미 완료된 것으로, 그 후 관련된 서류에 대해 위법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존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입건유예처분 후 검찰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던 수사기록을 검사가 열람하여 사본하거나 수사재기 후 기록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새로운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검사가 입건유예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기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내사사건·조사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226조 제1항 제2호, 제230조 제1항 제2호), 입건유예 처분한 사건을 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제3조 제8호, 제10조 제3항)이 있을 뿐 재기 사유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검사의 수사 재기와 그에 이은 기소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증거능력과 별개의 문제임
- 수사기관이 당초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범죄혐의를 포착하였다고 하여 그 후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려움. 이렇게 본다면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 등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단서를 위법하게 지득한 경우 관련된 일체의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예외없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위법한 절차위반 행위 후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그 절차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원심파기(공소장변경), 무죄]

[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범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함
- 피고인은 친모로서 평소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상고기각 확정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 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몰수)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 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 상황을 부당한 끼워넣기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더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피고인 C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거래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 이상, 피고인 C명의로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C명의로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될 수 없음. 다만 C명의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익이 C에 귀속되어 X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바, 핵심 쟁점은 피고인 A,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임
- 새로운 거래구조를 통하여 X는 소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바, 동기 내지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X 입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여 거래처 Y에 공급할 경우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Y의 입장에서 X가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거래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바, 원재료의 조달·공급을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C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적 의도에 기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구조의 도입 목적상 C는 X의 통제력이 미치는 회사여야 할 것인바, C의 소유자를 피고인 B의 아들 Z로 선택한 것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결정 내지 부득이한 판단이었을 수 있음. 한편, X는 소스 유출 방지라는 분명한 이익을 얻었고, 비록 제한적이거나 X의 사업상 각종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의 다각화 내지 해외진출 등 사업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정한 이익을 얻었음. 피고인 A, B가 C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X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무죄)

[제7형사부 2022. 10.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대마 판매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 1주를 재배함

☐ 쟁점

- 피고인이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대마초를 재배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됨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 1주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흡연 목적을 넘어 대마 판매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의 제조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대마를 타에 판매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내역은 없음. 피고인에게 과거 대마 판매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이유무죄,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유죄)

[제3형사부 2022. 11. 3. 선고] <일반>

□ 사안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혈액채취를 하였으나,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받지 않은 사건

□ 쟁점

-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압수된 혈액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측정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채취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까지 동의하였으므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압수조서의 작성이 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은 그 제출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혈액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혈액채취를 완료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혈액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따로 압수절차에 참여할 개재도 없음
- 경찰은 피고인에게 압수목록도 같이 교부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경찰이 압수목록을 교부하려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압수된 혈액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할 가능성은 적은 점, 압수목록이 없어도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유죄)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제3형사부 2022. 11. 24. 선고] <일반>

상고취하 확정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유죄)

2022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상고기각 확정

[제7형사부 2022.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함

□ 쟁점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신범죄(피해자들 1,400명, 피해액 1,500억 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019. 8. 2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죄에 추가된 취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몰수·추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수·추징이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됨
-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 반대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없음. [원심파기(양형부당)]

[제3형사부 2023. 2.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홍차 등으로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 판단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음.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A의 진술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1도832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법원에서 조사자인 A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대검찰청(디앤에이화학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 서울구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자료들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마약에 취하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들 자료들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음.
- [향소기각(무죄)]

[제7형사부, 2023. 4.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A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경찰관 甲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甲에게 주었고, 甲은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백 진술을 받음

□ 쟁점

-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적극) 및 B, C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한정 적극)

□ 판단

-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탐색·추출을 막기 위함으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탐색·추출 과정을 확인하면서 무관한 정보 탐색에 이의하는 등 제지할 기회가 있어야 함
- ① 乙이 피고인 등 관여 없이 혼자서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한 점, ② 甲이나 乙이 피고인 등에게 탐색·추출과정을 보여주거나 이에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할 경우 참여시키는 등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참여권 보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음), ③ 피고인 등이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참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음. 위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받은 B, C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단서를 위법하게 지득하였는 이유로 이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범죄에 대한 일체의 수사·기소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예외없이 불가능해지므로 절차위반 행위 후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차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B는 마약류 수수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C는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명확하게 수수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증거의 자격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C의 법정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일부무죄)

[제1-3형사부 2023. 5.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함

□ 쟁점

-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한하여 중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중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음[주석 형법(총칙2) 제3개정판, 2020, 186면 이하(하태한 집필 부분)]
- ① 피고인 X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상급자인 평소 A 등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피고인 X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음식을 먹이거나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X는 피해자가 김밥을 먹고 체크거리자 등을 두드려 주거나 피해자가 쓰러지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X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A와 일체가 되어 학대치사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은 무죄로 판단함
- 다만, ①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을 다 삼키지 못하였음에도 A가 강제로 떡볶이 2개, 김밥 1개를 빠른 속도로 먹이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X는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의 끈을 잡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점, ②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해자의 기도에서 발견된 떡의 크기는 4cm 내지 5cm 정도로, A는 위 떡볶이를 피해자가 섭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에 넣어 주었던 점, ③ 피고인 X는 위 A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안색이 좋아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A의 행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X는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X는 A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학대치사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함. [원심파기(일부무죄)]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과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2023노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등 확정

[제11-3형사부 2023.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람한 행위로 기소됨

☐ 쟁점

- ① 피해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카드내역을 살펴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내역이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한 행위 및 ②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진첩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 1장(이하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소극)

☐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침해”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범하여 그의 권리 등을 해한다는 뜻임. 피해자는 ‘카드 어디다 썼는지 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도 컴퓨터 및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등 휴대전화 자체에 내재된 복합적인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음.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사진파일을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저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사진첩을 통하여 열람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사진의 생성·열람 과정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및 저장 기능만이 사용되었고, 전기통신과 관련된 어떠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무죄)

(춘천)2022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7. 21. 선고] <일반>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8,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연료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함

□ 쟁점

- 피고인이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 이외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한정적극, 부정한 청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

□ 판단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청탁과 관계 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82도874 판결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8,100만 원을 대여한 후 수차례 이를 변제받으려 하였고 청탁의 대가로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청탁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었음
-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청탁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억 8,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취득하였음은 별론으로 4억 8,100만 원 전액을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검사는 위 금융이익 상당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8,1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였음. 그러나 위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 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임 [원심과기(일부이유무죄)]

[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 ②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모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을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함(‘원심 결정’)

□ 쟁점

- 추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징재판 집행을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소극)

□ 판단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그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같은 조 제3항).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명령을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집행을 밀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검사는 가납명령이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를 명해야 하고(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라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 조항은 즉시의 집행개시를 허용하는 데에 그치고, 즉시의 압류까지 보장하지는 못함. 그런데 피고인이 압류 전에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은닉하려고 마음먹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음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명령과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의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징보전의 필요를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을 명함. (항고인용)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2021년 9월 ~ 2023년 8월

2023 년 9 월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